

공익과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

I. 들어가는 말

김 상 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9년 초 여성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체포되면서 흉악범에 대한 얼굴 공개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인성을 상실하고 인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자에 대하여 인격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에 따라 몇몇 언론에서는 실명과 함께 얼굴을 공개하기도 하였다.¹⁾ 그렇지만 비록 살인범이라 하여도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적용을 받고 인격권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얼굴 공개 등과 같이 형사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개진되었다.

형사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언론은 여과 없이 이를 보도하였고,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도 이에 대하여 그리 부정적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형사피의자에 대한 얼굴공개는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피의자의 초상권침해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얼굴공개가 금지되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얼굴공개금지를 국가기관에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직무규칙을 개정하여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초상권 침해금지 규정을 도입하였다.²⁾

이렇게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가 차단되면서, 2004년 유

1) 당시 조선일보 등에서는 범죄예방이란 공익차원에서 강호순의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였다(조선일보 2009. 2. 6. 자 참조).

2) 경찰청은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51호)을 제정하여 제85조에 초상권의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영철 사건이나 2006년 정남규 사건 등과 같이 연쇄살인범의 경우 얼굴을 가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물론 이런 연쇄살인범뿐만 아니라 아동성범죄자나 또 다른 흉악범죄자의 얼굴도 언론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피의자라 하여도 사회적으로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미 알려져 있는 소위 유명인사, 즉 정치인이나 경제계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개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기관은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흉악범죄피의자의 경우 얼굴과 성명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범죄예방이란 공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시민사회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흉악범 등과 같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신원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은 사법부에 의하여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죄의 예단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인격의 주체로서 인격권을 보장받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형사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찬반의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이를 보는 시각이 서로 상이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피의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향유자란 점에서 인격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흉악범죄사건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공익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도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형사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여전히 공개와

비공개의 양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자의 기본권이 상호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우선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자리 잡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하여 검토한 후,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다음 양자의 보호범위에 대해 비교 검토하여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공익과 범죄의 보도

1. 기본권의 제한요소로서 공익

(1) 공익의 의의

일반적으로 공익(公益)이란 사회공공의 이익이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말한다. 즉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의 이익을 지칭하는 사익(私益)에 대응하는 개념이다.³⁾ 또한 공익은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의미하는 국익과도 용어와 구별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는 공익이 국가공동체의 이익인 국익과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

실정법에서 공익은 공익법인 내지 공익사업 등 용어의 앞에서 부가되어 수식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에서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공익을 ‘사회 일반의 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3)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78700>.

법률은 공익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을 통하여 공익의 의미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공익은 공공복리만이 아니라 공공의 전체 이익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의 질서유지 등도 넓은 의미에서 공익에 속한다 보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공익사업은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직접적으로 공익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제4조에 열거된 사업을 통하여 공익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즉 동 법 제4조는 제1호부터 제8호에 걸쳐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저수지·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 등에 관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이다.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공익이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⁴⁾

이상과 같이 법률은 공익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을 통하여 공익의 의미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공익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때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찾아보면, 공익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는 용어는 볼 수 있다. 즉 헌법 제23조 제2항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행사는 공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헌법은 공공복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복리(public welfare)가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인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때,⁵⁾ 이는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공익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⁶⁾ 그런데 이미 법률에서도 보았지만, 공익은 공공복리만이 아니라 공공의 전체 이익이란 점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

4) 법률에는 이 외에도 공익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수익사에 관한 법률’ 등이다.

5) <http://100.naver.com/100.nhn?docid=15769>.

7) 학자에 따라서는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요건으로서 공익을 들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한 개념으로 공익을 이해하고 있다(강경근, 헌법, 2004, p.483.).

회의 질서유지 등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공익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⁷⁾

(2) 기본권의 제한요소로서 공익

현행 헌법은 제10조부터 제37조 제1항에 걸쳐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이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치국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도 그 성격상 헌법이 보장해야 할 권리라면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필두로 하여, 제11조에 평등권, 그리고 제12조 이하에서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과 사회권 등을 차례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들 중에서 그 성격이나 내용상 침해를 허용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있지만, 헌법현실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헌법은 제37조 제2항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에 따라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⁸⁾ 동 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들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은 국

가의 안전보장이나 사회의 질서유지 등으로 담보되는 공공의 이익과 공공복리 등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위 공익의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익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⁹⁾

2. 보도의 자유와 범죄의 보도

(1)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이란 일반적으로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좀 더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언론은 매체를 통하여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언어와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한다.¹¹⁾

언론의 자유는 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유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언론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자유이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오늘날 다양한 언론매체의 출현과 그 발전으로 인하여 단순히 사

8) 이런 의미에서 공익에 공공복리 외에도 질서유지를 포함하여 이해하기도 한다. 강경근, 헌법, p. 676. 참조.

9) 동 조는 특히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고 표현하여 헌법에 규정되었던,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이 갖는 성격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기본권은 한편에서 개인에게 전속된 주관적 권리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범과 같이 객관적 가치질서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본권은 법률상의 권리와 달리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전체 이익인 공익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Zippelius/Würtenberger, Deutsches Staatsrecht, 32. Aufl., 2008, S. 181ff. 참조.

10)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wiki/%EC%96%B8%EB%A1%A0>).

1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p.491.

언론의 자유는 오늘날 다양한 언론매체의 출현과 그 발전으로 인하여 단순히 사상이나 그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액세스권, 알 권리, 언론기관의 설립 및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자유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액세스권, 알 권리, 언론기관의 설립 및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자유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¹²⁾

언론의 자유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체를 통하여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각종의 정보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언론기관의 자유가 중요한 자유로 등장하게 되었다.¹³⁾ 언론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언론기관의 자유에는 언론기관설립의 자유와 함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 후자에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방송의 자유, 편집·편성의 자유와 보급의 자유¹⁴⁾ 등이 포함된다.¹⁵⁾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는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자유를 말한다.¹⁶⁾ 보도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등에 의한 소식이나 정보의 전달도 보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신문에 의하여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¹⁷⁾ 또한 그런 점에서 보도의 자유는 뉴스 등의 보도뿐만 아니라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배포의 자유까지 포함한다.¹⁸⁾

(2) 언론의 현대적 기능과 범죄의 보도

언론의 자유는 중세 이후 합리적 사고에 바탕을 둔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형성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군주주권의 시대가 가고 민주주의의 기초하에 국민주권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계몽주의에 힘입은 근대시민사회를 통하여 중요한 기본권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근대 입헌주의를 통하여 성문헌법이 등장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되었다.¹⁹⁾ 언론의 자유는 자유롭게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거나 교환·전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12) Maunz/Dürig/Scholz, Grundgesetz, Art. 5 Rn. 69ff.

13) 이는 언론의 자유가 단지 사상이나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인 발표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를 전파하는 전달의 자유를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참조.

14)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병합).

15) 권영성, 헌법학원론, p.503.

16)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6916900> 참조.

17) 물론 이것은 일종의 용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18) 성낙인, 헌법학, 2009, p.523.

19) 예를 들면 1776년 미국 버지니아권리장전 제12조,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 1791년 미국 연방헌법 증보 제1조.

써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대에 오면서 언론의 자유는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사상과 의사 소통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격체로서 인격을 발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을 실현하는 기능도 담당한다.²⁰⁾ 또한 언론의 자유는 공동체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질적 다원성과 그에 기초하는 국가를 형성하는 등 공동체의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기능한다.²¹⁾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개개인은 민주정치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기능도 갖는다.²²⁾

오늘날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기능들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매스미디어로 불리는 대중매체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 관심도를 촉발시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언론매체의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범죄기사라고 할 수 있다. 언론매체가 범죄를 보도하는 것은 소재가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선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범죄 자체가 공공적이고 합법적인 주제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범죄보도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언론매체의 공적 과제라

는 것이다.²³⁾

범죄의 보도는 범죄와 관련된 여러 사항인 범죄피의자의 수사과 체포, 구속과 기소 및 재판, 범죄의 원인 등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²⁴⁾ 언론매체에 의한 범죄의 보도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의 내용과 위반 시의 법적 제재의 방법과 구체적인 실현의 내용 등을 전달하며,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²⁵⁾ 이렇게 범죄의 보도는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언론매체의 중요한 공적 과제이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 현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다.²⁶⁾

언론매체에 의한 범죄의 보도는 범죄의 행태를 알림으로써 범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위법행위와 관련 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의 규범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범죄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기관의 처리과정을 알림으로써 국민이 이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작용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담보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범죄에 대하여 형성된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기도 한다.²⁷⁾ 이렇게 언론매체의 범죄보도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하고 선정적인 보도의 경우 여론을 오도하고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오보의 경우에는 관련 당

20)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21) 강경근, 헌법, p.647.

22)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참조.

23) 김경호,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12권 제2호 (2004년 봄), p.89.

24) 이승선·김연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2009), p.69.

25) 대판 1998. 7. 14. 96다17257 참조.

26)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p.70. 이하.

27)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동성범죄자에서 볼 수 있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을 참작하여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2009. 11. 25.자 인터넷판.

범죄피의자라 하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그렇지만 범죄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되면 일반 국민과 달리 제한되는 기본권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

사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범죄보도는 범죄자와 피해자 등과 사건의 주변 인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정적인 기능도 크다.

III. 범죄피의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

1. 범죄피의자의 기본권과 무죄추정원칙

(1) 범죄피의자의 기본권

일반적으로 범죄피의자란 형사피의자를 일컫는 용어로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수사개시 이후 공소제기 이전에 있는 자를 말한다.²⁸⁾ 범죄피의자라 하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은 특별한 제한 없이 보장된다. 그렇지만 범죄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되면 일반 국민과 달리 제한되는 기본권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피의자가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기본권이 있다. 특히 범죄피의자와 관련하여 헌법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형사절차상의 권리들과 법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²⁹⁾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는 범죄피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범죄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에 의하여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묵비권, 제3항에서 의해서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제4항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6항에 의해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외에도 형사피의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무죄추정의 원칙과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과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 등의 기본권도 갖는다.

28) 권영성, 헌법학원론, p.434.

29) 본고에서는 용어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형사피의자 대신 범죄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무죄추정원칙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핵심적인 헌법상의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는 범죄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를 무죄추정을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직 기소되지 않은 범죄피의자의 경우 당연히 적용된다.³⁰⁾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야 하고,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도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³¹⁾ 또한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유죄를 예단하여 무리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필요 이상의 모욕적 언행이나 강압적 태도 등 강제조치 등도 범죄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³²⁾ 그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제외한 그 밖의 기본권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³³⁾

이렇게 헌법이 요구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피의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범죄의 보도에 있어서도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보도가 아니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범죄피의자의 인격권

언론매체의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의 침해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격권이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아니고,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도 아니다. 인격권을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인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 등을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³⁴⁾ 즉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하여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권리는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는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권리 등에서 찾는다.

범죄보도는 범죄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보도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이로 인하여 범죄피의자의 인격권 보장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범죄피의자가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동안 초상이나 성명이 공개되었고, 심지어는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이에 대한 관련 법규들이 제정되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익명보도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청의 경찰관 직무규칙 제85조에 초상권의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든지,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30) 권영성, 헌법학원론, p. 435. 참조.

3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참조.

32) 헌재 2005. 5. 26. 2001헌마728 참조.

33) 헌재 1997. 5. 29. 96헌가17.

34) 권영성, 헌법학원론, p. 449.

알 권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위에서 재구성한 것.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알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보장하고 있다.

제정하면서 제5조에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인격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의 범죄보도에 있어서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³⁵⁾

IV. 범죄피의자에 대한 신원공개와 그 한계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1) 알 권리의 의의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정보는 헌법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알 권리(right to know)는 인류사회가 정보사회로 진전되면서 등장한 인간의 권리로,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하여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가 되었다. 알 권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위에서 재구성한 것이다.³⁶⁾ 그런 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알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보장하고 있다.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알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알 권리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수집,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Informationsfreiheit)라고도 한다. 알 권리가 20세기 후반 하나의 기본권으로 등장한 것은 정보사회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³⁷⁾ 근대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본권으로 등장한 표현의 자유는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정보

35) 범죄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에 대해서는 이승선·김연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p.74. 이하 참조.

36) 김효진, 표현의 자유, 동아법학 제24호, p.330. 이하.

37) 물론 알 권리의 등장배경에는 현대 국가에서 국가기밀이 증대되는 요인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전달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중요한 정보원이었던 신문에서 방송으로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과거 일방적이었던 정보전달체계는 다양하게 발전하는 미디어에 힘입어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되던 정보가 정보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되는 체계가 형성되면서 정보원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³⁸⁾ 통신의 발달로 일방적이던 정보의 전달이 쌍방향화되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로 등장한 것이다.

정보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알 권리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집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이 국가와 정부에 대하여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³⁹⁾ 전자는 알 권리의 소극적 의미이고 후자는 알 권리에 대한 적극적 의미를 말한다.

알 권리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학계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학계의 견해를 보면 알 권리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알 권리를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개념을 보는 입장에서는 알 권리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⁴⁰⁾

이와는 달리 알 권리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연계하는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

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⁴¹⁾ 이 외에도 알 권리를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로 그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알 권리를 정의하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⁴²⁾

알 권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³⁾

(2) 알 권리의 기능

알 권리가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으로 등장한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여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한다는 것에 있다.⁴⁴⁾ 그런 점에서 알 권리는 우선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여 그 발전을 꾀하는 기능을 갖는다.⁴⁵⁾ 그 다음 알 권리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기능을 행사하며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알 권리는 사상이나 의사

38) 성낙인, 헌법학, 2009, p.552. 이하 참조.

39) 강경근, 헌법, p.658.

40) 권영성, 헌법학원론, p.496.

41) 정종섭, 헌법학원론, p.563.

42) 성낙인, 헌법학, p.552.

43) 헌재 1989. 9. 4. 88헌마22.

44) BVerfGE 7, 198 (208).

45) 헌재 1989. 9. 4. 88헌마22.

학설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 역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동체 내에서 제한은 피할 수 없다.

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격체로서의 인간다움을 구체화시킨다. 이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알 권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나아가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접근과 수집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3) 알 권리의 내용과 제한

알 권리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여 수집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⁴⁶⁾ 즉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가 정보원에서 나오는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받아들이는 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⁴⁷⁾ 정보수령자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보도 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단순히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타 법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

정보수집권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의 자유와 개인의 정보수집의 자유가 포함되는 권리이다. 이는 정보의 수집에서 국가나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정보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언론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의 제공도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알 권리는 수집된 정보에 대한 선별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보의 자유가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올바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알 권리에는 정보를 선별하여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⁴⁸⁾

알 권리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전제로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이 인정된다.⁴⁹⁾ 그래서 알 권리에는 정

46) 정중섭, 헌법학원론, p.567.

47) Hofmann-Riem, Art. 5, in: Grundgesetz-AK, 2. Aufl., 1989, Rn. 82.

48) 헌재 1998. 10. 29. 98헌마4.

49) 강경근, 헌법, p.660.

보를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 등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에는 국가가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일반인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과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일정한 범위 내의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⁵⁰⁾

학설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 역시 기본권이란 점에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동체 내에서 제한은 피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알 권리도 이 조항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도 개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지위에서 일정한 제약을 그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4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인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¹⁾

2. 이익형량과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에의 한계

언론매체에 의하여 범죄가 보도되는 경우, 이를 공익의 관점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범죄피의자의 신원

공개문제가 등장하게 된다.⁵²⁾ 여기서 신원이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인 신분이나 평소 행실, 주소, 원적, 직업 등을 말하는 것으로,⁵³⁾ 신원공개란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초점이 되는 것은 초상과 성명에 관한 것이다.

범죄보도에서 범죄피의자의 초상과 성명 등 신원공개는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미 본 것처럼 범죄피의자는 구속과 기소단계를 거쳐 사법부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원칙을 적용받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인격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범죄피의자의 인격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인격권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직무규칙도 범죄피의자의 초상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보도에서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범죄피의자에 관한 보도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더구나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언론기관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및 범죄피의자의 기본권 간에 충돌문제

50) 정종섭, 헌법학원론, p.568. 이하 참조.

51) 프랑스 인권선언 제4조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52)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 총기살인범 내지 미수범의 경우 보도로 인한 공익이 더 크고 대중의 관심도가 크다면 얼굴공개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2004년 서울 서래마을에서 자신의 영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프랑스 부부의 얼굴과 성명을 언론에서 그대로 공개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살인범 등의 얼굴은 공개하고 있다.

53)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3873700>.

공공성과 공익의 관점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한하여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공개를 통하여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공익성이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얼굴공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발생하게 된다.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서로 다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다투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의 충돌문제는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선택하고 다른 기본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한 쪽의 우위를 그 사안에서 인정하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을 헌법이 보장한다고 하여도, 언론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신원공개 대상인 범죄피의자가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한 공인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였기 때문에,⁵⁴⁾ 공인의 경우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의 보호영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범죄피의자의 경우 공인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범죄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원칙의 대상으로 공인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범죄피의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을 받는 부수적인 공적 인물로 보아야 하고,⁵⁵⁾ 익명보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연쇄살인범과 같은 반인륜적·반사회적 사건의 범죄피의자의 경우 국민의 공적 관심을 극대화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이익형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건에서는 전체 국민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하여 범죄피의자에 대한 인격권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 때에도 최소침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성명과 초상에 대한 제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공성과 공익의 관점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한하여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공개를 통하여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공익성이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얼굴공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신상정보 중에서 얼굴과 성명 정도의 공개는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에 있어서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자유로서 이 역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논란을 종식시키고 위헌성을 배제하기

54)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55) 김태수, 표현의 자유와 법익형량,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2007. 6), p.420.

위해서 엄정한 기준하에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성과 공익성의 관점에서 공개대상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즉 그 대상을 테러범죄나 연쇄살인범죄와 같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국한해야 한다. 또한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여 객관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공개의 절차나 형식 등 방법과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V. 맺음말

우리 헌법은 법치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고,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설혹 범죄피의자라 하여도 헌법에 의하여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특히 형벌권이 국가에 위임되어 있는 현대 법치국가에서 범죄피의자는 사법부에 의하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고 인격권이 보호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 즉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도 인격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기본권도 그 본질을 훼손되지 않는 한 제한을 받는다. 물론 그 제한의 범위는 규범과 현실의 틈 속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범죄피의자에 대한 신원공개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는 현행 법질서하에서 국가기관이 법집행 과정에서 허용되는 것은 어렵다. 헌법은 범죄피의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법부에 의하여 유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소위 공인이론에 의하여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의 경우, 국가기관의 태도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를 찾아내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모든 국민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언론에 의하여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원공개는 금지된다. 다만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의 경우는 얼굴이나 성명 등 인격권의 일부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김경호,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12권 제2호 (2004년 봄), pp.88~120.
- 김태수, 표현의 자유와 법익형량, 공법연구 제35집 제호 (2007. 6), pp.407~432.
- 노기호,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한양법학 제6집, pp.309~320.
- 박도희,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관한 소고 -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8. 4), pp.171~195.
-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pp.68~86.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 이승선 · 김연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2009), pp.65~94.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 Gronau, Kerstin, Die Meinungsfreihei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NJW 1995, 1697ff.
- Hesse, Konrad,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eud. 20. Aufl., Heidelberg, C. F. Müller, 1999.
- Hubmann, Heinrich, Grundsätze der Interessenabwägung, AcP 155 (1956), S. 85ff.
- Jarass, D. Hans/Pieroth, Bodo(Hrsg.),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8. Aufl., München, C. H. Beck, 2006.
- Jarass, Hans, D., EU-Grundrechte, C. H. Beck, München, 2005.
- Maunz, Theodor/Dürig, Günter/Scholz, Rupert(Hrsg.), Grundgesetz, Kommentar, München, Stand 1995.
- Richter, von Ingo/Schuppert, Gunnar Folke, Casebook Verfassungsrecht, 3. Aufl., München, C. H. Beck, 1996.
- Schmitt Glaeser, Walter, Meinungsfreiheit und Ehrenschaft, JZ 1983, 95ff.
- Scholz, Rupert/Konrad, Karlheinz, Meinungsfreiheit und 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 - Zu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 AöR 123 (1998), S. 60ff.
- Stein, Ekkerhart/Frank, Götz, Staatsrecht, 20. Aufl., Mohr Siebeck, Tübingen, 2007.
- Zippelius, Reinhold/Würtenberger, Thomas, Deutsches Staatsrecht, 32. Aufl., München, C. H. Beck, 2008.

대중스타의 사생활 정보 공개의 한계와 법적 쟁점

이 재 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1. 문제제기

지난 3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가수 B씨와 O엔터테인먼트사가 상호 제기한 계약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연예인에게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원고의 사생활을 일정부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은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 원고인 B씨에게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법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일정부분 이를 긍정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대중스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사생활의 중요성을 법원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며 최근 논란이 되는 대중스타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중스타에 관한 사적 정보는 대개 보도나 오락 프로그램과 토크쇼,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보도에 의한 대중스타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실제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스포츠 신문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시기에는 경쟁적으로 대중스타들의 사생활을 다루면서 이들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었다. 그러던 것이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대중스타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이를 동의 없이 게시판에 퍼나르게 되고, 이를 대중매체가 중계하는 방식으로 대중스타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모 여배우와 관련된 결혼설이나 임신설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거나, 모 여가수와 모 남자 인기가수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유

대중스타들이 공인이라 한다면 이들에 대한 법적인 적용은 일반사람들과는 달리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인 보다 사생활의 보호정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로 이들의 사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포되었다. 그 외에도 대중스타의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해킹을 통한 사적 정보 들추기(심지어는 공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등을 통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들이 인터넷에 게재되고, 이것이 마치 큰 문제라는 식의 대중매체를 통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더욱 확산되기도 한다.

가장 최근의 예는 아이돌 그룹 2PM의 전 멤버인 박재범 사건이다. 연습생 시절에 그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 올린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글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비판여론에 밀려 가수 활동을 중단하였다. 박재범이 연습생 당시 올린 글을 언론이 공개하면서 연예계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부터 아예 추방하고 입국을 금지하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거론되었다. 물론 박재범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박한 애국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옹호론도 있었으나, 언론의 보도 당시의 분위기는 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도 사회적인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유명해진 가수 그룹의 멤버로서 언론은 그 활동이나 언행이 공개되어도 된다는 전제하에 보도를 한 셈이고, 이러한 보도로 인하여 박재범은 그룹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비밀비재하다. 물론 네티즌이나 언론이 모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언론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취재과정을 거치며, 그 보도가 진실인 부분도 있다. 또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언론보도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보도가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한 보도가 대단히 중요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보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중스타들이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퍼나르거나 사적 정보를 게재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이 또한 스타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대중스타들이 공인이라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법적인 적용은 일반사람들과는 달리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인 보다 사생활의 보호정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로 이들의 사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¹⁾

1) 연예인을 포함한 대중스타들은 오랫동안 언론의 더욱 악의적인 보도를 두려워하여 소송을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소송에 승리하여 언론을 처벌하더라도 해당 연예인은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급되어 연예인들에게는 소송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 때문에 법적 대응보다는 합의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한겨레, 2003. 3. 24.자 p.28.).

미국의 경우에도 대중스타는 일반인보다 사생활 보호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 판결의 경향이다.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아마도 이러한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스타가 공적 인물이므로 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스타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호되는지, 또한 대중스타가 정말로 공적 인물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사적인 정보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급심 판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중스타의 사적정보의 공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들의 공인성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대중스타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의 공개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가를 기존의 연구들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²⁾

2. 기존문헌 및 논의 분석

1) 대중스타의 의미

비록 대중스타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와 같이 권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³⁾ 현대 사회에서의 이들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대중스타가 제도적 권력의 기반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생활양식이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나아가 사회적인 여론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서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권영성, 2004).

또한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쟁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방향설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중스타가 중요한 결정권자(decision-maker)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중들의 표상에 대한 주요한 통제력을 발휘하며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신념이나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Dyer, 1995; Brown, 1980).

특히 알 권리의 대상이 특정의 정치인 집단에 머무르지 않고 그 범주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대중스타에 관한 정보는 알 권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박용상, 2008). 그러나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비록 언론중재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중스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⁴⁾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인정되는 대중스타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대중스타란 유명세를 먹고 사는 존재이다. 대중스타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대중스타의 유명세다. 이러한 유명세는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는 것으로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수록 유명세를 더욱 크게 누리게 된다. 그런데 대중매체를 통

2) 우리나라의 경우 사생활 침해가 대부분 명예훼손과 직결되므로 차이 없이 판단되어 온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점차 독립적으로 분화되고 있다(이재진, 2006).

3) 스타는 “권력이 없는 엘리트”라고 정의되기도 한다(Dyer, 1995, p.165).

4) 언론중재법 제5조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적 대중스타는 자발적-비정치적 공인으로, 범죄와 연루되어 언론에 보도된 경우는 비자발적이고 비정치적인 측면에서 공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이며 정치적인 공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여 유명세를 누릴수록 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불가피해진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대중스타의 경우에는 유명세의 대가로 일정부분의 사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Burr, 2004).

또한 대중스타는 연예인과 유사하게, 그 재능과 명성, 그리고 생활양식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알려지게 되고, 그 행위나 인격에 대해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 스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권영성, 2004). 대중스타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중매체와의 관계이다. 대중스타는 일반인보다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훨씬 높고,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접근하고자 하며, 때로 선정적이나 부정적으로 보도되기는 하나 이를 통해 유명세를 타게 되며 나아가 언론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것도 용이할 수 있다(이재진, 2004).

구체적으로 대중스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반인과 다르게 인식된다(윤성옥, 2007; Nordhaus, 1999; Ware, 1997). 첫째, 대중스타는 자신을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고 싶어하고 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자신이 알려지는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인정받는 척도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둘째, 대중스타의 사생활은 대중들이 알고자 하는 공적인 정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수용자들은 대중스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적인 관심영역에 존재한다고 인식된다. 언론은 대중스타의 사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대중스타는 이미 자신이 대중매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중스타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경우에 사생활 보호 관련법은 대중스타의 사생활이 언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2) 대중스타의 법적 지위

유명세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중스타는 법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누리게 되는가? 누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는 공인으로서의 대중스타의 범주에 속하는가? 이는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명확한 공인인 정치인을 제외하면 유명인에 대해서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스타의 범주에 누가 속하는가 하는 점은 기존 이론적 논의나 관련 판례를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즉 대중매체에 의해 유명세를 누리는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의 대중스타와 광의의 대중스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대중스타 범주에는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가수, 배우, 탤런트, 개그맨, 모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광의의 대중스타는 협의의 스타와 아울러 운동선수, 유명 앵커, 인기 정치인, 인기 강사나 교수를 포함한다(이재진, 2006).

그러나 대중스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에 준용되는 법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학계의 경우 유명세를 타는 대중스타는 대개 공인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승선, 2004; 김옥조, 2007). 특히 이승선(2004)은 공인을 자발적-정치적 공인, 자발적-비정치적 공인, 비자발적-정치적 공인, 비자발적-비정치

적 공인의 4개 부류로 구분하고, 대중스타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자발적-비정치적 존재로서의 공인이라고 보았다(<표>).

<표>에서 볼 수 있듯, 자발적이고 정치적 공인으로 된 부류는 미국 명예훼손법에서 판단하는 전적인 공인(all-purpose public figure)에 가까운 것인 반면, 비자발적-비정치적 공인은 제한적 공인(limited purpose public figur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Pember & Calvert, 2007/2008).⁵⁾ 이러한 구도에서 대중스타를 위치 지운다면 자발적-비정치적 공인과 비자발적-비정치적 공인 2개의 범주 모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 대중스타는 자발적-비정치적 공인으로, 범죄와 연루되어 언론에 보도된 경우는 비자발적이고 비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공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자발적이며 정치적인 공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인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 이재진(2004)은 현재 대단히 인기 있는 대중스타와 현직이 아닌 과거의 대중스타의 보호 정도를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

<표> 공인의 범주

		정책결정 · 자원 분배 영향력	
		정치적(정책 · 자원분배 영향)	비정치적
미디어접근자발성	자발적 허용	자발적 · 정치적 공적인물 (공직자, 정치인, 기관/단체)	자발적 · 비정치적 공적인물 (연예인, 스포츠 스타)
	비자발적 감수	비자발적 · 정치적 공적인물 (대기업대표, 고위문화계인물)	비자발적 · 비정치적 공적인물 (범죄 연루자, 피해자)

* 출처 : 이승선(2004).

5)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공인은 선출직 공직자나 입후보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자, 고위공직자 등이다. 전적 공적 인물(all-purpose public figure)은 '유명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타, 대기업 총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공직자나 유명인은 아니지만 어떤 지위와 관련된 보도로 인해 또는 특정한 공적 논쟁에 참여하거나 센세이셔널한 범죄로 인하여 인지도가 높아진 인물을 '제한적인 공적 인물 (limited public figure)'이라 한다. 예를 들어 유명 선수는 아니지만 경기의 승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선수나 흉악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 법원은 여전히 일관된 법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관련 분쟁에도 적용된다(염규호, 2000; Pember & Calvert, 2007/2008).

법적으로 공인의 지위에 속할 수 있는 대중스타가 누구인가는 확실치 않다. 누가 공인에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가의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공인성’이라는 일직선상의 어느 한 곳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공인에 가까운지 아닌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다. 그는 <표>에서 볼 수 있는 공인의 범주화에 동의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 ‘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어떠한 유명세를 누렸는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적으로 공인의 지위에 속할 수 있는 대중스타가 누구인가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누가 공인에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가의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공인성’이라는 일직선상의 어느 한 곳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공인에 가까운지 아닌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스타의 사생활 침해가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전히 법원의 판단이 공인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결례를 분석하여 공인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논란이 된 인물이 ‘상당한 정도 공인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 공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과 유사한 정도의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인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도 그 내용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공적 관심사가 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를 포함한 사생활 침해에서 대개 면책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공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나 공적 인물들의 초상권은 대개 인정되지 않으며(Page v. Something Weird Video, 24 Media L. Rep.(BNA) 1489), 사인의 경우에도 상업적인 도용이 아닌 공익적인 순수한 뉴스 기사의 경우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Baugh v. CBS, Inc., 828 F.Supp. 745 (N.D.Cal. 1993)).

3) 대중스타의 사생활 침해 유형과 해결 방식

비록 대중스타의 사생활이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스타에 대한 소식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식도 국민의 알권리의 일부라고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법리적 혼란 속에서 스타의 사생활 침해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 스타의 권리침해 유형을 106건의 판결례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윤성옥(2007)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체 소송 건수의 47.2%(명예훼손 45.3% + 기타 1.9%)를 제외한 52.8%가 사생활이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되었다. 이중 가장 많은 건수는 초상권 침해로 나타났으며, 사적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사생활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13건(13.38%), 범죄에 연루되어 보도된 경우는 4건

(4.1%)으로 나타났다. 사적 정보와 관련된 경우 그 내용은 연애설, 결혼·이혼, 성형수술 등 사적인 비밀영역에 관한 것이었다.

대중스타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대개 1억 원 이상이었으며, 20억 이상 청구한 경우도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인용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스타의 경우에는 범죄연루 보도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여성 스타의 경우에는 음란이나 선정성에 관련된 것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전체 106건의 소송에서 매체가 피소인으로 나타난 경우는 34건이었고, 이중 인터넷이 피소된 경우는 4건(11.8%)으로, 인터넷이 스타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피소된 매체는 일간 스포츠지로 13건에 달했다(38.2%).

3. 관련 판례 분석

대중스타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대중스타들의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판례를 모두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중스타를 유명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에 국한하여 이들과 관련된 대표적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것은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대중스타의 공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성하는 요인을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중스타들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은 대개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사적인 사실(정보)을

공개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1) 판례에서 나타난 대중스타

우리나라 법원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대중스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판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96나24196(1996. 9. 20. 선고), 2003나55334(2004. 10. 12. 선고)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2527 판결, 2004가합82527(2005. 7. 6. 선고) 판결 등에 의하면 대중스타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 또는 유명 인기 연예인, 연예인으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 등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⁶⁾

다시 말하자면 대중스타가 되기 위한 요건은 전술한 ‘유명세’가 있어야 하며,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어야 하며, 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때 영향력이란 공적인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대중스타라고 하더라도 연예계 현역에서 은퇴한 경우에는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있다. 한때 유명 여배우였던 원고의 동생과 관련하여 동생이 마치 원고의 숨겨진 딸인 것 같은 인상을 보도한 데 대해 원고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기사를 작성할 당시 이미 영화계를 은퇴하고 가정 생활에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

6) 판례의 전체적 경향은 대중스타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일관되게 공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욱, 2007).

사생활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성의 여부가 중요하다. 공적인 이익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①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②반사회적 범죄 방지 ③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손실의 4가지 주제와 직접 관련된다.

고 판시하였다(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2001년 12월 19일 유명 가수 신해철과 윤 모 씨가 근거 없는 결혼설을 보도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한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면서, 비록 신해철의 경우 결혼 얘기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내용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언론사가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신해철과 결혼한 사람이 미스코리아 뉴욕 진 출신이라는 점만으로 공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대중스타의 기준이 유명세를 포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자면 대중스타가 명확히 누구인가를 판단하기 보다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일선상의 위치를 지움으로서 대중스타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보다는 현재, 인기를 누리고, 유명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며, 대중매체에의 접근이 용이할수록 공인에 가깝다고 하겠다. 공인이라는 일직선상의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적어도 위의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은 공인에 속하는 대중스타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생활 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의 경우,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혼 여부와 사유, 출생의 비밀, 개인의 병력(병의 유무)과 같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거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는 함부로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러한 보도를 통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면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모든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즉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생활의 공개

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만 공개되어야 하지만 공개의 허용 정도는 일반인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일반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없이는 사적인 영역에 대해 보도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나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사적인 사항을 공개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거나 또는 공공의 정당한 알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법원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성행위가 담긴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몇 장의 사진과 함께 보도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공인이라서 사생활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법원은 “(연예인이 되기 전의) 원고를 공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공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 공적인 관심사로 된 것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찍었다는 사실 자체이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가 담고 있는 영상이나 음향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법원은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이미 공지된 사실이고, 촬영에 응한 원고가 추후 공개될지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며 법익을 포기하거나 침해를 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으로 항변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되었다. 이 관례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진실한 사실, 즉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은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았으나 사실의 세부적 내용, 즉 그 비디오테이프를 어떤 사람과 찍었는가 등에 관한 것은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경환, 2006). 즉 유명연예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세세한 정보는 공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결혼과 이혼 전력, 결혼 생활,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사안이 문제된 판결에서 법원은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주로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비교衡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47227 판결).

결국 사생활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성의 여부가 중요하다. 공익성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공적인 이익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①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 ② 반사회범죄방지, ③ 대중계몽, ④ 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의 4가지 주제와 직접 관련된다(이재진·이성훈, 2003). 이러한 4가지 주제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개인의 권익에 대한 보호보다 크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성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가 또는 원고가 공인인가를 통해 판단하거나, 이를 동시에 거론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공익성의 구성요건에 공인으로서의 원고의 지위와 공적인 목적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중스타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의 많은 부분이 이들의 연애 관계, 성형수술, 부부불화, 이혼문제, 또는 심한 경우 자살의 원인 등에 관한 것들이다.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의 공개는 당연히 사생활 침해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대중스타의 경우에는 사적인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한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위

하급심 법원은 대중스타에게 있어 초상권이란 사생활 침해보다는 재산권 침해의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대중스타의 초상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는 들이 대고 있다.

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중요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는 대중스타가 완전히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정한 부분의 사생활 보호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 사안을 보호해야 되는가(어떤 것은 왜 안 되는가?)하는 문제, 인터넷 게시판에 공인으로서의 대중스타들의 동의를 일일이 얻어서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3) 대중스타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중스타들이 비록 개인적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는 덜 보호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 법제도 이러한 부분은 명확히 하고 있다. 법원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대중스타들의 유명세는 대중스타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보다는 이들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미지가 함부로 훼손된다면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초상권이란 개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않으며, 광고 등의 영리적 목적에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 작성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박용상, 2008). 이러한 초상권은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⁷⁾의 인격권 개념에 속하는데, 아직 우리 대법원은 초상권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하급심 법원은 대중스타에게 있어 초상권이란 사생활 침해보다는 재산권 침해의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대중스타의 초상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법원은 우선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등의 규정에 의

7) 언론중재법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할 때 모든 국민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하며,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서울지방법원 2000. 7. 4. 선고 99나83698 판결).

법원은 또한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스포츠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에 의하여 뿔뿔히 떨어져 그 존재가 사회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유명인사”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 2000. 7. 14. 선고 99가합 84901 판결). 같은 맥락에서 “유명 연예인”의 성명, 초상, 음성, 연기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00. 5. 16. 선고 99나30444 판결),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 인격권과는 별도로 법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 1999. 7. 30. 선고 99가합 13985 판결). 그러나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공적인 인물의 경우 그 인물의 명예가 상당히 침해되지 않았다면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라는 법익을 이익형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서울지방법원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 이러한 판결경향을 종합하자면 전반적으로 대중스타의 경우 이들이 공적 인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우상으로 떠오른 대중스타들이 공인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적 정보의 공개나 초상권의 침해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기존의 학술적인 논의나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선례구속의 원칙이 없는 우리나라 법체계하에서는 이러한 판단은 결국 개별 사건들을 다루는 판사들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판사들은 표현(또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적 인격권이라는 이익을 적절히 형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판결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대중스타의 공인으로서의 지위나 이들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에 대한 허용 여부 등은 현재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소위 공인이론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인의 범주에 속하는가의 문제는 공인이나 아니냐의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정도의 판단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문제가 된 표현과 관련된 대중스타가 상당한 정도 공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공인에게 적용되는 사생활 관련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⁸⁾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스타에 대한 기존의 판례들이 다소 혼재된 판단을 내리고 있고, 공인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대중스타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자리를 잡을 때 까지

8) 헌법재판소는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에서 나타난 사생활 침해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요인은, 우선은 해당 인물의 공인성 판단과 상관없이 공개의 목적이 공적인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관련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는 ‘공인성 정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즉 공인인지 아닌지를 양극으로 하는 선상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에 대해 여러 요인을 통해 판단하고 상당한 정도 공인에 기울어져 있다면 공인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에서 나타난 사생활 침해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요인은, 우선은 해당 인물의 공인성 판단과 상관없이 공개의 목적이 공익적인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련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보도를 목적으로 한 대중매체를 통한 공개인지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에 사적인 목적으로 게재한 것인지 등을 통해서 목적성 여부 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적인 정보의 공개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점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대단히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의 판례나 학술적 연구들은 ① 정치적인가 아닌가 하는 요인과 ② 자발적인가 아닌가 하는 요인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기하고 있다. 즉 관련 대중스타가 정치적인 인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과 공적 결정(public decision)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성이나 자발성의 요인이외에도 대중스타의 ③ 유명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얼마나 대중에게 알려져 있으며 대중의 정당한 관심이 높은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과 함께 ④ 현재 활동 중인가 하는 요인도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유명한 사람이 과거의 유명인보다는 더욱 공인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인물의 공개된 정보가 ⑤ 범죄보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쟁점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법원에 따라서는 해당 인물이 ⑥ 미디어에 대해 얼마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해당 인물이 공인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판단하고 사생활 침해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⁹⁾

9) 유사하게 박용상(2008)은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알 권리)와의 비교형량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 법익의 종류와 부문에 관하여 세분화를 시도하고, 그에 대립하는 공익을 다양한 조합에 의해 비교형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고려 요인에는 보도가 공적인물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 공적 인물에는 그 지위 및 공공 참여도에 따라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그러한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라 할지라도 그 사안이 그의 여러 생활영역 중 사적 영역에 관한 보도인가, 공적 영역에 관한 보도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열거된 요인들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결 담당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많은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고려 요인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판사들이 이러한 요인들을 최대한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공인성 여부와 공개의 인격권 침해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선(2004)은 공인 판단과 사생활 침해에 있어 공적자와 같은 명확한 공인과 그렇지 않은 공인을 법적으로 달리 판단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해당 스타가 얼마나 공인에 가까운가 하는 공인성 정도 판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상당한 공인성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정도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며 어떤 방식으로 법을 달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나, 공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공인성 정도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중스타가 비록 공인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사생활이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생활에 대해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실제로 잘못된 사적 정보의 공개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켜 대중스타들의 활동을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대중스타들의 경우,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인기를 얻고자 하며 때로는 이를 위한 홍보전략으로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도 공공연

히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사생활 공개의 허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¹⁰⁾

기존의 논의와 법원의 판결례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공인의 공적인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며, 공인의 사적 정보의 경우에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언론중재법과 판례에 근거하자면 일단 공인으로 인식되는 경우 사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기보다는 그 사실이 진실에 가까운 경우이며, 공개가 가능한 것은 실제 내용의 큰 주제나 사실자체(예를 들어 누가 결혼을 했다, 누가 이혼을 했다)이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예를 들어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왜 이혼을 했는가)에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자칫 표현(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세부적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사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인의 사적 정보 보도에 있어서는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용상(1997)은 “내밀한 영역의 경우 보도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며 공적인 영역이나 사회적 영역에 관한 것인 경우 이는 최대한 허용한다. 그 사이에 속하는 사사(私事)적 영역에 있어서는 양자의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간파하고 있다. 이에 따르자면 현재의 우리 법리는 사적인 정보 중 내밀한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과 사인

10) 대중들은 언론을 통해 연예인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랑이야기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이들의 결혼 발표라든가 또는 결혼식 행사에 대한 보도가 대중스타들의 인기를 배가시키며 동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홍보효과를 낳게 된다.

의 법적용상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공인의 사사적 영역의 경우에는 특정 사실을 동의 없이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영역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엄격한 법리해석은 좀 더 유연해 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당사자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중스타로서 공인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라 하더라도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긍정적인 내용인 경우라면 공적인 관심사에 속하는 사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 영역 또한 점차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만일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차후에 이를 관련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인터넷과 대중매체가 밀접하게 얽혀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스타들은 점차 무거워 지는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경환(2006).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언론중재』, 98호(봄), pp. 62~78.
- 김옥조(2007). 『미디어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택수(2002). 판결로 본 연예관련 기사의 법적 문제. 『언론중재』, 85호(겨울), pp. 4~15.
-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 박용상(1997). 『언론과 개인법익』. 서울: 현암사.
- 윤성옥(2007). 한국 스타의 권리 상품화에 관한 연구: 1990년~2007년까지 스타의 권리 분쟁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9권 2호, pp. 91~122.
- 염규호(2000).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 『언론중재』, 74호(봄), pp. 62~81.
- 이승선(2004).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8권 3호, pp. 293~334.
- 이재진(2009).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재진(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재진(2004).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미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공인이론'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8권 3호, pp. 7~50.
- 이재진 · 이성훈(2003).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호, pp. 141~176.
- 차용범(2002).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여름호, pp. 414~445.
- 한위수 (2004). 공인관련 보도의 법적 제문제: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 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91호(봄), pp. 22~36.
- Bird, E. (1995). For enquiring minds: A cultural study of supermarket tabloids.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W. (1970). Imagemaker: Will Rogers and the American Dream.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Burr, S. L. (2004). Entertainment law. Thomson West.
- Dyer, R. (1982). Stars. 주은우 역 (1995). 『스타: 이미지와 기호』. 서울: 한나래.
- Nordhaus, J. E. (1999). Celebrity' rights to privacy: How far should the paparazzi be allowed to go? Review of Litigation, 18(2), 285~316.
- Ware, H. E. (1997). Celebrity privacy rights and free speech: Recalibrating tort remedies for "outed" celebrities.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32(2), 449~489.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 검토

양 재 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변호사

I.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100일을 돌아보며

2009년 8월 7일 발효된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¹⁾이 지난 11월 14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았다. 이 기간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가 뿌리내리느라 진통을 겪는 일종의 적응기였다.

개정 언론중재법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난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실무진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가 그러했다. 법 시행 전, 대부분의 실무진들은 언론사닷컴이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더불어 개정 언론중재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포함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법 시행을 불과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공포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²⁾ 시행령에서는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신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위 규정의 문제점은 이것이 전부 아니었다. 시행령 부칙³⁾에 의하면, 유독 해당 규정의 시행일만 공포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로 유보되어 있었다. 유보된 기간 동안,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음은 물론이다.⁴⁾

1) 이하 '언론중재법'.

2) 이하 '신문법'.

3) 이 시행령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당시 실무진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일단, 신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이 유보된 기간, 즉 8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언론사닷컴은 개정 언론중재법에 의거,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11월 6일부터는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발효됨에 따라 언론사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해당하게 되며 인터넷뉴스서비스로서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여기서 '자동적으로'를 강조한 이유는 개정 언론중재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제2조 제18호)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규율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을 신설, 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난 100일 동안 여러 시행착오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서서히 포털의 ‘표시의무’⁵⁾라든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 등 개정 언론중재법 상의 새로운 제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⁶⁾ 또, 예상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이지만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볼 때, 총 127건의 포털을 상대로 한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에서 80% 정도가 피해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포털 관련 조정사건 통계

	조 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 정 성립	조 정결 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동 의	이 의	계 속					
정 정	59	14	10						31	4
반 론	8							1	7	
추 후	1	1								
손 배	43	3				1		1	26	12
계	111	18	10			1		2	64	16

〈표 2〉 포털 관련 중재사건 통계

	중재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정 정	10	10					
반 론	6	6					
추 후							
손 배							
계	16	16					

보다시피, 인터넷신문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되게끔 되어 있다. 언론사닷컴이 개념적으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인터넷신문으로 되는 순간,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5) 개정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포털사업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의무’를 가리켜 ‘표시의무’라 부르고 있다. 표시의무는 포털의 엄청난 전파력을 통해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시의무를 포털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여상원,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언론중재, 통권 112호. 언론중재위원회, 2009, p. 17)
- 6) 현재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선 포털사업자의 표시의무 이행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사 제목 하단 또는 본문 하단에 “본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본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중임”이라는 문구를 달고 있다. 이것은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1조 제3항 ‘접수담당 부서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경우 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거, 해당 기사 제목 바로 밑에 ‘본 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가 진행 중임’이라는 문구를 기사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본문 하단보다는 제목 하단에 표시를 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본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역시 시간이 좀 더 흘러 보다 풍부한 사례들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며 조정·중재실무 또한 확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무상 문제되었던 쟁점들은 무엇이었으며 현장에서는 어떻게 정리,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논의는 크게 두 부분, 즉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언론사닷컴”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실무상 어떤 점들이 다투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개정 언론중재법에 관한 문헌이나 판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본문 중에 다소 주관적인 의견 내지는 주장에 불과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II.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실무상 쟁점

1. 법 개정 사항

지난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법이 처음 제정된 이

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 바로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많은 언론들⁷⁾은 포털이 언론행세는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포털 책임론’을 주장했다.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이러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언론보도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⁸⁾

제2조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당초에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규율할 것인지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을 신설, 이에 포섭시키는 방안을 채택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해야 한다. 그러나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터넷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의미

7) 2006년 8월 17일자 한겨레 ‘책임 안지는 포털, 오보정정 섹션 만들라’; 2006년 9월 22일자 KBS 미디어포커스 ‘포털 뉴스, 언론기능 외면 언제까지’; 2006년 9월 22일자 매일경제 ‘신문기사 제목, 포털에선 제멋대로’; 2006년 11월 22일자 한겨레 ‘포털, 언론처럼 오보 책임 져라’

8) 개정 언론중재법 공포 당시 2009. 2. 6자 관보(제169335호, p. 130.)에 기재되어 있는 법 개정의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 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포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해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흔히, IPTV라고 불리는 것으로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세 개 업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웃링크 방식에 의한 뉴스 서비스와 뉴스 검색결과에 대해서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는 것에 대해 일부 포털업체의 반발이 심하다. 결국, 포털의 다양한 뉴스서비스 방식 중 어디까지를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1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이상의 관련 규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만 한다. 첫째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이어야 한다. 둘째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한다.

여기서, 입법자가 첫 번째 요건 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두 번째 요건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물론이고, 대다수 인터넷신문들이 자체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다른 언론의 기사를 구매하거나 제휴를 맺어 매개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개념적으로는 이들 역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매체들의 법적 지위가 인터넷신문(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인지, 아니면 인터넷뉴스서비스인지 혼란스럽게 된다. 입법자는 두 번째 요건을 둬으로써 해당 매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 요건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상당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각 기업체의 홈페이지에서는 홍보의 일환으로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해 놓거나 링크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러한 홈페이지들마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된다면 입법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요건으로 말미암아 입법자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적용 범위가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좁혀질 수 있었다.

10) 2009. 11. 2자 빅뉴스 “포털 자체 뉴스, 언론중재 대상 제외 확정”.

2. 쟁점 1 :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과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범위

가. 문제의 제기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버, 파란, 드림위즈, 야후, 구글 등 우리나라 웬만한 포털들은 예외 없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¹¹⁾은 예외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 포털이 큰 틀에서 개정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세부적인 데 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은 생각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또한, 각 포털들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아웃링크 방식에 의한 뉴스서비스와 뉴스 검색결과에 대해서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는 것에 대해 일부 포털업체의 반발이 심하다.¹²⁾ 결국, 포털의 다양한 뉴스서비스 방식 중 어디까지를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나. 포털 뉴스서비스 방식의 다양성

(1) 뉴스 검색, 뉴스 홈, 뉴스박스

포털이 이용자들에게 뉴스서비스를 하는 방식은 크

게 두 가지, 자체 뉴스게시공간을 활용하는 방식과 검색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자체 뉴스게시공간을 통한 뉴스서비스

포털의 자체 뉴스게시공간으로는 ‘뉴스 홈’과 ‘뉴스박스’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뉴스 홈이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속보 등 각 분야별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선별하여 포털 자체적으로 게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포털들이라면 예외 없이 이 뉴스 홈을 설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뉴스박스’의 예



〈그림 2〉 ‘뉴스 홈’의 예



11)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네이버-주식회사 엔에이치엔, 다음-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야후-야후코리아 유한회사, 파란-케이이티하이텔 주식회사, 드림위즈-주식회사 드림위즈, 구글-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천리안-주식회사 테이콤멀티미디어인터넛.

12) 업계의 반발이 컸던 이유 중의 하나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구글”을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에서 제외할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과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과 성격은 전혀 다르다. 인터넷언론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도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뉴스캐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포털의 핵심적인 뉴스게시공간이라 할 수 있는 ‘뉴스박스’에 어떤 기사를 게시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 포털사의 권한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뉴스캐스트’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편집권한을 언론사와 이용자들에게로 이전했다고 한다.

간이면서도 뉴스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개 뉴스박스는 각 포털사이트 초기화면 중에서도 가장 주목도가 높은 위치, 즉 상단부 정중앙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게시되는 뉴스의 양만 놓고 보면 뉴스 홈에는 수십 건 이상의 기사도 충분히 올릴 수 있지만 뉴스박스에 게시될 수 있는 기사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주목도 측면에서 뉴스 홈은 뉴스박스에 비할 바 아니다.

거의 모든 포털들이 뉴스 홈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뉴스박스에 는 예외가 존재한다. ‘구글(Google)’이나 ‘빙(Bing)’과 같은 일부 외국계 포털의 초기화면에는 뉴스박스가 없다. 뉴스박스 외에도 검색창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메뉴가 없다는 것을 이들 포털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림 3〉 뉴스박스 없는 포털의 예



〈그림 4〉 네이버 뉴스캐스트



이들 두 개 포털 외에는 대체로 뉴스박스를 두고 있으나 뉴스박스의 운영방식은 각 포털사마다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다. 네이버에서 ‘뉴스캐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포털의 핵심적인 뉴스게시공간이라 할 수 있는 ‘뉴스박스’에 어떤 기사를 게시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 포털사의 권한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뉴스캐스트’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뉴스박스에 대한 편집권한을 언론사와 이용자들에게로 이전했다고 한다.¹³⁾ 네이버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몇 개 언론사의 기사만 뉴스박스에 노출되도록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동시에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언론사

13) 2006. 11. 15.자 미디어오늘 4면 ‘네이버, 12월 뉴스개편안 시행’.

는 자신들이 생산한 수많은 기사 중 어떤 기사를 네이버 뉴스박스에 올릴 것이며, 그 제목은 또 어떻게 달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검색 기능을 통한 뉴스서비스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은 2000년도를 전후해서였다. 당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큰 기대감이 없었다고 한다.¹⁴⁾ 그래서 뉴스의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행위 없이 뉴스 리스트만을 제공하는 단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포털은 이용자들이 검색창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실시하면 관련 기사나 글들을 찾아 목록 형식으로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러면 이용자는 검색결과 중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글이 있는지 확인하여 클릭하게 되며, 이용자는 해당 기사나 콘텐츠가 속한 사이트로 이동하여 글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포털이 말 그대로 ‘관문’의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포털이 발생한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뉴스서비스의 방식이다. 현재 ‘구글’과 같은 경우가 이러한 전통적인 뉴스서비스 방식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방식의 특징으로는 뉴스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포털 입장에서 자체 뉴스게시공간을 통한 뉴스서비스가 ‘보이는 기사’, ‘능동적 기사’ 라면 검색 기능을 통한 뉴스서비스는 ‘보여주는 기사’, ‘수동적 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링크, 아웃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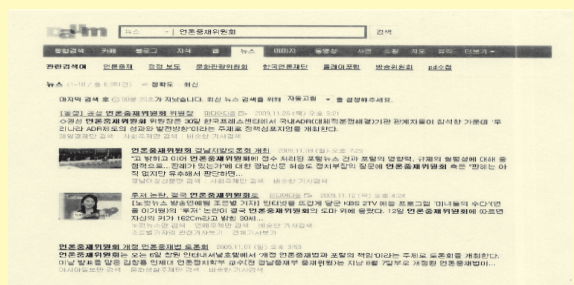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다시 그 연결 방식에 따라 인링크 방식과 아웃링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링크

란 포털이 기사를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털 자체 서버에 해당 기사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즉, 포털의 자체 서버에 해당 기사가 저장되어 있다면 인링크 방식에 의한 뉴스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자체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기사는 아웃링크 방식에 의한 연결만 가능하다. 물론, 포털 자체 서버에 저장된 기사라도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 네이버, 다음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검색 결과로 나온 기사 중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여 기사를 열람하게 되지만, 해당 기사 상단 혹은 하단에 ‘네이버’ 혹은 ‘미디어다음’이라는 표시를 클릭하면 인링크 방식으로 같은 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5〉 인링크와 아웃링크 동시 가능 방식(1)



〈그림 6〉 인링크와 아웃링크 동시 가능 방식(2)



14) 양삼승,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통권 94호, p. 28.

가치중립적 나열, 인위적인 편집의 배제 등이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논거로서는 일응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포털에 의한 피해 확산의 방지에 있다.

해당 기사가 인링크 방식에 의한 것인지, 아웃링크 방식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할 실익은 다음과 같다. 인링크 기사의 경우에는 포털사업자가 해당 기사에 대해 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기사에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달 수도 있고 기사본문 내용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 또한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웃링크 기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시의무, 정정보도의무, 수정의무 등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아웃링크 기사는 해당 포털의 서버가 아닌, 다른 언론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포털은 단지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기사로 이용자를 연결시켜줄 뿐이다.

〈표 3〉 각 포털사들의 뉴스서비스 방식

	네이버	다 음	네이트	야 후	구 글
뉴스 홈	○	○	○	○	○
뉴스박스	○	○	○	○	×
인링크	○	○	○	○	×
아웃링크	○	○	○	×	○

다. 업계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다양한 뉴스서비스 방식 중 ‘뉴스 검색결과’와 ‘아웃링크에 의한 뉴스서비스’에 대해 포털 측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검색서비스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언론기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소재하는 모든 정보를 검색하여 이 중 특정한 검색어를 포함한 문서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다¹⁵⁾”

“통상적인 포털의 경우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기사를 공급받아 자신의 DB에 저장하고 편집하여 이를 게시한다. 그러나 검색로봇이 각 언론사의 웹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클릭한 뉴스를 수집하여 그 클릭의 양이 많은 순서에 따라 인위적인 편집 없이 기계적으로 배열하여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링크만을 제공

15) 2009. 10. 28. 구글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낸 협조 요청서.

하고 있다”

가치중립적 나열, 인위적인 편집의 배제 등이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논거로서는 일응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포털에 의한 피해 확산의 방지에 있다. 수많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관문으로 활용하는 포털은 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해 그것이 언론보도가 되었든, 검색서비스가 되었든 피해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범위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색서비스라든가, 뉴스제공 내지는 매개행위가 언론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공 혹은 매개의 대상이 사회적 공신력이 높은 언론의 기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털의 뉴스서비스 행위가 언론행위로서의 성질을 띠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점까지 감안하여 입법자는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법적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 실무에의 적용

이에 따라 현재 실무는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는 그것이 검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뉴스게시공간에 올려진 기사든지 불문하고 일단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색에 의한 결과 중에서 뉴스

카테고리가 아닌 그 밖의 항목에 노출된 기사나 그와 유사한 형식의 글에 대해서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블로그나 카페, 웹문서 항목에 있는 기사에 관해서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율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포털의 뉴스서비스라 하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인링크 방식에 의한 기사는 아웃링크 방식에 의한 기사에 비해서 포털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자체 뉴스게시공간의 기사로 인한 책임은 검색 기사에 비해 그 정도가 무거울 것이다.

3. 쟁점 2: 포털의 자체 생산 기사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인가?

가. 문제의 제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포털들은 자체 기사를 제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두고 자체 기사를 생산했지만 해당 사업을 접은 지 오래다.¹⁶⁾ 이런 상황에서 이제적으로 포털사이트 ‘야후’에서는 「송지현의 사람IN」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포털의 자체 제작 기사 혹은 콘텐츠를 개정 언론중재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었다.¹⁷⁾

16) 대신, 다음은 현재 ‘블로거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블로거 기자단에 대해 일부에서는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단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어 둔다.

17) 2009서울조정413; 이 사건은 미디어위치 발행인 변희재 씨가 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심리를 담당 한 서울제6중재부에서는 결국, 야후의 자체 제작 콘텐츠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포털의 자체 제작 콘텐츠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을 담당한 서울제6중재부는 포털 자체 제작 콘텐츠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견해의 대립

포털의 자체 생산 기사 역시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다른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규제하게 된 마당에 불법성의 측면에서 훨씬 심각하다고도 할 수 있는 자체 생산 기사를 법문에 얹매어 규제하지 않는다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포털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개정 언론중재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 비록 법문의 해석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울지라도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극적인 법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부정설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상 포털이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언론의 기사’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개정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언론의 범위를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제한하고 있다.¹⁸⁾ 개정 언론중재법에 의해 정정보도 등의 의무를 지게 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이러한 언론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할 때 언론의 기사와 기타 언론 아닌 매체의 기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는 것이 부정설의 주장이다.

다. 중재부의 판단

포털의 자체 제작 콘텐츠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던 해당 사건(2009서울조정413)을 담당한 서울제6중재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털의 자체 제작 콘텐츠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첫째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포털업체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얻는다.

둘째로, 해당 사건의 조정신청 대상은 언론의 기사가 아니라 포털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터뷰 영상으로서 관계 규정의 해석상 반론보도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8)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언론에 대한 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그간 신문법 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이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 나뉘어진 점 외에는 언론의 범위에 아무 변화가 없다.

셋째로, 개정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조항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역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역할은 다른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라. 사건에 따른 정리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포털의 책임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털 책임론과는 별개로, 그 법적 지위는 여전히 언론이 아니다. 입법자의 시각은 포털을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 내지는 전파자로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포털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사 생산자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기사의 전달자로서 그 피해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포털의 자체 제작 콘텐츠의 성격 또한 명확해진다. 그것은 언론의 기사가 아니다.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기사와 포털의 자체 제작 콘텐츠 사이에는 신뢰도라든가,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시각이었을 것이다.

4. 쟁점 3: 포털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가. 현재까지의 상황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11월 30일까지 포털을 상대로 총 43건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으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취하로 종결되었고, 3건이 조정성립되었으나 이들 역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지는 않았다.¹⁹⁾ 포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그 결과가 미흡한 것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피해자들의 의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²⁰⁾ 또, 올 4월 19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바 있는 관련 판결²¹⁾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청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판결에 따르면, 포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

19) 2009서울조정516~518 사건이 이에 해당되는데,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당사자 간에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포괄적 합의가 성립되었다.

20) 김창룡, 개정 언론중재법과 포털의 책임,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지방토론회 주제논문집, 2009, p. 5.; 논문에서 김창룡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포털이 기사만 삭제해줘도 만족하고 사건을 취하였다.

21) 대법원 2009. 4. 19. 선고 2008다53812 판결.

포털의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포털의 특수한 사정, 즉 표시의무 이행 여부, 이행 방식의 차이, 검색결과에서의 배제 여부 및 해당 기사가 자체 뉴스게시 공간에 올라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는 경우는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체 서버에 저장, 보관하면서 그 가운데 일부 기사를 포털이 자체적으로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한 때로 제한된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런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접수된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사건들²²⁾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포털의 손해배상책임범위

그러나 설령 대법원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포털의 손해배상책임범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즉, 매체에 따라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위원회 절차²³⁾ 속에서 각각의 포털사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²⁴⁾ 이것은 일용 기사 제공언론사와 포털의 책임관계가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민법상의 법리와 다소 상충되는 듯한 모습이다.

현재 실무에서는 포털 사건이 접수되면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 사건의 심리를 같은 날짜로 잡되, 기사제공언론사 사건부터 먼저 심리하고 그 후에 다수의 포털 사건을 병행심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 방식은 손해배상에 관한 주문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한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총액을 산정한 다음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피신청인들 모두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간명할 수 있다. 각각의 언론사 내지는 포털사업자 간 책임 분담의 문제는 당사자 내부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고 이 단계까지 중재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사제공언론

22) 현재까지 손해배상이 청구된 해당 기사들은 모두 검색결과로 노출된 것들일 뿐, 자체 뉴스게시공간에 선별하여 올린 것이 아니었다. 2008다53812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뉴스서비스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23)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언론중재법 제18조 제6항에 따르면 소의 객관적 병합은 규정되어 있으나 주관적 병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정 실무상으로도 다수의 언론사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조정절차의 성격상, 동일한 사안이라도 각 언론사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체별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24) 이상원, 앞의 논문, p. 21.; 이 논문에서도 중재부에서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 언론사의 고의, 과실 개입 여부, 양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 제반 사정을 따져 책임범위를 달리하도록 업무처리할 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다.

사와 각 포털사들을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지금의 방식하에서는 조정단계에서 각 매체별로 책임의 범위를 산정하여 배상액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각 포털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부진정연대책임임을 전제로 산정했을 경우 산출 가능한 금액 이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기울여야 한다. 각 포털사마다 독립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우연한 사정이 배상금액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포털의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포털의 특수한 사정들, 즉 표시의무 이행 여부라든가, 이행 방식의 차이, 검색 결과에서의 배제 여부 및 해당 기사가 자체 뉴스게시공간에 올라간 것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II. 언론사닷컴²⁵⁾ 관련 실무상 쟁점

1. 개정 언론중재법상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법률용어가 아닌 것처럼 “언론사닷컴” 역시 법률용어가 아니다. 언론사닷컴은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적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사닷컴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가. 구 언론중재법에서의 인터넷신문 관련 규정

구 언론중재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2조 10.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²⁶⁾

위와 같은 형식의 조문에 의해 인터넷신문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조항은 언론중재법 제2조 제10호가 아닌, 신문법 제2조 제2호라 할 수 있다.

제2조 2.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란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과 지속성을 갖춘 전자적 간행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요소라 할 수 있는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과 “지속성”에 관해 신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구 신문법 시행령에서는 이들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25) 언론사닷컴이란, 방송사나 신문사, 뉴스통신사와 같은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온라인을 기반으로 시작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과 같은 독립형 인터넷신문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종속형 인터넷신문’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26) 언론중재법의 계속되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언론중재법에는 많은 위임규정 내지는 차용규정이 존재한다.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과 같은 핵심 개념 모두 언론중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의 개념은 방송법에 의해, 일간지라든가 인터넷신문의 개념은 신문법에 의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해 규정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해서는 이례적으로 언론중재법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신문에 관해서는 신문법에서의 개념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개정 신문법 시행령으로 기존 신문사 등이 별도로 설립한 계열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언론사닷컴들도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방송사닷컴, 비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먼저,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으로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며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이 자체 생산 기사일 것을 요구했다. 또, 지속성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가 게재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구 신문법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인터넷매체들은 많지 않았다. 소위 ‘독립형 인터넷신문’이라 일컬어지는 매체들만이 인터넷신문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언론사닷컴과 포털들은 모두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인터넷신문의 범위를 좁히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요건은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 그 중에서도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이 자체 생산 기사여야 한다는 요건이었다.

나. 개정 언론중재법에서의 인터넷신문 관련 규정

이처럼 인터넷신문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 요건이 이번 개정 신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폭 완화되었다.

신문법 시행령 제2조 ② 제1항 제1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신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매체의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이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를 미달 하더라도 인터넷신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종전에는 인터넷신문으로 보기 어려웠던 언론사닷컴들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다. 개정 인터넷신문의 문제점

문제는 이 독자성 요건 완화의 적용대상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개정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기사생산자는 신문사업자이거나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 발행하는 자, 그리고 뉴스통신사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즉, ‘방송사업자’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매체가 빠진 것이다.

다음으로, 기사생산자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일 때만 독자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차용해온 개념으로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회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독자성 완화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언론사닷컴은 반드시 독립된 법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정리하자면, 기존 신문사나 잡지사, 뉴스통신사가 별도로 설립한 계열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언론사닷컴들만 개정 신문법 시행령에 의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방송사닷컴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비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 문제로 연결된다.

2. 인터넷신문의 범위에서 제외된

언론사닷컴들의 문제

가. 쟁점 1: 방송사닷컴의 법적 지위

현재 우리나라 공중파 3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케이블 방송사 등 대부분의 방송사 홈페이지는 인쇄매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공중파나 케이블을 통해 이미 방영된 뉴스나 프로그램이 이들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방송사업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독자성 완화에서도 배제되었다.

방송사닷컴에 언론중재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다. 하나는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이 주간 게재 기사건수의 30%를 초과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본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요건을 갖추기란 불가능하다. 방송사닷컴은 일반 언론사닷컴들보다도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본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방송사닷컴의 주된 기능과 역할은 방송사가 제작, 생산한 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정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단,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운영 주체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한다. 그렇다면, 방송사닷컴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이들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

나. 쟁점 2: 비독립법인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

중앙일간지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언론사닷컴들이 기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
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법
적용의 상황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피하기 위함이다.

존 언론사의 출자로 설립된 별도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일간지 소속의 일부 언론사닷컴 및 지방지나 특수지들에서 운영하는 상당수의 언론사닷컴은 기존 언론사 내의 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일간에 속하는 '문화일보' 라든가 '내일신문'의 경우에는 별도 법인이 아닌 해당 언론사 내 온라인팀에서 언론사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들 매체들이 개정 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독자성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독자성 완화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언론사의 계열 회사, 즉 독립법인 형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비독립법인 언론사닷컴 역시 언론중재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크게 두 가지다. 방송사닷컴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신문의 본래 요건을 충족하든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법 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운 측면이 있다.

먼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하는데 기존 언론사 중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곳이 거의 없다. 해당 닷컴사를 운영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의 출자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예가 많지만, 언론사 자체가 직접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경우는 흔치 않다.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기 전에는 이들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인터넷신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인터넷신문이 되려면 주간 게재 기사건수 중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이 30%을 넘어야 하고 상시 고용된 취재 및 편집 인력이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주간 단위로 기사가 계속 해서 올라와야 한다. 그런데 과연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이 이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기존 언론사업자에게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즉, 기존 언론사업자를 신문사업자(혹은 간행물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기사는 자체 생산 기사가 될 것이고, 해당 사업자에 상시 고용된 취재 및 편집 인력의 숫자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법 해석에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지난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부터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에 인터넷신문 규정을 적용했어야 했다. 당시 소관 관청이었던 구 문화관광부에서는 해당 언론사들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도록 지도했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신문법 소정의 벌칙 규정²⁷⁾을 적용했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이들 매체를 상대로 조정신청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고, 이들 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조정심리를 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취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문화관광부에서 인터넷신문의 요건에 관한 기존 규정을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게 되면 일관성 없는 조치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기존 입장으로부터 선회하여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보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법 적용의 상황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 역시 인터넷신문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 쟁점 3: 인터넷TV의 법적 지위

웹TV 혹은 인터넷TV는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 및 개인 사용자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웹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²⁸⁾ 흔히 곰TV, 판도라TV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매체에서 와이티엔이라든가, 일부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을 중계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웹TV는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념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매체에 올

라오는 이용자들의 자체 제작 콘텐츠는 ‘언론의 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기 어렵다. 인터넷TV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하다. 개정 언론중재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부가통신사업자여야만 하므로 웹TV를 운영하는 해당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특수한 형태의 언론사닷컴 등의 법적 지위

매체의 유형	법적 지위
방송사닷컴	인터넷뉴스서비스
비독립법인 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
인터넷 TV	인터넷뉴스서비스 (단, 기존 언론사의 뉴스 등을 서비스하는 경우에 국한됨. UCC 등 이용자 자체 제작 콘텐츠는 제외됨)

IV. 검토를 마치며: 입법적 제안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지난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결수단이었다. 하지만 아직 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 개정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관련 업체가 뉴스서비스 방식만 조금 변경해도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중재법 대상 매체들의 규정 방식이 몹시 폐쇄적인 데 있다고도 보

27) 구 신문법 제40조 제1호;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백종호, 인터넷TV, 도대체 IPTV와 뭐가 다른거야?, 방송문화, 2009년 9월호, p. 48.

뉴스서비스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언론중재법상 매체 규정방식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향후 법 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다. 이러한 방식의 매체 규정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식의 매체들, 즉 신문이라든가, 방송, 뉴스통신에 관해서는 유효했고 비교적 법 적용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전통적인 매체와는 태생이 다른 포털, 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 등의 뉴미디어들에도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들 새로운 매체들은 앞으로도 경영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뉴스서비스 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으며 심지어 뉴스서비스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을 심분 감안한다면 하더라도 업체의 입장에 따라 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언론중재법상 각 매체를 규정하는 방식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법상 매체에 대한 규정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해 의견을 모아 향후 법 개정 시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포털의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 자율규제모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현황과 과제 -

1. 들어가는 말

황 용 석

-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인터넷은 미 국방부의 군사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ARPANET이라는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운영권이 민간으로 이양된 후 전혀 새로운 개방적이면서 범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해 왔다. 인터넷의 발전방향을 보면, 통제에서 개방으로, 거점 서버 중심에서 개인 간 분산형 네트워크로, 정보교환에서 미디어적 복합기능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3년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에 의해 개발된 월드와이드웹(이하 웹)은 인터넷 이용을 일반인에게까지 확산시키고 그 기능을 대중매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국경 없는 전자출판과 정보교류가 일어나면서 웹은 과거의 미디어 구분법으로는 분류하기 힘든 융합형 미디어로 자리매김했다.

국경을 초월하는 가상공간을 형성하는 이 새로운 미디어는 규제가 가능한가? 이러한 물음에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존 페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 1996)와 같은 초기 인터넷 전문가들의 철학은 비교적 명확했다. “국가 간 경계가 없고, 편지, 출판, 방송을 아우르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방식을 수용하는 인터넷은 개방적이며 국가적 규제의 영역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웹을 개발한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역시 ‘웹의 개방성’을 설명하면서 웹은 기존의 낡은 분류체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것들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했다(Berners-Lee & Fischetti, 1999).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자유주의적 시각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것을 매개로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

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가상공간의 문제는 실체의 다양한 문제점을 투영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기술적, 법률적, 도덕적 규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법률적 장치들이 국가별로 강화되면서 이 복잡한 미디어를 규제하려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속성을 가진 인터넷은 오래 동안 규제 방식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Liu, 1997).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전화서비스로 대표되는 통신산업과는 다른 접근과 철학을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 규제의 주체와 규제의 대상이 누구인가는 인터넷 규제모형을 논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인터넷은 분산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보 송신자가 일방적인 우위에 있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는 매체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와 법을 통해 해결해 왔지만, 인터넷은 단순한 서비스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에 참여하는 국민의 행위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방송과 같은 행정적 규제가 갖는 문제점이 제기된다(황용석, 2009).

특히,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확인되면서 정치행동의 규제 차원에서 인터넷 콘텐츠 규제 법안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인터넷 콘텐츠 규제체계를 유지해왔으며 정부에 의한 행정적 규제보다는 민간영역과 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에 기반한 자율적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규제정책이 발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규제모델은 언론, 사상의 자유의 기본권에 기반한 공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시각의 모델(Libertarian Model), 정보의 상품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민간기업 모델(Private Enterprise Model), 국가의 안전확보와 시민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통제주의 모델(Statist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Kling, 2000). 클링의 시각을 토대로 보면, 국내의 인터넷 규제는 정부 또는 국가 중심의 통제주의 모델에 가깝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나라는 중국, 싱가포르, 이란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가 낮은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국내 인터넷 정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09년 3월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사회 의장: 주형철, 정책위원장: 김창희)의 출범으로 업계 공동의 자율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인터넷정책 전환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동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들이 개별사 차원에서 미디어 책무시스템(Media Accountability System)을 운영해 왔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별사를 넘어서서 공동의 자율규제기구를 만든 것은 인터넷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¹⁾

1) KISO가 한국 최초의 인터넷자율규제기구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이하 KIADO)가 2007년에 발족한 바 있다. 이 기구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및 사후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KIADO는 자체 인터넷광고 윤리강령을 전제로 하여 자율적 통제를 위해 업계 스스로가 채택한 인터넷광고심의규정과 인터넷광고심의세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의 상호역할분담이 이루어진 공동규제모델을 최초로 시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KIADO의 활동이 광고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포괄적인 인터넷정책을 고려해서 출범한 KISO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자율규제의 핵심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자율규제는 정부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무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탈규제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KISO의 출범은 한국 인터넷규제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하지만, 현재의 제도 속에서 이 새로운 기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 글은 KISO의 출범과 관련해서,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KISO를 둘러싼 국내 자율규제 환경을 통해 한국에서 자율규제기구의 안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인터넷과 자율규제

1) 자율규제의 개념

규제란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나 간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규제 또는 행정규제(이하 행정규제)란 용어로 통칭된다. 행정규제는 행정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행정주체라 할 수 있는 정부 부처 등이 행하는 일련의 목적적 활동으로서 법령에 기반해서 작동된다(이민영, 2009). 행정규제는 누가 규제를 하는 가를 놓고 볼 때, 행위의 주체 스스로가 아닌 타율기관, 즉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율규제는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민간 또는 기업이 스스로의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율규제의 개념은 비교적 폭 넓어서 유럽의 경우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 공동규제(coregulation)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Price & Verhulst, 2000).

자율규제의 핵심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자발적 규제기준을 정부가 위임하는 경우가 유럽에서는 일반적이다(Bonnici, 2008). 자율규제는 정부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무규제(un-regulation)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탈규제(de-regulation)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자율규제란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를 지칭하지만, 다른 한편, 민간영역이 규제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스스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자율규제의 개념이 사용된다. 사업자 자율규제는 주로 유럽 내 국가들 사이에서 선호되고 있다. 자율규제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으나 본래의 의미로는 ‘산업 자율규제’(industry self-regulation)를 뜻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피규제 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최병선, 2000).

자율규제형 모델은 이용자, 사업자, 민간기구들이 일련의 장치들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규제에 참여하고 국가와 법률이 이들의 활동을 협력·지원함으로써 합리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규제원리이다. 인터넷과 관련해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법령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규칙의 제정, 규범의 집행, 위반할 시 가해지는 적절한 제재 등이다.

자율규제는 규제절차가 신속하고 예방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규제기준의 제정이나 규제심사과정에서 규제의 주체들이 이해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이는 곧 규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규제효과가 특정 회원사에 제한된다는 점도 한계이다. 또한 자율규제 활동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오히려 사업자 또는 회원사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 비판으로 제기된다(이민영, 2009).

2) 인터넷자율규제의 필요성

인터넷이 기존의 미디어와 다르게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흐름이다. 몇 가지 관점에서 인터넷자율규제의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적 관점 : 앤드 투 앤드 원칙과

인터넷거버넌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인터넷 아키텍처는 본질적으로 자율규제를 지향한다.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의 성공은 국가의 주도보다는 민간적인 자

율성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 설계에 기인한다. 인터넷의 초기 설계자들은 방송시스템이나 초기 전화교환 시스템과 다르게 ‘앤드 투 앤드(end to end)’ 방식²⁾으로 인터넷을 설계했다. 앤드 투 앤드 원칙의 등장은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인터넷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TCP와 IP라는 두 가지 프로토콜을 분리해, 네트워크나 교환기가 전송과정에서 복잡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앤드 시스템이 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통신방식이 회선교환을 통해 통신세션을 개별적으로 제어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발상전환이었다. 즉, 네트워크 자체는 최저한의 기능만을 갖게 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토콜을 통해 앤드 시스템만으로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게 한 유연적 체제를 택한 것이다. 앤드 투 앤드원칙은 웹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그 우수성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Blumenthal & Clark, 2001)³⁾. 오늘날 웹 서비스의 발전은 중간 네트워크의 통제나 간섭 없이 앤드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한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앤드 투 앤드 시스템은 기술표준의 개방성과 기술개발의 분산성을 특징으로 한다. 네트워크상에 중간 통제자가 갖는 역할을 최소화한 구조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소수의 집중적인 통제가 어렵다(Froomkin & Michael, 1997). 이러한 기술

2) 기술분야에서는 ‘단 대 단’ 또는 ‘중단 간’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원어발음 그대로를 사용했다.

3) 앤드 투 앤드의 원칙(end to end principle)은 원래 end-to-end의 원칙은, 통신 전송로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에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과정에서 양 끝단의 시스템(예를 들어, 서버-개인 클라이언트 PC)들이 데이터 검증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예를 들면, 파일 전송의 경우, 아무리 신뢰성이 높은 전송로를 구축해도, 그것만으로는 전송을 보증할 수 없다. 그 밖에도, 라우터나 호스트에 있어서의 메모리의 비트 에러, 파일 시스템의 버그, 디스크의 에러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 에러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적 구조는 기술관리 체계나 사회관계를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도한 개방적인 구조로 만들었다. 또한 레식(Lessig, 1999)은 이러한 앤드 투 앤드 디자인이 낡은 미디어의 통제체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스럽게 했으며,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인터넷기술의 표준화 과정을 보면, 전 세계의 기술자들이 자율적인 관리 원칙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통치하다’, ‘관리하다’, ‘지배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용어인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정부(government)나 통치자(governor) 등의 용어에서처럼 통치양식(mode of governing)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도 각 분야의 관리양식이나 지배질서를 의미한다.

최근의 거버넌스 개념은 기존의 집중화된 형태의 관리양식을 넘어서는 상대적으로 탈집중화 내지는 분산화된 관리양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통치’나 ‘정부’ 형태의 관리양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이민영, 2009). 거버넌스를 ‘협치(協治)’, ‘공치(共治)’, ‘조종(操縱)’ 등의 용어로 번역하려는 시도들도 새로운 거버넌스의 개념이 기존의 통치를 넘어서는 독특한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원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거버넌스는 인터넷자율규제의 관리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적 매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터넷의 공동체에서 참여주체들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는 제도적 장치라 하

겠다.

자율규제의 관점에서 인터넷 거버넌스가 구현된 곳은 인터넷기술 및 주소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 협력기구들에서 이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등이 대표적이다.

나. 규제 효율성 관점 : 자율규제, 규제대상의 변화속도 못 따라가

분산형 미디어로서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은 사회정치적 가능성과 시장실패의 우려로 인한 제도적 규제 간의 상호감쇄효과(trade-off)를 일으켜 기존 매스미디어에 대한 전통적 규제틀의 부적합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율 중심의 규제틀은 규제대상의 변화 속도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의 역동적 변화를 중앙집중적 규제틀 안에 수용할 경우 과도한 규제 비용과 부작용, 우회 서비스 등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낮을 전망이다(황용석·이동훈, 2009).

현실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적 진화를 법률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제도적 격차가 너무 크다. 현행 법률을 사실상 우회하는 서비스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규제실익 보다는 규제폐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체계가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증진을 위한 인터넷 규제체계는 이용자 중심의 민간 영역의 자율성, 자발성을 토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터넷기업계, 이용자, 규제당국 등 세 주체의 상호협력과 공동 이해 증진을 토대로 한 자율적 거버넌스는 중요한 규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규제수혜자의 관점 : 규제대상과 규제 수혜자의 모순

전통적 규제들의 경우 규제 수단의 직접 대상은 미디어이며, 수용자는 그 효과의 수혜 대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인터넷에 전통미디어의 규제들을 적용하면,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이용자에 대한 규제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규제 수단의 영향력에 수용자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혜택 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인터넷의 미디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규제를 적용한다면, 미디어 이용자로서 수용자는 전통적으로 규제 수단이 목적하는 바(=효과)로부터 혜택을 받을 대상이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인터넷에 전통적 자율규제모델을 적용한다면 수용자는 직접 규제의 대상이 됨으로써 규제 모델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다.

3) 인터넷자율규제의 유형 구분

자율규제는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정부가 이 규제주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자율규제 주체가 규제기준을 설정할 때 정부와 맺는 관계가 중요한 구분점이 된다.

프라이스 등(Price & Verhulst, 2000)은 자율규제를 4가지로 구분했다. 자발적 자율규제(voluntary self-regulation)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승인적 자율규제(sanctioned self-regulation)는 민간에서 스

스로 규제하되,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위임적 자율규제(mandated self-regulation)는 민간에서 정부가 정의하는 제도 틀, 예를 들어 법령·규칙·가이드라인 안에서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하도록 분명하게 요구받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강제적 자율규제(enforced or coerced self-regulation)는 민간영역이 스스로 규제를 형성하고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하는 규제를 강제한다.

보니치(Bonnici, 2008)는 자율규제를 법령적 자율규제(statutory self-regulation), 위임적 또는 대리적 자율규제(mandated or delegated self-regulation), 강제적 자율규제(coerced self-regulation), 합의적 자율규제(agreed self-regulation)로 구분했다. 법령적 자율규제는 정부 규제에 의해서 민간에게 요구되거나 진작되는 자율규제를 말한다. 법령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규제는 민간의 자율규제의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유럽의회에서 개인데이터 이용에 관한 자율규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위임적 자율규제의 경우 비록 민간이 규칙을 정하고 규칙집행을 하지만, 이러한 민간 규칙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공정거래청 장관(the Director-General of Fair Trading)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제적 자율규제는 민간에 의해 자율규제활동을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법령이나 의도적인 위협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강제적 자율규제의 경우 쉽게 법령적 자율규제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며 주로 금융분야에 이러한 유형의 자율규제가 많다.

합의적 자율규제는 민간 참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합의는 주로 민간 참여자들 공동의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자율규제를 통한 공동의 편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종종 이러한 유형의 자율규제는 산업주체들과 소비자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드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황용석과 이동훈은(2009) 자율규제를 완전 위임형 자율규제, 부분위임형 자율규제, 강제적 자율규제, 자발적 자율규제로 구분했다. 완전위임 자율규제는 협력형 공동규제 형식을 취한다. 정부로부터 법률적, 정책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율규제기구가 이용자 간 분쟁조정, 교육, 핫라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은 규제당국에 넘긴다. 완전위임 자율규제에서는 정부 또는 규제당국이 자율규제기구의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으며, 규제 역할에서 각 영역에 맞춰 상호 협력적으로 대처한다. 완전위임 자율규제에서는 정부와 자율기구 간의 법률적 위임관계가 없으며, 대신 정책적 승인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앞에서 나온 승인적 자율규제와 유사하다.

부분위임 자율규제는 규제당국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자율규제기구가 정부와 공동으로 규제 기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위임형 공동규제에 해당한다. 미국의 V-chip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자율기구의 유지, 운영에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가에 따라 자율성의 범위가 영향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자율기구의 재정 지원을 정부가 맡기 때문에 규제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율기구의 권한에 대한 법률적 승인을 정부가 하는 경우, 자율기구가 규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위임을 철회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부분위임 자율규제에서는 불법 콘텐츠와 같이 사법적, 행정적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사안은 규제당국이 맡고 ISP 등 기업은 처리 가능한 수준의 분쟁사안을 담당한다. 부분위임 자율규제에서는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자율기구와 규제당국이 법률적 수직관계에 놓이는 경우 형식은 위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율규제에 가까울 수도 있다.

자발적 자율규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자발적 자율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자율규제 기능을 완전히 일임한 경우로 규제당국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권한 위임에 따른 법률관계는 없다. 인터넷 자율규제모델에서 자율규제기구는 심의, 교육, 핫라인, 분쟁조정, 정책대응 등의 역할을 주로 하는데, 자발적 자율규제에서는 다양한 민간영역의 자율기구들이 이 역할들을 맡는다.

인터넷에 대한 행정적 규제보다는 ISP 등 인터넷산업 외부영역, 즉 시민영역의 다원화된 자율기구들이 사회적 규제기구로 기능한다. 따라서 자발적 자율규제에서는 민간영역의 협력체계가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 요인이다. 민간영역을 구성하는 기업영역과 시민영역 간의 상호 협력과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도적 실익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 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협력적·공동 규제(co-regulation), 심사받은 자율규제(audited self-regulation) 그리고 자율규제(self-regulation)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Tambini, Leonardi, and Marsden, 2008).

〈표 1〉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본 인터넷 자율규제의 유형

	자발적 자율규제	부분위임 자율규제	완전위임 자율규제
법률 위임 방식	없 음	법률적 승인, 정부의 관리/감독	정책적 승인
기구의 법률적 위상	없 음	법률적 지위	제도적 협력 지위
정부와의 관계	위임 관계없음	법률적 위임	제도적 협력 관계
담당 자율기구 수	복 수	단수 또는 복수	단수 또는 복수
자율규제 기능 중심 기구	소비자 및 기업 기구	기업 기구	기업 기구
자율기구 형태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자율기구 운영주체	다양	이사회 또는 위원회 (정부인사 포함 가능)	이사회 또는 위원회
자율기구의 주요 기능	교육/핫라인/정책연대	교육/핫라인/정책연대/ 분쟁조정	교육/핫라인/정책연대/ 분쟁조정
자율기구의 재정	기금, 기부, 회비 등 다양	기금, 기부, 회비, 정부지원 분쟁조정	기금, 기부, 회비 등 다양
심의 콘텐츠	불법 콘텐츠	불법 콘텐츠	불법 콘텐츠

〈표 2〉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유형

국 가	자율규제기관	특 징
미 국	ICRA, CyberAngels, Cybertipline IED, WHOA 등 다수	- 인터넷기업 및 소비자 등 민간영역 중심의 자율규제 - 핫라인 통한 신고/대응규제방식을 채택 - 아동음란물 등 불법성 명백한 콘텐츠 중심의 내용규제 - 표현의 자유 중심의 공민적 가치를 강조하는 인터넷 규제모형을 채택
영 국	IWF	- Ofcom, DCMS, 가족부, 의회 등 여러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 불법 정보에 초점을 둔 콘텐츠 규제체계 - 신고/대응규제방식, 핫라인시스템
프랑스	AFA	■ AFA - 정부, 업계로부터 독립적 성격 - 법규 위반이 명백한 유해 정보에 대응 - 신고/규제방식, 핫라인시스템 - 내용등급제 운영 - VOD 등 non-linear 콘텐츠에도 관여(내용등급제 형태)

국 가	자율규제기관	특 징
프랑스	FDI	■ FDI - AFA의 효율성 비판에 따라 설립 - 정부의 재정 지원 받음 - 정책 제언 및 분쟁 중재에 초점 - 전자상거래, 도메인 분쟁 등 중재
독 일	FSM KJM	■ FSM - 인터넷업계 중심의 자율규제기구 - 신고/규제방식으로 대응 - 법규 위반이 명백한 유해 정보를 중심으로 규제 - 규제 담당 민간위원회 KJM과 밀접한 관계에서 운영됨 ■ KJM -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 - KJM은 FSM의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승인 권한을 가짐
일 본	EMA I-ROI	- 2008년 6월 정부, 업계 공동으로 유해 사이트 규제법 설립 - EMA(모바일콘텐츠심사감시운용기구), ROI(인터넷콘텐츠심사감시기구)가 각각 필터링 기능을 수행 기능을 수행 - EMA는 모바일인터넷콘텐츠 민간감시 규제 - I-ROI는 인터넷 콘텐츠 인증 기능

3. KISO 출범의 배경

1) 과도한 행정규제체계와 규제비용의 발생

국내 법률상의 포털은 매우 복잡한 법적 규제의 틀에 놓여 있고 이러한 법률을 통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행정규제장치의 강화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논란을 낳는 한편, 인터넷사업자의 비용증대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규제법안만 보더라도, ‘전기통신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언론관계법에서의 ‘신문등의진흥에

관한법률’과 ‘언론중재법’, 정치관계법 가운데에서는 ‘공직선거법’이 포함된다.

제도 측면에서는 인터넷 콘텐츠 규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규정된 방송 및 통신 관련 콘텐츠 전반에 대한 심의,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 등급제, 핫라인, 분쟁조정 기능 등을 동시에 수행한다. 기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수행해온 불법 콘텐츠의 신고처리 기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로 개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 인터넷포털의 법률적 지위와 관련된 법적 용어

법 률	용 어	정의 내용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09. 7. 31.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	인터넷뉴스서비스	제2조(정의 5.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2조(정의 6.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기사배열책임자	제2조(정의 9.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2조(정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제2조(정의) 30.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 에관한법률 (2009. 2. 6.개정/8. 7. 시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2조(정의)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분야의 인터넷 권리침해 신고센터로는 명예훼손 관련 침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 해킹 등의 문제는 정보보호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인터넷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문화부), 방송통신윤리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문화부),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청소년정보감시단,

강력한 행정적 규제장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내용규제의 실패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행정규제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정규제의 한계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대안을 만들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YWCA 청소년 유해환경매체 모니터 등이 있다. 인터넷 콘텐츠 등급제 역시 자율등급표시제의 형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독특한 법률적·제도적 구조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자율규제체제에서는 민간영역이 인터넷상의 분쟁조정이나, 정부와의 핫라인형성, 콘텐츠 등급제 및 필터링, 리터러시 증진 교육 등을 수행한다(황용석·이동훈, 2009).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그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법률에 따라 구성한 민간위원회에 미디어 콘텐츠 심의기능을 두고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권한을 법률로 위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터넷 콘텐츠와 관련하여 민간 영역의 사전적 직접 규제 보다는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관리 감독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의 책무성을 구현하는 체계로서 민간기구의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법률적 직접 규제와 행정적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동규제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율규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강력한 행정적 규제장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내용규제의 실패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행정규제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정규제의 한계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대안을 만들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규제가 가속화되어 왔다. 인터넷에서의 유통된 정치견해의 충돌은 인터넷 자체의 미디어적 영향력으로 인식되었고 여론 형성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관점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타율적 형태의 제도적 규제 논의를 촉발하여 학계/시민사회/업계와의 갈등이 증대되었다. 실제로, 2008년 7월 정부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나, 여당에서 제출된 의원입법안들은 다양한 형태의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2) 개별 기업의 자발적 대책장치의 한계

소수 인터넷기업들의 자발적인 미디어 책무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네트워크의 특성상 개별사원의 대응이 갖는 한계가 나타났다. 현재 주요 인터넷포털사들이 모니터팀과 이용자위원회와 같은 책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의 인터넷기업들도 자율적으로 내부 모니터링, 부분적인 정보게시제한조치 등을 실시하는 중이다. 아울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정책을 수행 중이다.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들은 이용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무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자율적인 규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사별 대응방식이 사회적인 대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업계

공동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또한 인터넷상의 유해 콘텐츠의 경우 특정사에 국한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인터넷콘텐츠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제도적 모호함이 상존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동 대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4. 자율규제기구로서 KISO의 특성

1) 참여 주체의 성격

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한국 인터넷이용자 인구를 대부분 포괄하는 7개 인터넷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출범하였다.

이들 회사들은 흔히 인터넷포털로 불리며 다른 용어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또는 ISP)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또는 OSP)로도 통칭된다. 국내에서는 ISP를 다소 포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웹사이트 호스팅, 검색엔진, 전자게시판 제공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지칭한다.

해외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수행하는 서비스가 갖는 법적 책임의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그 주체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인터넷신문과 같은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 : CP), 국내 포털과 같은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 : ICH), 그리고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로 불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등이 그것이다(황성기, 2007). 그러나 한국에서는 ISP와 OSP(Online Service Provider), 또는 포털 등 여러 가지 용어가 병행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포털은 그 서비스의 복잡성으로 인해 한가지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기능인 검색과 커뮤니티 기능, 그리고 뉴스정보 제공 등을 놓고 볼 때는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 : ICH)에 가깝다. 즉 단순 '정보매개자'의 성격과 콘텐츠 제공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정보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포털의 특성으로 인해 KISO는 단기적으로 포털사업자들이 매개하는 이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한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활동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합의적 자율규제(agreed self-regulation) 구조

KISO는 이사회, 정책위원회,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회원사 소속이 아닌 인터넷 자율규제 전문가 5인과 회원사의 게시물 관리·운영 부서의 책임자급 7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게시물 정책의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처는 신고센터 등 실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와 정책위원회를 지원한다.

정책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전원합의' 구조를 띠

고 있다. 이는 매우 독특한 의사결정방식이다. 출범 초기 KISO의 역할과 정책철학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회원사들 간의 수평적 합의 구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KISO의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보니니치의 구분에 따르면 강제성이 최소화된 합의적 자율규제모델(agreed self-regulation)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의적 자율규제기구인 상호 다른 위치에 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업자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동등하고 대등하게 조정하고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Maxwell, Lyon and Hackett, 2000).

이는 소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결정을 하되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한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토론이라는 숙의적 합의 구조를 통해 해결책을 구체화해 나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KISO는 밝히고 있다(KISO 저널, 2009).

다른 구분으로는 자발적 자율규제모델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의 독립, 의사결정구조에서 정부 등의 적극적 개입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장단점이 있다. 우선,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끈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을 수렴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원사들 의견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요소가 적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 또한 콘텐츠에 의한 피해확산이 빠른 인터넷을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시간을 요구해 피해구제의 실익을 놓칠 우려가 있다. KISO의 정책결정사항이 늘어나고 회원사가 증가할 경우, 의

사결정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3) 행동강령(code of conduct)과 정책결정 (the statement of rules)

자율규제 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개인적 자율규제보다는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그 조직의 권위와 일정한 권한을 바탕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율규제를 의미한다(Black, 1996).

트루델(Trudel)은 “자발적으로 자율적 주체들이 만들어낸 규칙으로서 자율규제”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덧붙여 보니니치는 누가 규칙을 만드는 자율의 주체인가와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규칙의 문제로 양분화해서 설명하고자 했다(Bonnici, 2008).

그런 점에서 표준규칙(standard rules) 및 정책원칙(the principle of policy)은 자율규제기구의 핵심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적 자율규제기구는 “협의를 통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 이를 대표한다. KISO는 출범과 함께 8개의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이 행동강령은 제1조 표현의 자유 옹호, 제2조 이용자 책임제고, 제3조 이용자 보호, 제4조 공익의 수호, 제5조 독립적 운영, 제6조 공정한 운영, 제7조 사회적 책무 기반제공, 제8조 소통과 협력 지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SO의 행동강령의 가장 큰 특징은 ‘표현의 자유’를 제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KISO는 행정규제에 대한적 시각을 강하게 담고 있다. 이는 재정과 운영에서 독립성을 강조하고 근거 있는 정부기관의 요청에만 응한

다는 제5조와 제6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편, KISO는 자율규제기구의 핵심 기능의 하나인 표준규칙의 제정을 정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상정하고 있다. KISO는 이를 ‘정책결정문으로 제3호까지 발표한 바 있다⁴⁾. 프라이스와 베르홀스트(Price and Verhulst, 2000)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율규제기구의 규칙 설정은 1) 정책결정(policy making), 2) 규칙설정(rule creation), 3) 적용과 강제 및 제제(application and enforcement and sanctioning of rules), 그리고 4) 분쟁조정(dispute settlement)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KISO는 초기단계에 필요한 규칙설정을 통한 공통의 기준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케이브와 시몬스(Cave, Simmons, 2008)가 제시한 자율규제기구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인 투명성(transparency), 일관성(consistency)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정책결정문의 공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KISO가 발표한 정책결정문에 대한 분석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자 한다.

4) 정부와의 관계, 독립적이지만 정부규제의 기본 틀에서 작동

자율규제기구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정부 또는 행정규제와의 관계이다. KISO는 7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KISO의 정관에 따르면, 탈퇴가 자유롭다(정관 제8조 제2항). 정관상에 KISO는 순수한 민간 참여기구로서 ‘스스

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규제를 받고자 하는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집단 즉, 무리(Moore)가 이야기하는 말하는 ‘반 자치화된 사회영역(SASF: semi-autonomous social field)’의 성격을 띤다(Bonnici, 2008).

이 집단은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동하며 집단의 규칙을 수용한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기구가 이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협력적 관계는 가능하며 정부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인터넷주소정책을 협의하는 ICANN(Internet Cooperat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는 종종 진정한 자율규제기구인가에 대해 논쟁이 일곤 하는데, 그 이유는 개별 국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반 자치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KISO 역시 회원 구조를 보면, 순수한 민간집단이지만, 행정규제의 틀 내에서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표방하고 있다.

KISO는 국가법의 기본 틀에서 자율규제활동을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포털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지는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체로 현 상황에서는 감시의무와 중단의무 두 형태로 정리되고 있다(정완, 2003). 감시의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전자 게시판, 블로그 등의 표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적 위반행위, 예를 들면, 음란물 등의 불법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저작권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

4) KISO 정책결정문 1,2호에 대한 평석으로 『KISO 저널』통권 1호에 게재된 김기중(2009)과 박준석(2009)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KISO는 제한된 회원사들의 협의적 자율규제기구로서 성격을 갖기에 인터넷정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같이 행정규제 장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민간자율규제기구의 성공은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변화 없이는 한계가 있다.

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감시의무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 웹미디어 발행자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작위의무는 임시조치 형태의 중단의무에서도 드러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 등의 침해행위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게시물에 해당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이용자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

또한 “Notic and Take Down” 형태의 중단조치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조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법률적 조항들이 자율규제기구와 정부기관과의 공조체제라기 보다는 개별 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의무부과로 해석된다. 공동규제(co-regulation)의 중요한 요소인 제도적 협의나 규제권 한이나 규제행위에 대한 면책요소는 없다. 실제로 임시조치의 경우 그 법안의 모호함으로 인해 개별 인터넷 사업자들이 많은 혼동을 겪게 됨에 따라 KISO는 정책결정을 통해 임시조치요청의 요건에 대한 사안과 공인의 임시조치 요청에 대해 자체 정책기준을 만들어 발표하였다.⁶⁾

5. 자율규제기구로서 KISO의 향후 과제

1) 제도적 측면 : 인터넷규제, 공동규제로 균형 있게 이양해야

KISO의 출범은 한국 인터넷규제의 한 전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KISO는 제한된 회원사들의 협의적 자율규제기구로서 성격을 갖기에 인터넷정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같이 행정규제 장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KISO와 같은 민간자율규제기구의 성공은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변화 없이는 한계가 있다.

5) 정보통신망법 제44조2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6) 임시조치의 문제제점에 관한 글은 황성기(2009),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KISO저널, 통권 1호, pp.40-55,를 참조하기 바란다.

현행의 정부규제 가운데 불필요한 법규는 과감하게 탈규제하고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인터넷 규제체도가 대부분 민간영역의 사업자가 주도하는 자율규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터넷 공간이 전통 언론에 대한 제도적 접근으로는 규제 실익이 낮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불법성 내용물에는 민관 두 영역 간의 핫라인을 포함한 협력규제방식을 취함으로써 자율규제가 규범적 이상성에 치우쳐 현실적 실익이 낮을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 간 분쟁은 법률적 개입을 최소화 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정부 또는 행정기구가 직접 내용을 통제하지 않고, 일반적 규제 기준을 제시하면, 개인과 사업자가 상호 동의하에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일반적인 특성으로 한다.

자율규제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규제 대상의 모호성과 가변성으로 인해서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그 실천이 가능해짐으로써 정부의 직접규제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이혜수 외, 2008: 3). 자율규제는 제대로 운영된다면 인터넷상의 상호소통 및 지식활동을 원활히 하고 업계의 규제 준수비용을 낮추면서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가변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그 구조 자체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와 같은 일종의 위계적 관계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공동규제의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다.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는 토의와 합의를 통한

규칙의 제정에 있는 만큼,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한 국가 정책에 민간규제기구가 어떻게 참여하는가도 중요한 요소이다. 행정편의적 규제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상 자율규제기구의 외연확대는 어렵다(황성기, 20009).

규제모델의 이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율규제체계의 확산방향은 인터넷산업, 이용자, 규제당국 등의 관련 주체들 간의 기능, 권한을 점진적으로 조율해 나가며 위임형 공동규제방식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형적으로는 민간기구나 행정기능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율기구는 민간영역과 정부영역 사이의 정책 협상 및 조율을 위한 연결역할(liaison organization)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규제기구의 기능 및 역할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정부기구와 권한 및 기능을 조율하여 공동규제방식의 법률 부분위임형의 자율규제기구를 도입하는 단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KISO와 같은 협의적·자발적 자율규제기구는 과도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현행 규제기구와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자율규제체계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의 상호협력 관계에 기반해야 하며, 둘째, 모든 정책의 지향점은 이용자 중심의 사회, 문화, 정치, 교육, 경제 등의 가치 증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거버넌스시스템의 점검 및 조율과정을 제도화하는 방안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KISO 내부적 측면 : 정당성의 확보

KISO는 제한된 7개 인터넷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그 정책원칙에 대한 사회적 피드백이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자율규제기구에서 ‘자율’의 효과적인 작동에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요건, 즉 규칙 제정자로서의 집단의 정당성(legitimacy)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중요하다. 행정규제의 정당성은 법률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자율규제기구에서의 정당성은 크게 4가지 측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Bonnici, 2008). 첫째는 정부와는 다르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shared interest)의 문제로서 이는 규칙제정이나 규칙의 실행의 타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ISO는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그에 따른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가치의 근간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표현의 자유에 근간해 있음을 알 수 있다(KISO 저널, 2009).

그러나 KISO의 이러한 행동강령과 일반원칙이 갖

는 추상성을 넘어서서 실제 내용규제와 관련한 실행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지켜지고 그 효과를 가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KSIO가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인터넷자율규제기구를 자리매김하는 가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KISO 회원사들 간의 공유된 가치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소통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당성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전문성(expertise)과 적절한 인터넷활동에 대한 기술적 접근성(technical access)이다. 자율규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실행적인 능력과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네 번째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로부터의 인정 또는 공인(acknowledgement/approval of state of public authority)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KISO가 한국 인터넷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 외연을 확대해야함을 의미한다. 영향력 있는 소수 업체들의 방어적 정책기구로 인식되지 않도록 중소인터넷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 Berners-Lee, T and Fischetti, M.(1999). Weaving the Web: The Original Design and Ultimate Destiny of the World Wide Web by Its Inventors, HarperCollins, at: www.harpercollins.com/catalog/redir.aspl?0062515861.
- Black, Julia(1996).Constitutionalizing Self-Regulation, 59 Modern Law Rev. 24, 26.
- Blumenthal,M. S. and D. D. Clark(2001). Rethinking the design of the Internet: The end to end arguments vs. the brave new world. To appear in ACM Transactions on Internet Technology, <http://ana.lcs.mit.edu/anaweb/papers.html>.
- Bonici, Jeannne Pia Mifsud(2008). Self-Regulation in Cyberspace. Leiden: T.M.C.Asser Press.
- Cave, J., Marsden, C., & S. Simmons (2008), Options for and Effectiveness of Internet Self- and Co-regulation, RAND.
- Froomkin, A. Michael(1997). The Internet as a Source of Regulatory Arbitrage, in: Brian Kahin & Charles Nesson (ed.), Borders in Cyberspace: Information Policy and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1997, pp.129 ~163.
- John Perry Barlow and Electronic Freedom Foundation (1996).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www.eef.org/~barlow/Declaration-Final.html.
- Lessig, L (14 November 1999). 'Architecting Innocation', at: www.thestandard.com/article/display/0,1151,7430,00.html.
- Maxwell, John W., Tomas P. Lyon and Steven C. Hackett(2000). Self-regulation and social welfare: the political economy of corporate environmentalism.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43(2). pp. 583~618.
- McQuail, D. (2003). Media accountability and freedom of publica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Plaisance, P. L. (2000). The concept of media accountability reconsidered.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5(4), pp. 257~268.
- Price, Monroe E. & Steffan G. Verhulst(2000).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Content,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 (eds.),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Gütersloh: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 Saltzer, J.H. , D. P. Reed and D. D. Clark(1984). End-To-End Arguments in System Design. ACM Transactions on Computer Systems, vol 2(4) pp. 277~288. <http://www.reed.com/Papers/endtoend.html>.
- Schulz, Wolfgang Schulz & Thorsten Held(2004). Regulated Self-Regulation as a Form of Modern Government: A Comparative Analysis with Case Studies from Media and Telecommunication Law, London: The University Of Luton Press.
- Tambini, Damian, Danilo Leonardi, and Chris Marsden(2008). Codifying Cyberspace: Communication self-regulation in the age of internet convergence. New York: Routledge
- 박홍원 (2004).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 개념을 통한 사회책임이론의 재조명. 《언론과사회》 제12권 3호, pp. 8~54.
- 정 완(2003). 위험정보의 유통과 ISP에 대한 형법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11/12.
- 황성기(2007).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가)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호, pp. 149 ~190.
- 황성기(2009). 한국에서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KISO 저널』, 통권1호, pp. 40~55.
- 황용석 · 이동훈(2009).국내 인터넷 개인미디어 관련 규제 법률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학보』,
- 황용석 · 이동훈 · 김준교(2009). 미디어 책무성 관점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제도 비교연구. 『언론과 사회』. 제17-1호. pp. 62~93.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

김 상 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국내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장수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함윤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민영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주요 ADR 15개 기관과 조정학회, 로스쿨, 각종 분쟁해결연구센터 등 ADR관련 학계, 법조계 등에서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문과 패널토론, 종합토론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I. 서

서구 선진국에 비해 근대화의 시작이 늦어진 우리의 현실상, 서구의 새로운 제도나 그 밖의 인기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그때그때 소개되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과 관련된 많은 제도도 여기에 해당하고,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ADR뿐만 아니라 IMF사태 이후의 각종 입법논쟁이나 최근의 로스쿨도입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과연 서구의 ADR제도를 우리가 많이 수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또한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형시켜 가는 것이 좋고, 그를 위해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가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함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현재의 각종 ADR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 등 행정형 ADR기관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에 관하여 언급하려는 것이다.

II. ADR의 의의 및 특징

ADR이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대체적



권 성 위원장이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판외)분쟁처리를 가리키고, 이것은 재판을 대신하는 분쟁(민사분쟁)처리제도의 총체를 말한다. ADR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나누어 화해, 조정 그리고 중재라는 3가지 제도가 기본적인 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보면 제각기 재판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발달해 오다가, 근래에 이르러 ADR이라는 통합적인 명칭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연구되기에 이르렀다. 대체적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판에 대체하거나 보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소송대국인 미국에서 ADR이 실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발달해 온 것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²⁾

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먼저 재판(소송)이 있다.

재판은 법관이 법에 의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일도양단하여 승패를 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국민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되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로 된 자는 우리의 재판권이 미치는 한 원고의 제소에 응할 의무가 부여된다(만일 피고가 응소를 거부한다면 패소를 하게 된다). 다른 한편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재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만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재판에 갈음하는 분쟁처리로서 ADR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되는 3가지 분쟁처리형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구상, 법원부속의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한 국민불만의 해소방안, 법학논문집(중앙대)23집2호(1999)131면에서는, 미국에서 ADR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 "서로 다른 생활규범을 가진 이민족이 미국에는 다수 존재하므로 동일민족 내의 분쟁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은 당해 민족 내의 규범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 인구에 비해 법률가의 비율이 높은 만큼 소송사건수가 많아 법원부담의 경감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미국에는 배심재판과 같이 재판에 국민이 참가하는 사상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시민 간에 자주적인 민사분쟁 해결이 그만큼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보통법체계에 대한 형평법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2) 따라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ADR에 관한 많은 연구물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물이 많이 나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종 ADR기관의 도입에 따라 연구도양이 형성되었고 앞으로 로스쿨에서 ADR을 강의하게 된다면 수준 높은 연구물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ADR도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I. ADR의 현황

1. 현황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으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분쟁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분쟁 당사자는 먼저 상호간의 접촉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무엇인가 제도적인 힘을 빌려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당사자 간의 접촉단계를 보통 교섭(negotiation)³⁾이라 말할 수 있는데, 교섭은 모든 분쟁해결의 제1단계에 해당하고, 교섭을 통해서 바로 화해에 이를 수도 있다. 교섭의 결렬에 의해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국가권력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재판이 있기 이전에 조정이나 중재제도가 존재하였다. 특히 조정은 동양에서, 중재는 서양에서 재판제도의 등장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ADR은 재판과 동시진행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이외에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 행정부처가 조정기관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즉 거의 모든 행정부처는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근거법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두어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조정을 하고 있다.⁴⁾ 그러나 행정형 조정건수는 몇몇 기관을 제외하면 법원에 의한 조정건수와 비교하

여 볼 때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수치이다.

중재제도에 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심이 되어 상당한 사건을 중재로 해결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이외에 행정형 조정기관에서도 중재로 분쟁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관에서 중재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행정형 ADR기관

한편 우리나라에서 ADR의 운영기관이라고 하면 전술하였듯이 각종 행정부서의 조정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기본적으로 행정형 ADR기관에 해당한다고 풀이된다. 행정형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기관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행정형 ADR이 많은 점은 일본 ADR의 특징이기도 하다.

행정형 ADR은 일반적으로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수수료에 의하므로 당사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되고 구제에 대한 액세스 확대에 기여한다.⁵⁾ 그 밖에 행정적 규제를 배경으로 하며 후견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당사자 간 격차의 축소, 전문적 조사에 의한 사실의 명확화 등의 대책에 의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도 말해진다.⁶⁾

이러한 행정형 ADR기관으로서의 특징에 관하여는, 예를 들어 환경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를 비교하여 생각하여 보도록 하겠다. 먼저 행정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생각할 수 있다.⁷⁾ 즉 환경분

3) 보통 협상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상거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섭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로 법제처의 법령검색에서 조정위원회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법령을 찾아보면 그 숫자가 대단히 많다.

5) 山本和彦=山田文, ADR仲裁法(2008, 日本評論社)119면.

6) 加藤新太郎, ADRとその普及の條件 - 訴訟上の和解との比較において -, 小島武司編・ADRの實際と理論II(2005, 中央大學出版部)13면.

7) 이에 관하여는 김상수,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과 ADR의 역할분담, 환경법연구제28권1호(2006)123면 이하 참조.

쟁조정위원회의 경우 타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예로 든다면, 건설교통부가 2004년 4월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은 58데시벨 이하로, 중량은 2005년 7월 1일부터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법 제18조에 의하면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것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점 등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해진다.⁸⁾ 그러나 이 점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비하여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기구의 성격상 행정기관과의 관계는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당해 ADR기관의 성격에 따라서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부연하고 싶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정형 ADR의 장점은 그 표리의 관계로서 당해 기관이 중립 공평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⁹⁾ 즉 행정형 ADR에서의 행정에 의한 후견적 관여에는 한계가 있고 재판에 대한 예측을 넘어 재판에 선행하는 해결을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행정의 후견성에 과도하게 의지하려고 한다면 당해 기관의 중립공평성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

다.¹⁰⁾ 달리 말하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분쟁조정신청을 일종의 피해구제신청으로 의식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하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¹¹⁾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기구의 규모나 설립 근거법규를 본다면 다른 행정형 ADR기관과는 달리 보다 독립적인 기관이라고도 생각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¹²⁾ 당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독립적인 지위를 한층 확고하게 할 것이다. 공공기관 지정배제는 그 밖의 행정형 ADR기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IV. ADR의 발전방향 1

- 재판과 ADR의 연계

1. 재판의 역할

위에서는 주로 ADR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ADR의 개선방안이다. 이에 관하여는 먼저 ADR과 재판 간의 역할의 차이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재판이 당사자의 각종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줄 수 있다면 ADR을 논의할 필요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재판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불량품에 해당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재

8) 그 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하여도 유사한 점이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는 金祥洙, 集團調停による 消費者紛争の解決—韓國における實情について, 民事研修619號(2008)2면 이하 참조.

9) 우동기=장영두,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협상연구5권2호(1999) 43면에서 위원들의 구성이 중립적이지 아니하여 관주도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10) 加藤新太郎, 전제(주)13면.

11) 유병현,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安岩法學22호(2006)298면 이하. 이 문헌에서는 '법원에 가면 절차도 복잡하고 소송준비도 힘이 드는데 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2) 언론중재위원회, 2008 연간보고서17면.

판 자체의 특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 자체에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ADR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ADR은 재판과는 동일한 분쟁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판과 상이한 점을 갖고 있다. 전자는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공통점을, 후자는 절차의 내용과 운영주체에서의 차이점을 각각 가리킨다. 재판은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이 운영한다. ADR은 반드시 공적 기관이 운영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의 운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도운영의 공정성은 ADR에서의 필수조건에 해당되고, 재판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에 관한 주도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ADR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판보다 유리하다는 장점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 갈음한다는 분쟁처리수단이 오히려 재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재판은 ADR에 갈음하는 분쟁처리수단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ADR이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단순히 간이·신속한 처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재판의 약점은 3심제를 통해야 한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ADR에 의한 해결이라고 해서 단순히 간이·신속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분쟁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확실성 내지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¹³⁾

2. 법원부속 ADR

그런데 재판과 ADR이 현재와 같이 거의 독자적이고 상호 무관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으로는 착실하고 적합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해결방법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우선 재판과 ADR의 연계를 통한 처리방법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즉 재판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은 재판으로 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법원이 ADR로 사건의 처리를 회부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법원은 관할의 독점욕(jurisdictional jealousy)을 갖지만, 과감히 계속분쟁을 ADR로 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에서 ADR로 사건을 회부한다고 하면 민사조정과 가사조정 등 판사가 관여하는 일종의 법원부속 조정만이 인정되고 있다.¹⁴⁾ 여기서 더 나아가 법원은 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ADR기관으로 언론분쟁사건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이 자신에게 부속된 분쟁을 ADR로 회부하는 제도를 말하고, ADR 선진국인 미국에서 각광을 받는 제도이다(보통 법원부속중재(Court-Annexed Arbitration)로 불린다). 법원부속ADR은 조정전치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소송절차 진행 이전에

13)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磯部力, 公害環境紛争と行政委員會 - 公害等調整委員會の課題と可能性,ジュリスト1233호(2002) 59면 이하(이하에서 다루는 일본의 공해등분쟁조정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공해환경분쟁에 관한 풀패키지 해결, 즉 광의의 공해환경분쟁을 폭넓게 받아 들여 해결의 테이블에 올리고, 전문적 조사에 바탕된 설득력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개별안전의 일회적 해결만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이용질서의 물까지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14) 정규상, 전주(1)141면에서는, 법원부속ADR 운영에 관한 지적으로서 “구체적인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제도당시에 쟁점이나 증거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건수가 많게 되면(현재는 법원부속의 ADR제도로써 소송상화해와 조정이 인정됨) 법원이 사건에 대한 조정적합성의 실험적 분석 없이 가능한 한 많은 사건을 조정에 끌어들여 실적위주의 운영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법원에 의해 중재절차로의 회부)을 말한다.¹⁵⁾ 여기서 말하는 중재는 통상의 중재와는 달리 중재에 대한 참가가 강제적인 점, 중재판정에 대한 구속력 측면에 있어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 때 법원에 대한 상소에서 당해 중재절차보다 일정 비율(10%~20%)의 유리한 금액의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면 제재가 부과된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중재의 결과보다 더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면 그대로 중재판정을 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부속ADR은 1952년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현재 각 주에서 이용되고 있다.

V. ADR의 발전방향 2 - 편면적 중재제도의 도입

1. 편면적 중재의 의의

ADR의 발전방향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는 편면적 중재이다. 편면적 중재란 기본적으로 중재인(또는 조정인)이 중재(또는 조정)를 하고 그것이 화해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조정인이 분쟁해결을 위한 판단을 제시하게 된다. 이 판단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청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양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판단에 구속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가리킨다.¹⁶⁾

이러한 편면적 중재는 분쟁당사자 간에 정보나 교섭

력에 차이가 있는 사안에서 피해자 측 등이 ADR을 신청하는 경우에 절차의 장기화를 피하고 교섭력에 만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실되므로 그러한 불이익을 능가할 정당성이 필요하게 된다.¹⁷⁾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본 법원부속중재제도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업계단체의 ADR기관으로서의 자주적 분쟁처리기관(Self Regulatory Organization)에서는 보다 완화된 형태로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증권분쟁의 중재를 처리하는 NYSE(New York Stock Exchange)나 NASD(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딜러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협회에서 제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을 얻어도 겪을 수 있는 집행의 곤란이나 집행비용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다.¹⁸⁾ 그 밖에 NFA(National Futures Association)에서는,¹⁹⁾ 상품선물거래분쟁에 관하여, 투자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적 중재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투자가가 요구하면 선물협회 멤버는 강제적으로 중재에 응하여야 한다. 이 점은 아래에서 보는 일본에서의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에서의 제정과 차이가 있다. 미국의 선물거래분쟁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투자가는 이에 구속되지만, 일본의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의 제정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는 구속되지만 청구자인 피해자는 구속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편면중재와 유사한 분쟁처리를 하는

15) 약간 오래 되었지만 미국의 위와 같은 법원부속ADR을 소개하는 글로서, 金祥洙, 紹介: John P. McIver et al., Special Issue; Court-Annexed Arbitration, 14 Justice System Journal 123-250(1991), 名大法政論集152호(1994)543면 이하 참조. 또한 앞의 주(1)의 문헌도 있다.

16) 山本和彦=山田文, 전주(8)369면.

17) 山本和彦=山田文, 전주(8)369면.

18) 金祥洙, 證券仲裁(1997, 信山社)17면 참조.

19) 金祥洙, 商品先物取引と仲裁, 先物取引研究第4巻第2號(2000)6면 이하.

ADR기관으로서 1973년에 설립된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²⁰⁾가 있다.²¹⁾ 여기서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 화해의 알선 및 심사를 한다.²²⁾ 위 센터에서는 주로 화해로 분쟁처리를 유도하는데, 화해를 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알선절차 등이 개시된 후에 다음의 사정이 판명되면 알선절차 등을 정지한다. 즉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치료중인 경우, (2) 치료는 종료되었지만 후유장애등급 인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후유장애등급 인정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후유장애등급인정절차에 관하여 분쟁처리기구에 신청 중인 경우이다.

2. 편면적 중재 도입의 전제조건

편면적 중재는 위의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피청구인 측의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그 정당성은 피청구인 측의 양해(중재나 조정의 결과를 따르겠다는)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만일 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편면적 중재를 도입한다면, 그 가장 용이한 방법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언론매체 간의 협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해결안에 따르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곤란하다면, 언론중재법 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더욱더 공정 타

당한 ADR기관으로서의 전제조건이 필요하고, 그것이 언론매체 등 피청구인 측의 제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조건 중의 중요한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ADR기관에서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절차주재자²³⁾의 구성과 자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대개 당해 위원회가 조정기관임과 동시에 위원회는 소수의 위원이 개별 사건의 조정위원도 겸하고 있고, 이는 법원이 운영하는 민사조정 또는 가사조정에서 법관이 조정위원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단, 법원의 조정의 경우에는 법관만이 조정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민간인도 조정위원으로 참가한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은 소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와 같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각 사건의 조정위원이 되고 나아가 위원장이 선정한 비상임조정위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규모에 맞추어 조정위원 후보자로부터 적당한 수의 조정위원을 당사자가 선정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분쟁처리위원회는 관련 분쟁의 처리에 적합한 조정위원후보자의 풀을 각 지역마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주재자의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ADR기관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절실한 문제는 ADR의 절차주재자의 자질 내지 스킬을 어떻게 확보

20) 財團法人 交通事故紛爭處理センター. www.jcstad.or.jp.

21) 이에 관하여는 小島武司=伊藤眞, 裁判外紛爭處理法(1998, 有斐閣)123면 이하; 山本和彦=山田文, 전주(8) 222면 이하.

22) 단, (1) 자전거의 대보험자, 대자전거의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2) 담승자상해보험이나 인신상해보상보험 등 자신이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과의 보험금,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배상책임보험 후 후유장애의 등급인정에 관한 분쟁은 다루지 않는다. 또한 (1) 상대방이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이 계약하고 있는 자동차보험(공제)에 시담대행서비스가 없는 경우, (3) 상대방이 계약하고 있는 공제가 JA공제연합 또는 전로제(全勞濟) 이외인 경우에는 분쟁의 상대방이 센터에서 해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알선절차 등이 불가능하다.

23) '절차주재자'란 생소한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재판절차의 경우 법관을, ADR절차의 경우 직접 중재나 조정 등을 하는 중재인 또는 조정인은 물론 그 후보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법관과의 차이점은 당사자는 법관을 선택할 수 없지만, ADR에서는 절차주재자를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인지에 관한 점이다.²⁴⁾ ADR절차의 주재자는 새로운 전문직의 일종이고, ADR기관이 중심이 되어 그 내실을 형성하고 교육이나 훈련의 프로그램을 책정하며 윤리규범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기반정비가 필요하다.²⁵⁾ 재판에서 법관의 자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ADR에서도 절차주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그만큼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VI. ADR의 발전방향 3

- ADR기관 간의 상호연계

위에서 본 절차주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ADR기관 간의 상호연계이다. 또한 법원을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ADR은 각각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의의 집합이므로 상호 연계하지 않으면 다면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²⁶⁾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상호연계를 책임질 대표기관이 필요하다.²⁷⁾

연계담당기관에서는 절차주재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사례를 이용한 연구와 의견교환, 새로운 ADR절차의 개발, 외부에 대한 ADR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²⁸⁾ 연계기관이 기능하게 된다면 각 ADR기관의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갖는 ADR기관에 의한 복안적(複眼的)인 논의가 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ADR실무의 질적 양적 향상이, 장기적으로는 ADR업계 전체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DR기관 간의 구체적인 연계로서 각 ADR기관의 전문성을 횡단적으로 상호 연계시키는 방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DR은 분쟁의 성격이나 절차가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분쟁의 해결은 복수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러한 전문성이 다른 ADR기관과의 사이에서 상호의 원조, 절차주재자인 panel의 공유나 분쟁의 이행 등의 협력태세의 구축에 이바지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VII. 결 어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행정형 ADR기관으로서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ADR기관 사이에 차이가 없지 않지만, ADR을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에서의 당사자의 자주성 결여라는 현상이나 ADR기관 간의 연계수단의 부재라는 현상에서 본다면, 앞으로 ADR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법원과 ADR의 연계로서, 법원이 담당하는 많은 사건 중의 일부를 ADR기관에 회부하는 법원부속ADR제

24) 加藤新太郎, 전계(주9)19면 이하.

25) 山本和彦=山田文, 전계서(주8)393면.

26) 山本和彦=山田文, 전계서(주8)394면.

27) 일본의 경우 ADR의 포털 사이트로서 ADR Japan(www.adr.gr.jp)이 있고, 여기서는 연계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비자상담에서 중재기관까지 여러 분야의 분쟁처리기관의 종합창구역활을 하고 있다.

28) 이러한 기관의 설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山本和彦=山田文, 전계서(주8)394면.

도의 도입이다. 법원은 이미 소송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고 있으므로 ADR기관으로 회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ADR을 이용하기 쉽게 하는 제도로서 편면적 중재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편면적 중재는 실질적으로 조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게 되고 결국 ADR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분쟁처리위원회라는 명칭에도 걸맞고 조정이나 중재의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편면적 중재제도 등을 포함하는 ADR에서의 분쟁해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절차주재자의 중립성 확보와 자질향상이 중요하다. 자질향상과 관련하여서는 각 ADR기관 간의 상호연계가 필요불가결하고 이것이 세 번째 방안에 해당된다. 절차주재자의 확보와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이 원하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이끌 수 있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ADR간 상호연계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패널 토론

▷ 김 정 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중재위원뿐만 아니라 조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이 최근 들어 매우 고무적이다.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사건도 크게 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각 중재부에서 다루는 사건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재율도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언론중재위가 언론보도에 의한 분쟁조정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런 언론중재위원회의 바람직한 활동은 가장 모범적인 ADR 제도의 사례라고도 보여진다.

언론중재위원회가 ADR 조직으로서 운영적 측면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압축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중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보편성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관

들의 직무와 관련한 능력의 우수성이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심의는 법률적 차원보다는 상식적 차원에서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ADR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미니법정이 아니라 잘못된 언론보도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청원을 듣고 나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찾는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재위원은 옳고 그름의 진위를 구분하는 능력보다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보아진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중재위원 위촉 및 구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언론조정·중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조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중재위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면 조사관들은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런 자료 준비가 최종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조사관들의 사전 조사가 불충실하면 중재위원들에게서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중재위원과 조사관들은 ADR 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끌고 가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양대 축은 매우 이상적으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서 정 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분쟁종합지원센터장)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 분쟁의 해결, 간이·신속성·경제성의 충족이라는 측면을 고려, 탄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분야별 통합적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는, ADR기관 간의 연계수단의 부재라는 현상에서 본다면, 앞으로 ADR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법원과 ADR의 연계로서, 법원이 담당하는 많은 사건 중의 일부를 ADR기관에 회부하는 법원부속 ADR제도의 도입, 두 번째 방안은 ADR을 이용하기 쉽게 하는 제도로서 편면적 중재제도의 도입 고려, 세 번째로는 편면적 중재제도 등을 포함하는 ADR에서의 분쟁해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주제자의 중립성 확보와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ADR에 관하여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제발표자의 견해와는 다소 견해차가 있다고 본다.

첫째, ADR제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ADR이 실패할 경우 절차가 이중적으로 되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증가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행정형 조정 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차칫 강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는 없는 것인가? 법과 원칙을 경시한 2급 정의(second-class justice)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둘째, ADR을 이용하기 쉽게 하는 제도로 편면적

중재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편면적 중재는 보편성있는 제도라기보다는 소비자분쟁해결(Consumer Arbitration)에 흔히 이용되는 것으로, 기업체는 중재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무조건 그 결과에 승복하여야 하나 소비자는 중재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도입하는 방안은 제한적인 분야에 적합한 중재운용인 바, ADR의 일반적인 발전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셋째, 글로벌체제에 부합한 조정, 중재의 측면을 고려한 통합적 ADR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ADR법 제정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의 분야별 통합 방안 -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 분쟁의 해결, 간이·신속성, 경제성의 충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분쟁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인터넷진흥원 소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확충하여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상사분쟁과 관련한 분쟁조정은 무역분쟁 및 국내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소비자과 관련한 분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등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결합적 조정중재의 도입 방안 -

선행적 요건으로 ADR의 풍부한 경험과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분쟁해결기관에 의한 제도운영이 필수적이기에 중재법상 지정된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결합적 제도운용이 효율적이다.

▷ 양 재 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변호사)

“ADR이 재판을 보완하는 절차로 태동하였지만, 경제적이고 쉽고 유연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의미를 살려가야 한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가 우리나라 ADR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인데 저는 ADR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ADR은 경제적이고(economic), 쉽고(easy), 유연한(flexible) 절차이다.

경제적이라는 뜻은 단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절차에 들이는 돈, 시간, 노력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ADR은 쉬운 분쟁해결의 수단이다. ADR과 항상 대비되는 법원의 재판절차라는 것이 돈 많이 들고, 오래 걸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매우 어렵고, 게다가 법원은 소극적이고 불친절한 심판자인 측면이 있다.

셋째로, ADR은 유연한 절차이다. 이 점은 쉽다는 측면과도 일맥상통한다. 조금 전에 김정탁 위원께서도 언급하신 사건인데 최근 저희 위원회에서 일명 ‘미수다’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오늘 오전에도 해당 사건의 심리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사건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면 해당 보도에서 피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가 열리기도 전에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원회 조정에서는 엄격하게 요건을 따지기보다는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ADR의 이러한 성과를 고려할 때 이제는 그 명칭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보완하는 절차로서 ADR이 태동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언제까지 ADR을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재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라고만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법원 소송의 아류, 2인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ADR 고유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만한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생

각해봤는데 예를 들면, EDR(easy dispute resolution, economic dispute resolution), PDR(peaceful dispute resolution)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들께서 이미 지적해주셨지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ADR은 법원의 소송사건에 비해서 양적으로 턱 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인식이 분쟁해결수단이라고 하면 법원의 ‘소송’을 떠올릴 것인데 홍보를 통해서 ADR의 장점을 적극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음으로,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연합체 구성에 관해서는 먼저, 각 위원회나 조정기관 사이에 연합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각 기관이 모여서 뭘 할 것인지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연합체 구성의 목적으로서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ADR 절차법을 만드는 것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신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제안 사항 중에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을 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현행법하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현행법하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또, 편면적 중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직권조정 결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 장 수 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행정형 ADR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개선책 등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만들거나, ADR지원센터 및 ADR포털 사이트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ADR기관 상호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의 ADR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재판과 ADR의 연계에 대하여 -

법원부속형 ADR의 하나로 법원부속중재(Court Annexed Arbitration)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ADR제도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사자는 본래 재판에 의한 해결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는데,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민사조정법 또는 언론중재법 등 관련 개별 법률 개정 시 위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편면적 중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

편면적 중재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ADR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언론매체 간의 협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해결안에 따르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발제자께서 제안해 주신 ADR 절차주재자의 구성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절차주재자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요건, 관리, 정기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구성된 조정위원 후보자 풀을 구성하여 당사자가 적정 수의 조정위원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은 ADR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다른 ADR기관에서도 기관 특성에 맞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DR기관 간의 상호 연계에 대하여 -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ADR기관 간의 상호 연계는 현실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ADR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연계를 담당할 대표기관(또는 연계담당기관)을 설치하여,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ADR 실무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고, ADR기관 전체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ADR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ADR기관 상호 연계방안 마련 -

행정형 ADR 기관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 교환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행정조정기관협의회’를 만들거나, ADR 조직을 통괄하는 기능을 하는 종합적 ADR 지원센터를 마련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

ADR 상호 연계를 위해서는 행정형 ADR기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ADR 포털 사이트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일본의 ADR-Japan 참조).

행정형 ADR 통합 법률 제정 추진 -

사실조사권 및 자료요청권 인정, 조정 절차, 효력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법률 마련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민사조정법, 중재법 외에 조정에 관한 일반법 내지는 대체적 분쟁처리법(또는 모델법안)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수인 관련 집단 분쟁해결제도 도입 -

동일한 원인에 의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당사자가 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 ADR기관에서도 동일한 원인에 의한 사건 처리를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사건 처리의 지연과 비효율성이 발생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ADR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수인 관련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함 윤 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판사)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원 외부의 ADR 기관으로 사건을 회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ADR확대의 필요성 -

ADR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재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정식 소송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의 이상적 구현을 위해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실제진실 발견을 위한 1:1 대립구조가 감정대립을 유발하고 다자간 이해관계 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점, 고정적·비탄력적 법률에 의한 일도양단의 결론이어서 변동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결국 정식 소송은 분쟁해결의 이상적인 형태를 구현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고, 그것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하여는 그에 걸맞은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ADR이 활용되어야 할 다른 요인들이 있다. 최근 법원 전체에 부과되는 업무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양적으로는 소송사건 접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소송사건의 국제화·전문화·다양화·대규모화로 업무의 강도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 결과, 신속·원만한 처리가 요청되는 사건도 처리가 지연되는 한편, 고난이도 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환경을 상실하여 가고 있다. 결국 모든 분쟁이 정식소송으로 집중되는 것은 한정된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ADR의 발전방향 -

앞으로 우리나라의 ADR이 가야할 방향은, “법원

과 따로, 그러나 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조정 그 자체는 법관의 업무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 법관이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조정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추상같은 논리를 앞세워 판결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측면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의 판결대체적 효과(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비추어, 법원과의 연계 없이 ADR의 실효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요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론은, 결국 법원에 의하여 사건이 관리되고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는 법원부속형·법원연계형 ADR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이 올해 4월에 서울과 부산에 새로이 설치한 “조정센터”는 앞으로 ADR의 발전방향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ADR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판부가 소송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 기실 지난 2008년에는 전국 민사재판부에 의하여 처리된 실질사건 중 40%에 육박하는 사건이 조정·화해에 의하여 처리되었고, 그 대부분은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화해였다. 앞으로는 법원내부 조정이 아니라 외부 ADR기관의 절차에 회부하고 그 기간 동안 소송절차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 경우 우선은 현행법률 내에서도 외부 ADR기관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정절차로 유도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법원 심리와 조정기관 사건과 약 중복으로 생기는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당사자의 절차선택권 없는 일방적 회부결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제약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한다면, 법원의 적극적인 조정회부보다 더 좋은 방향은, 결국 국민들이 먼저 소장이 아니라 조

정신청서로 제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 -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ADR의 미래를 상징하는 조정센터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설치의 조직법적 근거와 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조정이 되려면 조정센터가 법원 내부가 아니라 주민조정센터로 독립·확산될 필요가 있고, 법률복지의 확대 측면에서 법률구조공단 및 나홀로소송 지원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며, 행정형 ADR기관과의 연계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과다하게 많은 행정형 ADR기관의 정리와 자원집중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다.

▷ 홍 승 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변호사)

“ADR이 더욱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해 ADR의 모델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통일적인 규율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발제자의 의견 중 ADR 기관의 상호연계는 중요한 지적이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ADR의 주요 기관이라고 보이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ADR의 효능과 업무를

연계하고 또한 사안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함께 홍보하는 것이 ADR의 활성화에 지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편면적 중재 주장은 다소 생경해 보인다. 오히려 언론중재법 제22조가 규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의 취지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조정이 당사자 간의 임의적 분쟁해결 방식인 만큼 조정성립률에 집착하는 것은 ADR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ADR 제도는 당사자에게 절차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그 비용을 국가 예산 등의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ADR 기관에서 사안에 따라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직권조정(혹은 강제조정) 결정을 하되, 일정 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조정 성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만일 이의를 하는 경우 언론중재법의 예에 따라 제소를 의제할지, 아니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할지 여부는 다시 논의할 문제이다. 사안에 따라 일정한 ‘이의 기간’ 동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감성적으로 조정을 거부하였던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정의 성립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는 ADR 기관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제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ADR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ADR의 모델법을 만들고 그 모델법에 따라 통일적인 규율을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종합토론

▷ 김상수 (발제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로서 지정토론에서 제기된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식에 기초한 분쟁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언론중재위원회 김정탁 위원님

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조정에 있어 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러한 점이 행정형 ADR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윤식 판사님의 의견은 법원도 ADR에 대해 긍정적이며 법원부속형 내지 법원연계형 ADR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쏟고 방법을 찾아나간다면 법원과 ADR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홍승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정결과에 집행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께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직권조정결정 제도와 편면적 중재제도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언론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면적 중재는 중재결과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반면,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언론중재법상의 직권조정결정과 편면적 중재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법원부속ADR이 현행법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민사조정법을 개정하여 법원은 대법원이 인증한 조정기구에 민사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면적 중재는 현재로서는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편면적 중재를 받겠다는 협정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DR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나 당사자의 자주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이 경시되는 소위 '2급정의'에 머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가 ADR에 의한 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ADR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분쟁해결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결합적 조정중재(Med-Arb)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히셨는데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재의 최대 약점은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면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를 받겠다는 조항이 삽입된 계약형 분쟁의 경우 중재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불법행위 유형의 분쟁의 경우 중재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편면적 중재가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박순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조사관)

조정제도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와 지정토론 내용을 듣다보니 ADR의 주 모델은 재판관이 조정절차를 주도하는 사법형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정제도가 일반 국민에게 보다 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황덕남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변호사)

내용상 다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소송보다는 ADR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큰

무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소송건수 등을 비교한 통계를 접한 바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소송건수와 조정건수는 약 130여만 건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90여만 건입니다. 두 나라의 인구비율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원 분쟁건수는 일본의 4배(소송건수는 일본의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소송건수 대비 조정건수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심해집니다. 일본의 경우 소송건수 대비 조정건수가 약 15%를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건수 대비 조정건수가 0.7%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소송일변도적인 분쟁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 간의 의식차이도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는 분쟁당사자의 표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부분의 분쟁당사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든지,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든지 또는 사회악을 응징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관 주도형 분쟁해결을 대단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ADR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과정에 있어 이러한 대결주의적인 국민의식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노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염규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ADR의 경우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민사상 화해계약의 효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ADR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조서에 재판에 따른 기판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정도는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DR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일반국민들이나 서민들이 조정제도를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 박영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분쟁조정인증팀 수석)

전자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거래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 한해 현재까지만 거래규모가 약 630조에 달하고 있고 전체 거래의 25%가 전자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관련 분쟁의 조정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의 일선에서 접한 전자거래 관련 분쟁의 상당수는 10~20만원 사이 상품의 반품 관련 분쟁입니다. 문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도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사상 화해계약의 효력밖에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했음에도 당사자 중 한 쪽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커다고 생각합니다.

▷ 이민영 (사회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는 것과 민사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여받는 것이 실무상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ADR을 통해 민사상 화

해계약이 성립된 사안인데도 이에 대한 집행이 어려워진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이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계약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는 판결을 어렵지 않게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장수태 (지정토론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다행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고 있지만 조정결과에 대한 효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박순미 조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순수한 조정이란 양당사자가 있는 분쟁에 객관적인 제3자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안 자체는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정의 효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오늘 발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법원과 ADR의 연계나 앞서의 박영희 수석께서 밝힌 재판상 화해의 효력부여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조정제도와 오늘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약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정일 (지정토론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박순미 조사관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ADR은 무엇보다 자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 ADR은 민간주도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앞서 염규석 분쟁조정실장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사상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

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조정합의를 하면서 ‘만일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당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재법의 경우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주로 중재기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순수 민간형 ADR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을 시도, 합의를 이뤄내되, 만일 합의사항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중재기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 김정탁 (지정토론자, 언론중재위원,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당사자가 민사상 합의의 효력만 부여받는 조정결과에 예를 들어 “만일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는 합의조항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 합의조항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중재위원들이 분쟁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만일 조정과정에서 조정인들이 법원의 판례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안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보여준다면 당사자들이 사안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함윤식 (지정토론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물론 10~20만원 정도의 소액사건이 법원이나 법원조정센터로 몰려온다면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한

편으로 만일 조정결과에 집행력을 부여해 준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모두 그 소액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가가 분쟁 해결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라는 이유라 거래를 부주의하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력까지 부여해주는 것과 같은 해결수단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승기** (지정토론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변호사)

개인적으로 저는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효력은 부여되어야 심정적으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직권조정결정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 불성립결정밖에 할 수 없는데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조정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ADR의 효력이나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과 같은 부분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모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정은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가당착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정이란 자기가 승복한 것은 스스로 따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쏟았음에도 합의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강제조정을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정을 최대한 해보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조정의 성격을 지금부터라도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발제자께서는 ADR기관 간의 연계를 언급하고 계시지만 연계는 ADR기관들만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조정센터와 같은 이미 만 들어져 있는 조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ADR제도도 이제 분쟁조정 효율성만을 너무 강조하는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의 성공률보다 조정의 만족률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정을 강제로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언론중재위원회가 여러 분쟁조정기관 관계자들을 모신 가운데 ADR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1985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민사조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법원의 사건부담이 너무 컸고 그로 인해 사법불신이라는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산발적으로 몇 가지 법률에 산재해 있던 민사관계 조정 조항들을 기초로 민사조정관련 법안

을 성안했습니다. 그것이 그 뒤 국회를 통과하여 민사조정법으로 확정되었고 올해 비로소 법원조정센터까지 발족하게 되는 성과로 이어져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은 언론분쟁을 다루는 위원회의 책임자로 일하게 되어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책임자로 취임해보니 언론분쟁에 관한 위원회의 조정이 대단히 보람 있고 성공적인 절차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다른 기관에도 파급해서 국민들이 분쟁을 소송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바꾸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 협력체제를 만들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연 다른 기관도 이러한 ADR기구 간 협력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조정·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대체로 ADR기관 간 협력과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심포지엄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협조와 협의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나라 조정·중재제도가 우리사회에서 훌륭한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협력과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몇 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몇몇 기관은 조정이나 중재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기관은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ADR에 대한 홍보는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기관에 대한 소개나 절차안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승자가 되

겠다는 대결적 인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며 문화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DR기관 간 협조와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ADR기관 간에 조정절차나 조정결과의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R의 절차나 효과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ADR기관 간의 공통적인 대처리 협조체제를 통해서만 보다 성과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ADR에 의한 분쟁해결이 효과적이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보람 있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DR을 활성화시켜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얼마 전에 인터넷포털 뉴스를 언론조정·중재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각계 다른 영역에서의 분쟁을 조정과 중재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정과 중재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도 공동의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조정·중재제도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토론회를 준비한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언론중재법과 포털의 책임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과 초기 포털뉴스 피해 조정, 중재 분석-

김 창 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전 경남중재부 중재위원

위원회는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6일 경남 창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 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룡 인제대 교수가 '개정 언론중재법과 포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최인석 중재부장(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I. 서론: 배경 및 목적

언론중재위원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포털의 언론 기능 여부에 대한 논란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2009년 8월 7일부터 포털은 더 이상 치외법권 지대에서 권한만 누릴 수 없게 됐다. 언론중재법의 개정으로 포털도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현행법 체계는 포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 계속 되고 있다. 이는 개정법 적용 두 달이 지난 지금 포털에 대해 단 한 건의 손해배상 등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필요한 후속조치를 더 심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개정법의 취지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분명히

언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영향력만 누리고 법적 책임은 없는 포털을 언론 관련 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언론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책무를 지우자는 입장이다. 즉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포털에 게재된 기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8월 7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실제로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나타난 쟁점이라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초기에 논의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조정,



경남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참석한 90여 명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중재방향을 잡아가는 데 유용한 정보와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방식으로 포털을 규제하기란 앞으로도 매우 어려워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억강부약의 정신’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 본론 : 쟁점 및 케이스 스터디

1.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포털뉴스 건에 대한 분석 및 쟁점 정리

인터넷 포털 뉴스 피해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중재 신청사건 64건 중 현재 계류 중인 31건을 제외한 33건 가운데, 취하(25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하의 사유를 보면 기사삭제(15건)가 가장 많고 보도약속, 보도이행 등이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포털은 보도와 관련한 정정이나 반론의 경우, 뉴스제작사에 내려지는 결과를 기다려 단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인 규제의 대상에서 여전히 자유로운 모습이다. 포털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라는 영역에 한정돼 규제의 대상에 올라있을 뿐이다. 현재와 같은 조정, 중재

1) 피해자들의 소극적 의지와 포털에 대한 이해 부족

언론피해를 당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를 호소하는 신청자들은 원제작자에게 정정, 반론 혹은 손해배상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이 결정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천 뉴스 제작사의 잘못이고 포털 역시 여전히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취하가 가장 많으며 취하의 사유도 ‘기사삭제’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물러나는 편이다. 포털은 처음부터 정정, 반론 보도에는 자유롭기 때문에 ‘기사삭제’ 정도를 규제로 볼 수 있을까. 기사삭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미 유포, 확산된 부분에 대해 포털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 현행법 체계 및 대법원 판결의 영향

현행법 체계로는 포털에 책임을 물리기가 쉽지 않다.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09년 4월 19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포털도 언론사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묻고 있지만 그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전제조건으로 사실상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일 것, 둘째 그 게시물로 인해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 셋째 그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 등이다. 그렇다면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제한적으로나마 물리기 위한 고심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포털에 대한 이런 대법원의 접근과 인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일선 조정과정에서 포털에 책임을 물리는 데 일종의 심리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사를 회원사로 거느리는 ‘공룡 유통회사’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정정, 반론, 손해배상 정도다. 이 세 가지는 뉴스와 정보를 제작하는 언론사에는 모두 해당하지만 정작 포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해배상 하나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원래부터 뉴스제작사를 대상으로 만든 규제법이며 포털처럼 유통, 매개회사 규제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그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수한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성이 훨씬 더 커서 다른 어느 경우보다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사업목적에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얻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사에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지만 그 규제의 내용은 소극적인 ‘기사삭제’ 혹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포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으로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전술한 까다로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없거나 효과적인 규제가 되지 못한다는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제17조의2)만 제정하여 운영한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입법미비로 처음부터 포털의 특성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에 대한 천착이 부족했던 결과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3) 개인의 법익 피해 구제와 포털의 영업권 보호의 형평성

미디어를 통한 개인의 피해는 예방이 최선이다. 오보든 왜곡보든 이미 보도가 나가버리면 그 피해구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삽시간에 전방위로 퍼져나가는 속성 때문에 포털의 매개, 확산의 역할은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법익을 포털의 영업권 우위에 둘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이 더욱 다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고 하겠다.

2. 케이스 스터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통해 본 언론사와 포털의 영향력, 규제의 형평성

지금까지 법적 논의나 중재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살펴 보면 비교적 개인의 법익보다 포털의 법익 보호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기술적인 문제, 법체계상의 한계 등으로 책임과 권한은 막강해진 ‘현대판 거인’ 포털에 대해 제한된 수단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제 보다 구체적 사건을 인용하여 공론의 내용과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이 사건은 2009년 11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초기 보도의 논조에서 크게 달라진 사건이다. 이 보도 내용과 건수, 예상 피해, 부과할 수 있는 규제방안, 피해자의 법익 보호를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시작과 내용을 살펴본다.

1) 논란 속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전라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그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성격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2009년 10월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초기 언론의 보도와 현재의 보도 논조에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 법원의 진실이 나올 무렵이면 세인의 망각 속에 희미해진 과거사로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언론의 보도행태와 검찰의 문제점을 짚어줘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이 사건을 언론중재위

원회에서 뉴스제작사와 포털의 책임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올라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불행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와 검찰의 비과학적인 수사기법, 포털의 부작위에 의한 매개 및 확산과 그 영향력과 책임감, 일반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7월 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언론은 “‘청산가리 막걸리’ 2명 사망, 2명 입원” 식으로 단순,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9월 중순 검찰에서 일방적인 수사발표를 하자 언론은 일제히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 때문”,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불륜 숨기려 범행”, “15년 성관계 부녀, 짜고서 어머니에게 청산가리를” 등으로 보도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검증은 없고 ‘사실로 믿는 관례’를 그대로 반복, 세상을 놀라게 했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주범이라는 딸의 영악함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의 법적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한 개인의 피해구제 차원에서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먼저, 언론이 형사사건의 진실이 나오기도 전에 마치 검찰의 발표를 진실인양 대서특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중점보도의 시점을 현재처럼 검찰의 수사발표 시점에 의존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서 언론은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확대, 유통하여 이익을 챙기는 포털의 책임도 면책될 수 없다.

2)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한 신문사와 포털의 보도 비교

사건 초기의 중립적 보도가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라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제목과 기사내용을 모든 매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와 내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제 이 내용을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검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 결과 다음과 같다.

－ 중앙과 지방 신문사에서 확인되는 인권침해적인 제목과 보도기사를 포털에서 훨씬 더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다.

－ 포털에는 중앙, 지방 신문, 인터넷 언론, 방송사, 통신사 등 모든 매체의 보도를 동시에 접할 수 있어 확산의 속도와 파급효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양적인 문제와 함께 질적으로도 포털에서는 단정적인 제목과 표현 등이 걸러지지 않은 채 유통, 확산됐다.

－ 이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룬다면 포털에 어떤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논리처럼 뉴스를 단순 매개 했다면서 각 해당 언론사의 정정·반론 보도를 받은 뒤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것이 최선일까.

III. 결론: 쟁점정리 및 대안제시

포털에 대해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하라는 주장은 아니다. 포털의 자체 노력을 폄하해서도 아니다. 포털이 공론의 장 역할을 하며 새로운 미디어 강자로 부상한 이면에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의 자유로운 유통과 확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상은 물론 어느 매체에도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 다만 자유와 권한에는 책임이 수반되며 그것이 불균

형을 이루게 되면 누군가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계할 일이다.

포털의 대표주자격인 네이버의 경우 이미 기존매체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막강한 파워 매체로 자리 잡았다. 매출액에서도 기존의 미디어를 훨씬 추월했거나 추월 중이다. 영향력 면에서도 이미 기존의 강력한 방송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됐다.

따라서 결론과 함께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규제수단의 효율성에 대해 = 포털의 권한과 영향력이 늘어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수단과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2) 작위와 부작위의 적용논리에 대해 = 포털에 대한 책임은 작위의 경우는 물론 부작위의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 책임의 정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부작위에 의한 단순한 저장, 매개 행위의 차원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3) 포털의 지위 변화에 대해 = 언론사와 포털은 형식적으로는 제작사와 유통회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지만 그 영향력과 수익차원에서 포털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기 시작했다. 포털과 계약을 맺지 못하는 언론사는 검색순위에서 멀어지는 등 현실적으로 포털은 언론사 선택권도 가진 만큼 불법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 대처할 수단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주로 책임을 물리는 방식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 론

사 회 최 인 석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경남중재부 중재부장

최인석(사회자, 중재부장) : 주제발표를 해주신 김창룡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하신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경남21환경교육연합회 실장) : 포털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규제도 도의적인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적인 규제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에서 연예인의 미성년자 가족의 초상 공개가 법과 보도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초상 공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산가리 사건을 보도한 언론과 이를 매개한 포털의 책임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포털은 단순히 언론보도를 매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무분별한 댓글과 악플이 문제이지 기사를 매개한 것이 문제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포털도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상인(경남도민일보 기자) : 우리 신문의 기사는 포털

에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털의 기사검색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포털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재석(마이뉴스코리아 발행인) : 포털의 기사는 기사를 올리는 신문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포털이 기사를 취사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이익은 포털이 가져가고 책임만 언론사에 떠넘기고 있는데,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창룡(발제자) : 오늘의 주제발표내용은 포털의 장단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 중, 예를 든 미성년자의 초상 공개는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며 현행법상으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배경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자는 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생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포털의 매개가 무슨 잘못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발표를 언론이 예단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보도들을 포털이 게시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포털에 의해서 더욱 피해가 확산되고 있

는데 기사삭제 등의 미온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개도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최인석 : 포털의 매개기능과 관련하여 충북과 전북지방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언론사는 기사를 생산하는 기사제공자이고 포털은 이 기사를 유통시키는 유통사업자입니다. 상품으로 비유하면 언론사는 상품을 만든 곳이고 포털은 상품을 판매하는 마트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불량일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만든 곳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마트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마트도 유통상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발표내용을 과장 각색하여 보도했다면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승도(경남신문 정치부장) : 기사가 문제되어 언론중재과정에서 기사삭제 등으로 원만히 해결하였는데, 포털에 남아있는 기사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만 신문사가 성의를 가지고 기사를 삭제하고 포털 측에게 신속히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다면 신문사로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동(경남신문 논설실장) : 포털의 책임에 대해 외국 사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 우리나라와 같이 포털을 법으로 규율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 포털에 대해서도 언론과 같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지만 문제가 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물리게 될 것입니다.

하재석 : 기사를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로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다른 곳으로 퍼 올려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사를 작성하여 올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백경석(중재위원) : 기사가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퍼 올려져 문제가 되었다면 포털과는 달리 개인 홈페이지 등은 삭제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창룡 : 저도 마이뉴스코리아 발행인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이버 기자에 대해 기사를 올린 적이 있는데 해당 기자가 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전화하여 별을 받고 나왔는데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아직도 사이버 기자로 나온다면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털에 전화하여 삭제 요청하고 전화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삭제가 되지 않아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면 삭제 요청한 사실을 기록하여 두는 등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사를 올린 사람으로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경숙(경남도의회 의원) : 각종 선거에서 언론사의 기

사가 문제가 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포털을 통해 퍼 올려진 기사는 해결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석 : 포털에 대한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 다양한 사례를 예정하여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시행하면서 피해구제 조정레나 판례가 쌓이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피해도 구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창룡 : 선거와 관련하여 어느 지방지가 연합뉴스 제 공기사에 의도적으로 내용을 덧붙여 선거에 임박하여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 해당 후보자는 낙선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해당 지방지가 연합뉴스 전문 기사를 각색이나 윤색 없이 그대로 보도했는지, 기사를 보도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신속히 구제할 수는 없어도 사후에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안기한(경남우리신문 발행인) : 포털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는데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도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 포털의 책임과 피해구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도 피해구제 대상이 되었음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아직 많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주(사무총장) : 우리 위원회는 매년 3개 지역을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언론중재제도를 홍보하고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의견도 취합하여 좀 더 나은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것입니다.

최인석 :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치고 전에 윤구 부위원장의 총평을 들겠습니다.

윤구(부위원장) :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발제자, 그리고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사회자,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7일부로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자체 생산한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제발표에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권력이 되어버린 포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 자리도 마련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은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저녀 사건’ - 왜곡된 사회 인식의 돌출

김 서 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터넷을 달군 루저 발언

2009년 11월 9일 방송된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대생 한 사람의 발언 때문에 세상이 들썩했다. 남자들이 갖춰야 할 조건을 언급하면서 신장이 180cm 이하인 사람은 루저(인생 실패자) 아니냐고 말한 것이다. 곧 인터넷은 뜨겁게 달구어졌고, 그 여대생은 루저녀(이하 갑)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갑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를 떠나 키가 180cm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시청자로서 갑 때문에 기분 나빴던 감정을 인터넷에 표현하는 것 이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갑의 발언을 빗댄 패러디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키가 작았던 역사 속 인물들을 희화화하거나, 할리우드 스타 혹은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총 망라해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 ‘루저’ 타이틀을 붙이는 일도 유행처럼 번졌다. 인터넷 쇼핑몰에선 루저들을 위한 신발 깔창을 팔고 있고, 신문기사 제목에도 루저라는 말이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갑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증폭된 것이다.



이러한 관심의 증폭은 갑에 대한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졌다. 갑의 성형 전 사진이 돌아다니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갑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언급, 갑이 남겼다는 이런 저런 글들이 인터넷을 달궜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언론들이 이를 다루고, 파장이 커지자 갑이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미녀들의 수다’ 제작진과 진행자 남희석이 “일부 시청자에게는 오해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점에 대해서 유감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방송인 '미녀들의 수다' 제작진이
발언을 편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80cm 이하면 루저'라는
자막까지 곁들여 내보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드디어는 갑의 표현에 따르면 루저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11월 17일까지 프로그램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총 78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8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물론 대다수가 기각되었으나 일부는 조정 심리까지 들어갔다고 하니 참 대단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도 12월에 들어서기도 전에 인터넷을 달궜던 다른 사건들이 으레 그랬듯이 조용해졌다. 이 사건이 소수의 군중심리에 의해 증폭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잠잠해진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갑이 한 발언의 본질과 이에 대한 감성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들은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루저 발언 여대생과 제작진의 시련 깊이 못한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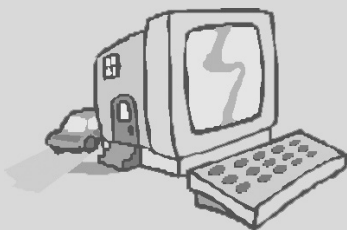
갑이 방송에서 루저 발언을 한 이후 누리꾼들이 갑에게 행한 일련의 행태들은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갑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설사 시청자들이 이번 사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방송이 가지는 영향력과 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사석에서와 방송매체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사적인 대화에서 발생한 갈등은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이후의 대응이 비교적 쉽지만 방송매체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방송에서의 발언은 차후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갑의 발언은 물론이고, 생방송이 아니라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방송인 '미녀들의 수다' 제작진이 발언을 편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80cm 이하면 루저'라는 자막까지 곁들여 내보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방송에서는 이후 시청자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단지 이번 사안은 갑의 발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보다는 표현 방식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키에 대한 개인의 선호, 즉 자신의 짝이 될 남자의 키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 다든가, 이상형을 고를 때 키가 다른 변수보다 더 중요하든가 하는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야 문제 될 리가 없지만, '루저'라는 표현은 차원이 다르다.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일정한 사회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한 개인의 정서를 사회적 평

가로 치환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키’라는 신체적 요인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생각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여론 또는 객관적 기준을 부여하려 한다. 이런 행태는 결국 서로 다른 생각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기준을 놓고 벌어지는 대립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즉 개인의 생각에 ‘루저’라는 사회적 기준을 덧씌운 것은 애초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갑이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은 명백해 보이지만 갑의 발언은 그런 갈등을 예비하고 있는 표현이었다. 더군다나 ‘루저’라는 사회적 평가는 개인의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신체적 특성이 개인 노력의 결과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것이 방송 당시 출연자(다른 여대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평소 대화에서도 이미 키가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현실임에도 유독 갑에게 포화가 집중된 이유이다.

따라서 갑은 물론 방송제작진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과 시청자들에게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회적 평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했다. 갑이 ‘소신껏 말한 것을 이해 못하는 사회(다원성이 부족한 사회)’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하지만 개인의 생각과 달리 이번에는 갑 자신이 사회적 기준을 적용하여 남을 평가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이점에서 갑의 경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조직된 노동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이를 공중에게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방송제작진의 경우 그 책임이 더 크다 하겠다.

루저 발언자에 대한 폭력



갑과 방송제작진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이번 사건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 이후 쏟아진 갑에 대한 비난과 일부 누리꾼의 생활 침해 행태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루저 발언에 대한 반대 의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갑에 대한 비판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소통하는 사회, 다원성을 인정하는 사회의 특성이고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에게 욕설을 해대는(이것까지도 의견의 다른 방식이고 표현의 자유 영역

우리는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백번 양보해 그럴 수도 있겠다) 것을 넘어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포시키고, 학교 게시판이나 교수 이메일을 통해 갑을 체적시키라 요구하며, 갑의 미니 홈피를 용단 폭격하고, 갑의 과거 사진과 갑이 썼던 과거 글귀들까지 모두 뒤져서 유포하는 행위는 의견의 교환이 아닌 폭력이다.

갑의 신상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이고 이로 인해 갑의 신상에 혹 생길지 모르는 위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피의자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마땅한데, 갑이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갑의 과거 사진이나 과거 글귀를 함부로 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정상적으로 등록한 학생으로서 갑이 교육 받을 권리, 그리고 누리꾼들의 폭격으로 학교나 교수가 받은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학교에서 체적시키라는 주장에 강제성이 없으니 의견을 표출한 것에 불과했다고 변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견의 제시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이번 사건이 개인 권리의 제한을 고려할 만한 공적 사안도 아니다. 우리는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개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루저 발언이 개인의 문제일까?

갑의 루저 발언 이후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누리꾼들이 갑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고민하게끔 한다. 갑의 발언이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갑처럼 생각하는 것이 갑뿐이었을까? 갑의 생각 또한 우리 사회 흐름의 산물은 아니었을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송에서, 젊은이들의 일상 대화에서 외모 특히 ‘키’는 상대에 대한 선호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키가 늘씬한 것을 부러워하고, 키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제는 거의 유일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못 생긴 것은 참아도 키 작은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을 방송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갑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어찌면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단지 갑은 방송이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루저라는 사회적 평가 기준으로 표현한 잘못이 있을 뿐이다.

갑의 발언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사회적 경향이다. 이때 이 왜곡된 인식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180cm가 안 되어 루저라는 소리를 들은 남자들일까? 아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피해자

인 것 같다. 여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남자들로부터 외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모욕받으며 살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능력보다 외모가 취업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회, 능력보다 외모로 직장 동료들을 평가하는 남성, 인성보다 2세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외모로 배우자를 고르는 남성들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여성의 50%가 성형 수술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성이 저체중을 지향하게 만들며, S 라인을 강조하고 뚱뚱한 여자는 게으르다고 공격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무슨 벽지’ 같은 표현들이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우리의 판단기준은 그렇게 사회로부터 강요받고 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다원성을 부정하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경쟁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개성을 무시하고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단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존재한다. 성형을 해도 ‘예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김○○, 이○○를 닮게 해달라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의 책임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번에는 가해자로 둔갑하고 말았지만, 갑 또한 체중 때문에 그런 피해자였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우월감을 키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갑의 발언에 남성들이 분노한 것은 이제껏 가해자이다 역으로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지나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루저 발언 이후에도 방송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여성 외모의 강조 또는 비하 발언들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결론은 갑 또한 과거 외모 지상주의의 피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의 희생자일 뿐이다.

루저 발언 이후 언론이 무엇을 다루어야 했는지는 명확하다. 누리꾼들의 비난과 패러디를 생중계하듯 전해 사회를 들끓게 하고, 갑과 방송사의 대응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키를 강요하는 사회 경향을 해부하고 그 원인을 찾아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 것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이 되었다는 사실은 기이한 해프닝이었다. 남성들이 그 발언으로 받은 감정적인 상처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 사안이 언론중재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갑의 발

근본적인 해법은 소원하고 이상론 같지만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줄이는 것이다.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언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사실을 적시하거나 주장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받은 피해가 얼마인지 계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애초 심리 배정을 하지 않고, 조정부에서 심리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여 설득하고 끝냈어야 할 사항일 수도 있다. 이것이 심리대상이 되고 KBS가 어쩔 수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대중의 압력에 기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례를 남기고 말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일반인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감이 오히려 자신의 받은 권리 침해를 구제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사건이 아닐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특정 방송사, 특정 프로그램의 잘못으로만 귀착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근거에는 이러한 사고를 강요하는 사회구조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응도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개별 방송프로그램 제작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나 이를 강요하는 사회구조 그리고 이로 인한 인권의 침해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요구한 방송제작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 본질에 가까운 해법인 것이다. 더 근본적인 해법은 소원하고 이상론 같지만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줄이는 것이다.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루저녀’ 사건 관련하여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총 264건이다(12월 11일현재). 이중 222건은 기각, 36건은 취하 되었으며, 5건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1건은 계류 중에 있다. 사건처리결과는 조정중재신청사례(p.148)참조.
 - 편집자 주

2009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한 신청인,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주)코리아리서치가 대행했으며, 조사개요 및 주요결과를 발췌, 수록한다. ... 편집자 주

I.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2009년도 언론 조정(중재) 신청 사건 및 상담·교육서비스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를 평가하여, 언론중재제도 개선 사항을 진단하고 위원회의 업무추진방향, 정책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조정(중재) 신청인 : 441명 • 조정(중재) 피신청인(언론인) : 377명 • 상담 이용자 : 1,063명 • 교육 수강자 : 974명 (일반인 418명, 언론인 556명) / (2009년 1월 ~ 2009년 9월까지 신청 또는 이용자임)
조사 응답자	• 조정(중재) 신청인 : 174명 (회신률 39.5%) • 조정(중재) 피신청인(언론인) : 110명 (회신률 29.2%) • 상담 이용자 : 546명 (회신률 51.4%) • 교육 수강자 : 974명 (일반인 418명, 언론인 556명)
조사 방법	• 조정(중재) 신청인 / 피신청인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 조사 • 상담 이용자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교육 수강자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조사
조사 기간	• 2009년 10월 12일 ~ 11월 13일
주관 및 수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 (주) 코리아리서치센터

I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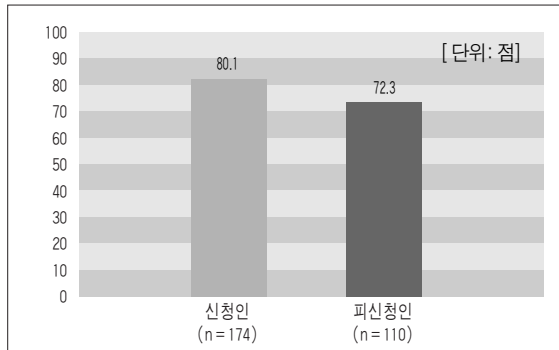
1. 조정(중재) 신청인/피신청인 이용만족도

• 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80.1점,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72.3점으로 피신청인에 비해 신청인의 종합만족도가 7.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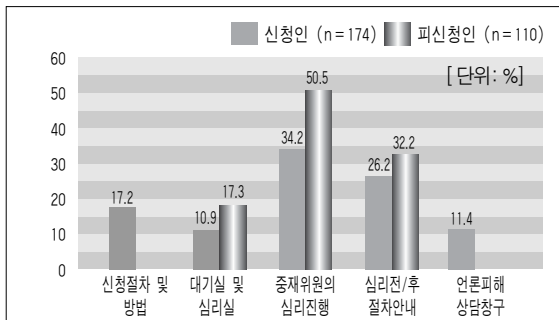
• 조정(중재)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차원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신청인 경우, 중재위원의 심리진행과 심리전/후 절차안내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피신청인 경우, 중재위원의 심리진행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1) 조정(중재) 종합 만족도

〈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



〈 조정(중재) 차원별 중요도(가중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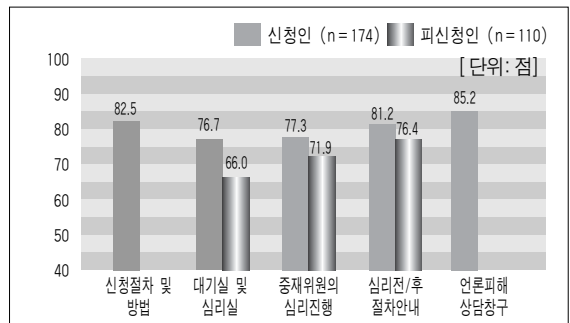


2) 차원별 만족도

• 조정(중재) 제반 차원별 만족도는 피신청인에 비해 신청인의 만족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신청인 경우 언론피해 상담창구와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조정(중재) 신청을 위해 처음 접하게 되는 상담창구와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첫 인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피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전/후 절차안내 > 중재위원의 심리진행 > 대기실 및 심리실 순으로 나타난다.

〈 조정(중재) 차원별 만족도(가중치) 〉



3) 항목별 만족도

• 2008년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 항목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심리후 결과/향후 법적 절차의 자세한 설명에 대한 만족도의 향상 폭이 가장 큼.

• 신청인 경우, 간편한 신청절차(84.5점), 대기실 및 심리실의 청결함(85.3점), 조용함(84.5점), 접수사실 및 조정기일 통보(87.6점), 심리전 절차/심리과정의 자세한 안내(85.6점), 상담창구 이용시 상담원의 친절성(88.8점), 경청자세(86.9),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담(87.7점)에 대한 만족이 높은 편임.

• 피신청인 경우, 대기실 및 심리실의 청결함(80.4점), 조용함(78.0점), 심리전/후 절차안내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편임.

• 반면, 타 항목대비 중재위원의 심리진행에 관한 항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중재위원의 적극적인 심리진행과 공정성, 전문성보유, 의견경청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정(중재) 항목별 만족도 〉

(단위:점)

		신청인			피신청인		
		2008년	2009년	증감률	2008년	2009년	증감률
사 례 수		(206)	(174)		(103)	(110)	
신청절차 및 방법	간편한 신청절차	82.5	84.5	2.0	—	—	—
	신청서류 작성 용이	78.5	82.0	3.5	—	—	—
	간단한 구비서류	78.9	82.7	3.8	—	—	—
대기실 및 심리실	청결함	82.2	85.3	3.1	76.5	80.4	3.9
	소음 없이 조용함	80.5	84.5	4.0	75.1	78.0	2.9
	넉넉한 공간	71.2	75.1	3.9	63.2	66.9	3.7
	편의시설	71.8	74.4	2.6	63.2	67.3	4.1
	안내 팸플렛 비치	72.8	76.1	3.3	66.0	67.3	1.3
중재위원의 심리진행	적극적인 심리진행	75.9	79.2	3.3	77.0	77.4	0.4
	공정한 심리진행	75.9	78.3	2.4	73.9	75.0	1.1
	중재위원의 전문성	76.8	79.8	3.0	71.1	73.6	2.5
	당사자 의견경청	75.9	79.8	3.9	75.9	73.2	-2.7
심리전/후 절차안내	접수사실 및 조정기일 통보	86.5	87.6	1.1	80.0	80.9	0.9
	심리전 절차/심리과정의 자세한 안내	83.4	85.6	2.2	77.4	79.1	1.7
	심리 후 결과/향후 법적 절차 자세한 설명	76.4	83.3	6.9	73.1	78.7	5.6
	사건 종결 후 보도문 게재여부 안내	73.3	78.3	5.0	—	—	—
언론피해 상담창구	상담원의 친절성	86.6	88.8	2.2	—	—	—
	상담자의 경청자세	85.0	86.9	1.9	—	—	—
	신속한 상담	84.4	87.7	3.3	—	—	—
	전문적인 업무지식	82.6	84.8	2.2	—	—	—
	적극적인 상담	83.5	87.7	4.2	—	—	—
	문제해결에 도움	81.5	84.3	2.8	—	—	—

4) 언론중재위원회 인지 및 인지경로

•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조정(중재) 신청인의 93.7%는 인지하고 있으나 그 중 28.2%만이 정확히 알고 있으며,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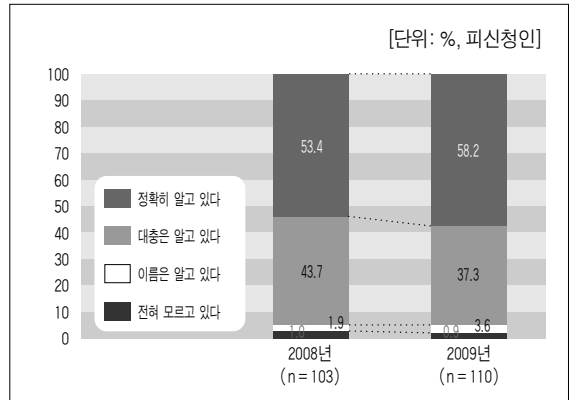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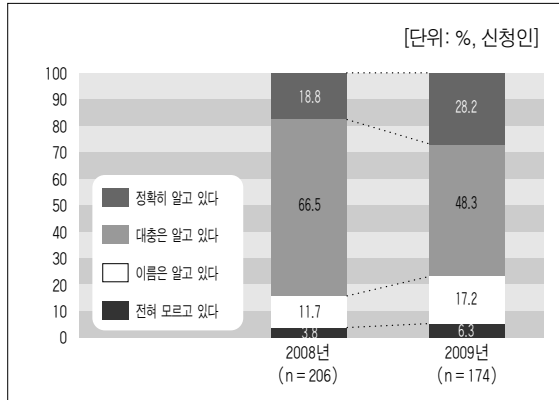
는 전혀 모르고 있음. 반면 피신청인의 95.5%가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 58.2%는 정확히 알고 있음.

• 조사결과, 신청인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기능과 역할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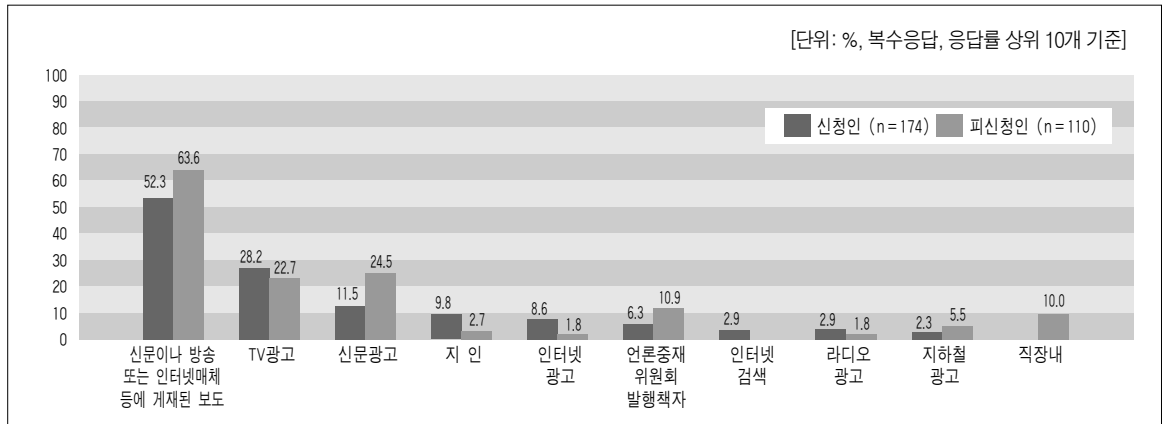
• 언론중재위원회 인지경로는 전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매체 등에 게재된 보도를 통하여 주로 인지하고 있으며, 광고 중에서는 TV광고나 신문

광고를 통한 인지비율이 두드러짐. 향후 홍보활동을 위한 매체전략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언론중재위원회 인지여부〉



〈언론중재위원회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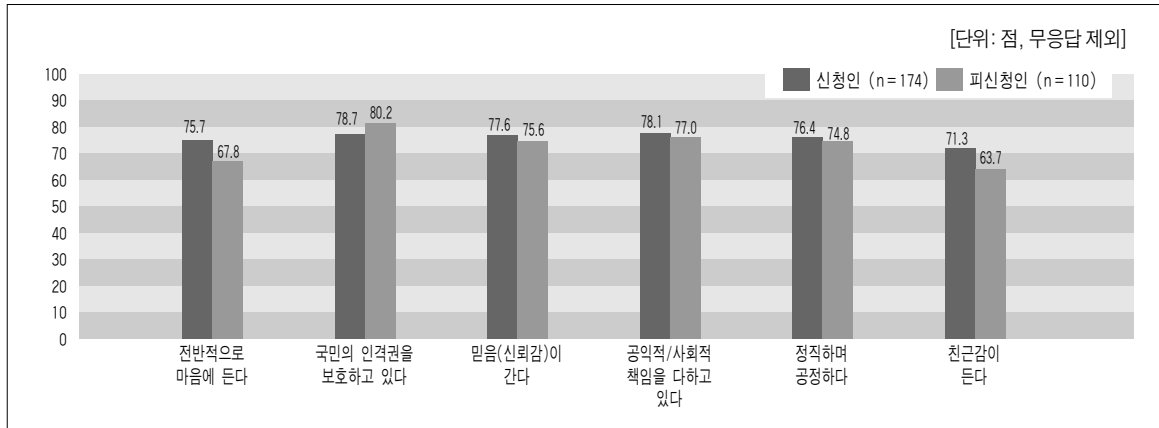
5)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평가

•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반적 이미지 평가는 신청인 75.7점, 피신청인 67.8점임. 기사사 대비 모든 항목에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

• 전반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언론중재위

원회 역할에 대한 이미지가 잘 형성되어 있음.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신뢰가 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정직/공정하다는 이미지 역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접근을 용이하게 돕는 친근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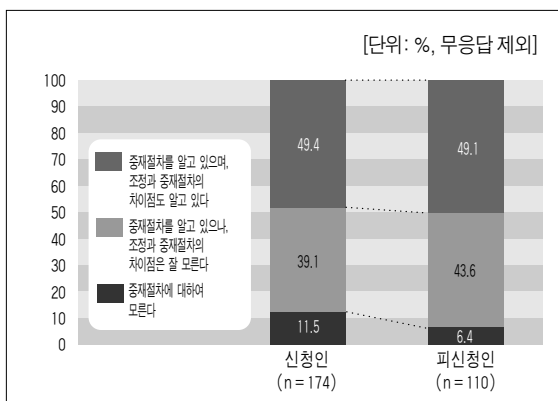


6) 중재절차 인지 여부

• 조정절차 이외 중재절차에 대한 인지수준을 파악한 결과, 중재절차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신청인의 88.5%, 피신청인의 93.6%로 신청인에 비해 피신청인의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신청인의 49.4%, 피신청인의 49.1%만이 조정과 중재절차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으며, 2008년 대비 전반적 인지수준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재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중재절차 인지여부〉



7) 개정 언론중재법 인지도 및 인식

• 조정(중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닷컴 등에 실린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이나 반론 혹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진 개정 언론중재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71.8%, 피신청인의 95.5%가 이러한 개정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특히, 피신청인의 인지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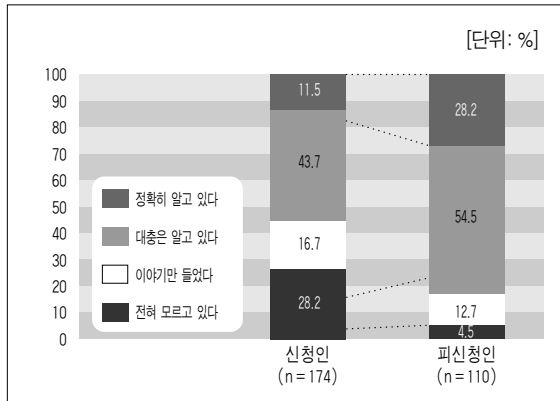
• 반면, 개정 언론중재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신청인은 11.5%, 피신청인은 28.2%로 인지도에 비해 인지수준은 낮은 편으로 나타나, 개정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포털사이트나 언론사닷컴 등에 실린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이나 반론 혹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진 개정 사항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94.2%, 피신청인의 87.2%는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개정 언론중재법이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피신청인에 비해 신청인이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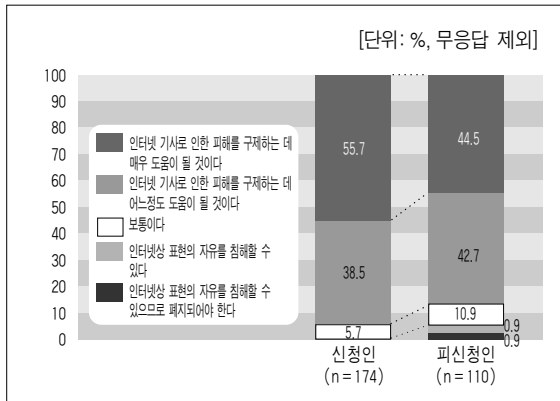
언론중재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피신청인의 경우, 인쇄 및 TV매체 종사자의 88.0% 이상이 개정 언론중재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인터넷 종사자 경우 69.2%만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여 종사하고 있는 매체에 따른 의견 차이를 보임.

〈개정 언론중재법 인지도〉



〈개정 언론중재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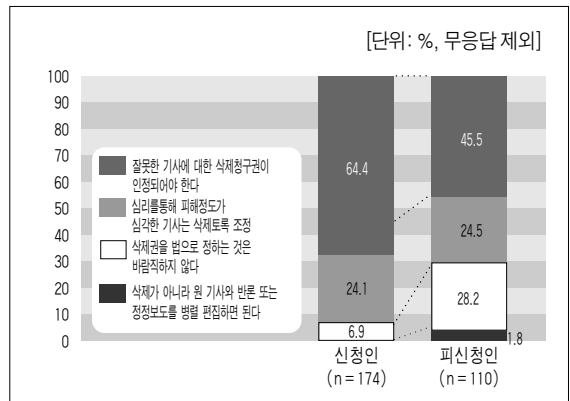


8) 인터넷매체의 기사 삭제 청구권에 대한 인식

• 인터넷매체의 기사 삭제 청구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신청인의 88.5%, 피신청인의 70.0%가 잘못된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삭제청구권이 없더라도 피해정도가 심각한 기사는 심리를 통해 삭제토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반면, 신청인의 6.9%, 피신청인의 28.2%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나 자율규제 기능도 있으므로 삭제권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타나 신청인에 비해 피신청인 경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나 자율규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함.

〈인터넷매체의 기사 삭제 청구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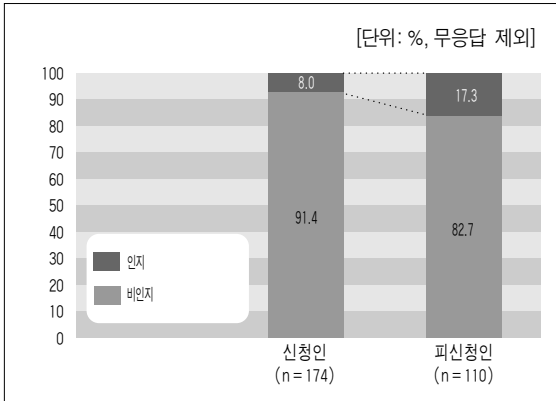
9) 인터넷매체 대상 심리 중 알림 문구 게재에 대한 인식

• 인터넷매체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포털사이트 등으로 하여금 해당기사 제목 바로 밑에 기사 본문화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 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가 진행 중임'이라는 문구를 게재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8.0%, 피신청인의 17.3%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중 인터넷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인지 수준이 다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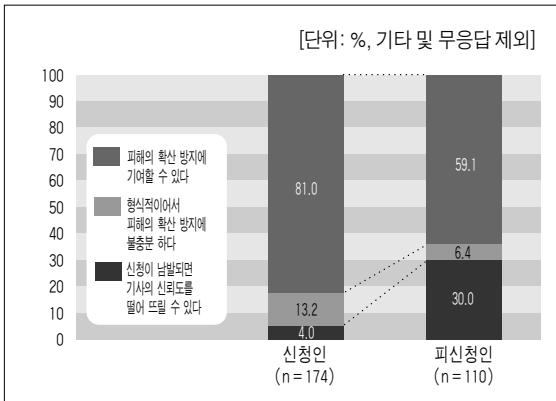
• 인터넷매체 대상 심리 진행 중임을 알리는 문구 게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신청인의 81.0%, 피신청인의 59.1%는 알림문구 게재가 피해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피신청인의 30.0%는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

다고 평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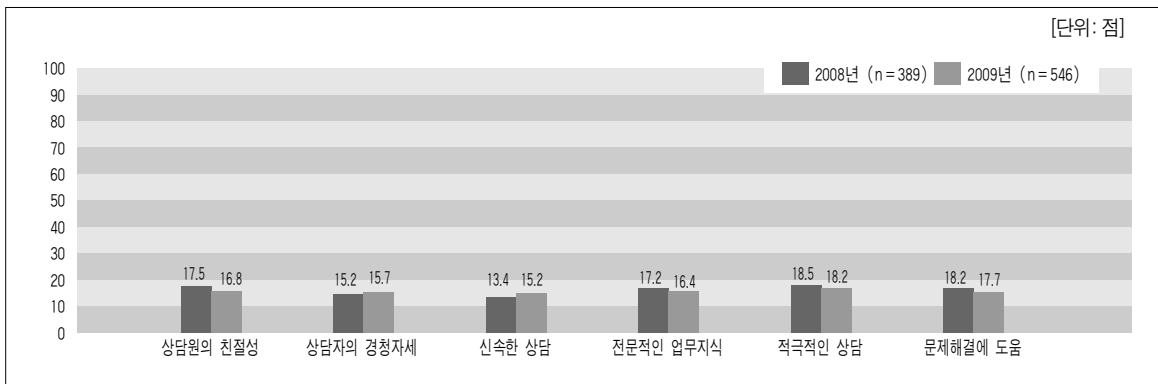
〈인터넷매체 대상 심리 중 알림 문구 게재 인지여부〉



〈알림문구 게재에 대한 인식〉



〈상담이용자 항목별 중요도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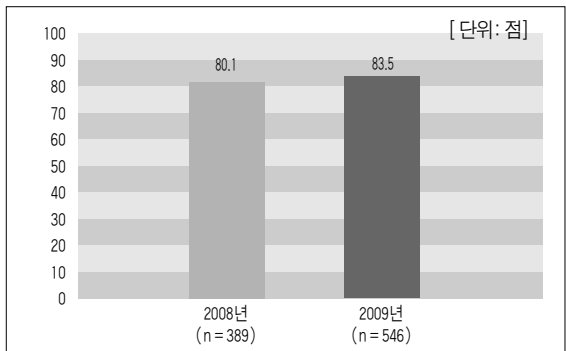
2. 상담이용자 이용만족도

•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상담원의 친절성, 「상담자의 경청자세, 「신속한 상담, 「전문적인 업무 지식, 「적극적인 상담, 「문제해결 도움」 총 6가지 각 항목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가중치(중요도)를 부여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83.5점으로 기 조사(81.7점) 대비 1.8점 향상하였음.

•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항목별 중요도는 상담원의 적극적인 상담태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나, 항목 간 중요도의 차이가 거의 없어, 전 항목이 종합만족도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1) 상담이용자 종합 만족도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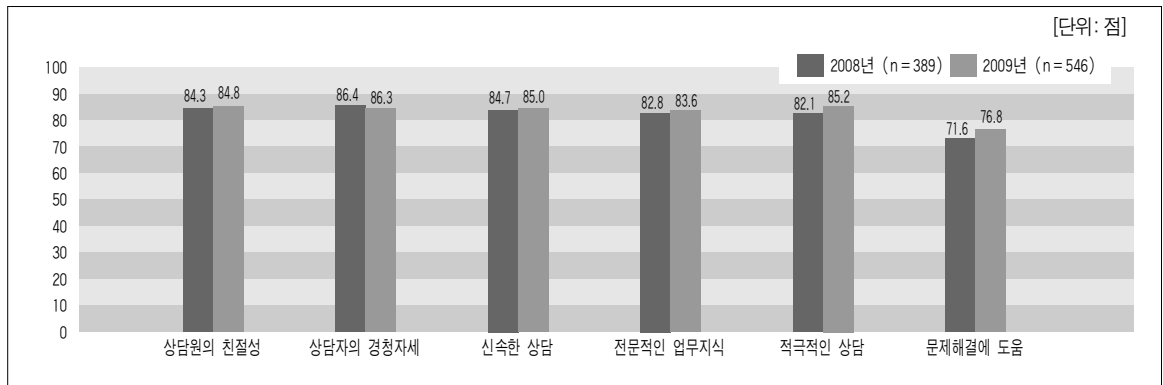
2) 항목별 만족도

• 상담이용자 상담창구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경청자세(86.3점) > 적극적인 상담(85.2점) > 신속한 상담(85.0점) > 상담원의 친절성(84.8점) > 전문적인 업무지식(83.6점) > 문제해결에 도움(76.8점) 순으로 나타나, 경청자세, 적극성,

신속한 상담과 같은 상담자의 상담태도에 대한 만족이 높은 편임.

• 전반적으로 기조사 대비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만족도 향상 폭이 5.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이 항목은 중요도가 높은 것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상담이용자 항목별 만족도〉



3)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 이용행태 및 이유

•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하기 전, 다른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55.5%는 다른 조치 없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35.3%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하여 항의하거나 질의, 7.7%는 변호사에 의뢰, 2.2%는 언론관련 시민단체에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난.

• 다른 조치 없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바로 상담을 신청한 비율은 기조사(67.1%)대비 11.6%p 감소한 반면, 해당 언론사에 항의 및 질의를 하거나 변호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약간 늘어남. 향후에는 언론피해 발생 시, 바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 인지 및 이용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다른 조치 없이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를 바로 이용한 이유로는 전체의 70.6%가 언론피해를 담당하는 주요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인식하고 있으며, 17.2%는 주변 사람의 추천, 9.6%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 외 9.2%는 언론중재위원회 광고를 보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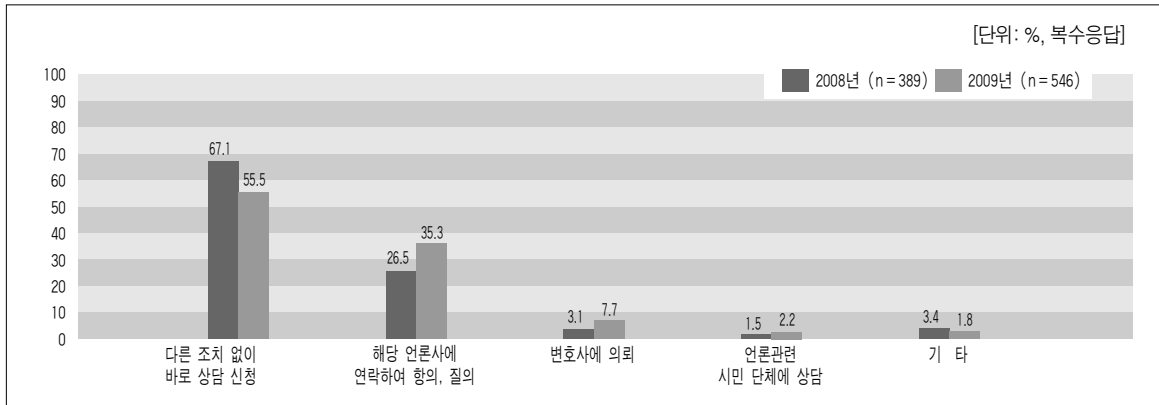
•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피해 담당 주요기관으로 인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먼저 찾은 응답자 비율은 기조사(76.2%) 대비 5.6%p 감소한 반면,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해 보았거나, 광고를 보고 이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약간 증가 하였음.

• 다른 조치 후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한 이유로 해당 응답자의 48.1%는 '다른 상담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28.4%는 '다른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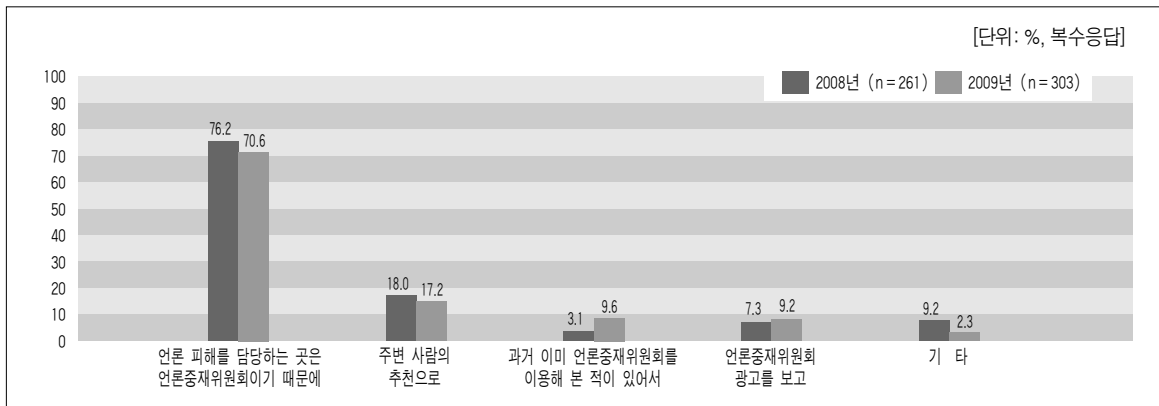
관보다 전문성 및 신뢰도가 높아서 다시 언론중재위원회
원회를 찾았다'고 응답함.

• 상담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 및 신뢰
도에 대한 기대는 기초조사(7.0%) 대비 21.4%향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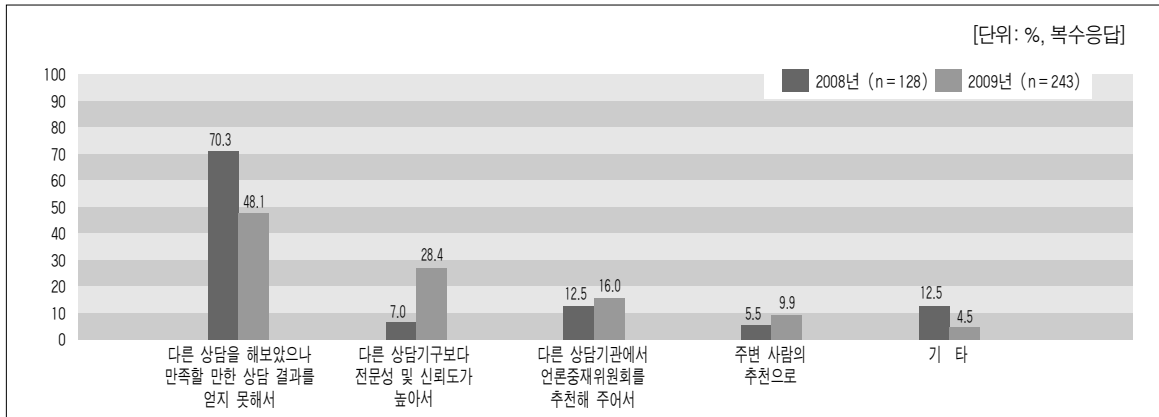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전 조치 방법〉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 바로 이용한 이유〉



〈다른 조치 후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 이용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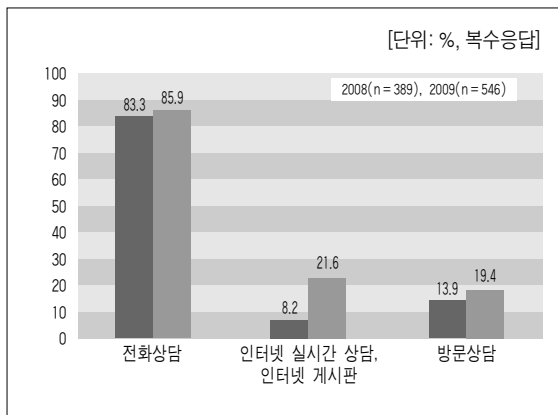


4) 언론중재위원회 상담방법

• 언론중재위원회 상담방법으로는 전체의 85.9%가 전화상담을 이용하였으며, 21.6%는 인터넷 실시간 상담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상담, 19.4%는 방문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이 전화상담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조사 대비 인터넷 상담이용률이 13.4%p 높아짐.

〈언론중재위원회 상담방법〉



5) 상담이용자의 개정 언론중재법 인지도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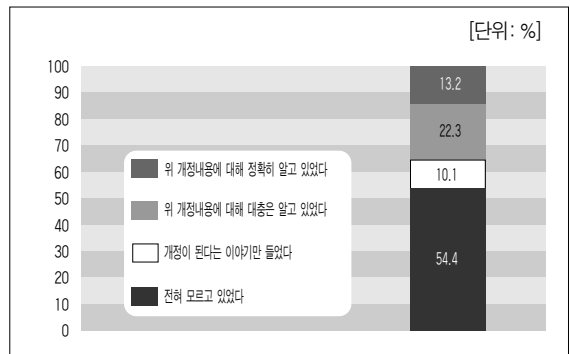
•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나 언론사닷컴 등에 실린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이나 반론 혹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진 언론중재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5.6%는 인지하고 있으며, 54.4%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개정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3.2%에 불과하며, 들어보았거나 대충알고 있다는 응답이 32.4%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 언론중재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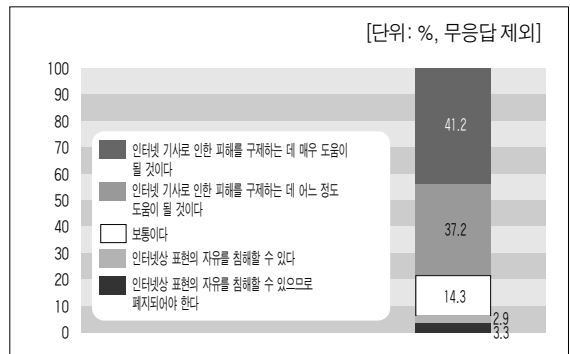
• 포털사이트나 언론사닷컴 등에 실린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이나 반론 혹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중재)신청이 가능해진 개정 언론중재법에 대해 상담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8.4%는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2%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개정 언론중재법이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개정 언론중재법 인지도〉



〈개정 언론중재법에 대한 인식〉



3. 교육수강자 이용만족도

1)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는 「주제 및 내용」, 「전문 지식에 대한 이해」, 「사건, 사례를 통한 이해」, 「시각 자료나 동영상 등을 통한 이해」, 「강사의 성의 및 매너」 총 5가지 각 항목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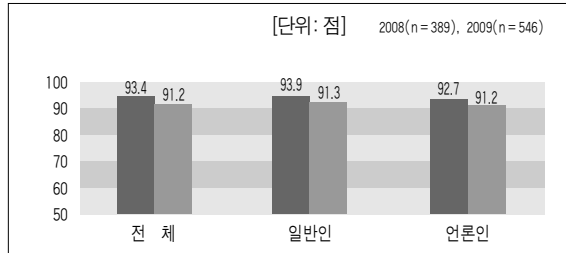
을 고려해 가중치(중요도)를 부여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91.2점으로 기 조사(93.4점) 대비 2.2점의 감소를 보임.

- 일반인 91.3점, 언론인 91.2점으로 일반인과 언론인 간의 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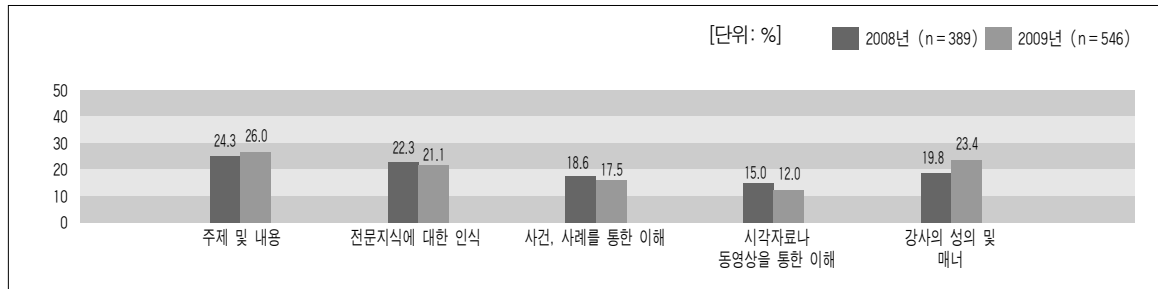
-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항목별 중요도는 교육의 주제 및 내용, 강사의 성의 및 매너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기조사 대비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시각자료나 동영상상을 통한 이해의 중요도는 다소 감소하였다는 결

과를 고려하여, 강의에 사용되는 시각자료의 질보다는 교육 내용 및 강사에 대한 만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



〈 교육수강자 항목별 중요도(가중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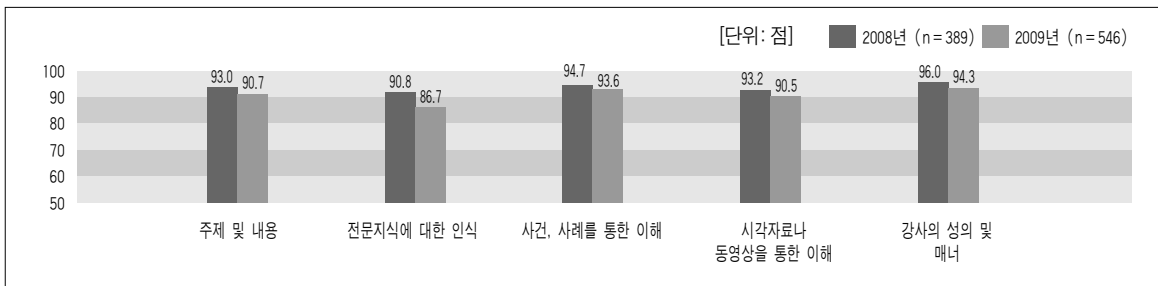
2) 항목별 만족도

- 교육수강자의 교육수강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강사의 성의 및 매너(94.3점) > 사건, 사례를 통한 이해(93.6점) > 주제 및 내용(90.7점) > 시각자료나 동영상상을 통한 이해(90.5점) > 전문 지식

에 대한 이해(86.7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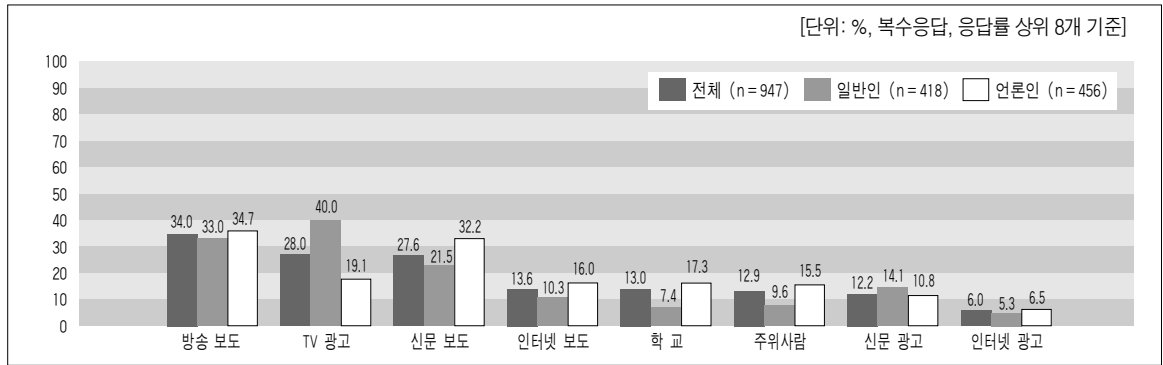
- 만족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기조사 대비 약간 낮아졌음. 특히 전문 지식에 대한 이해 및 사건, 사례를 통한 이해 항목의 만족도 수준이 기조사 대비 낮게 나타나, 향후 교육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항목의 만족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교육수강자 항목별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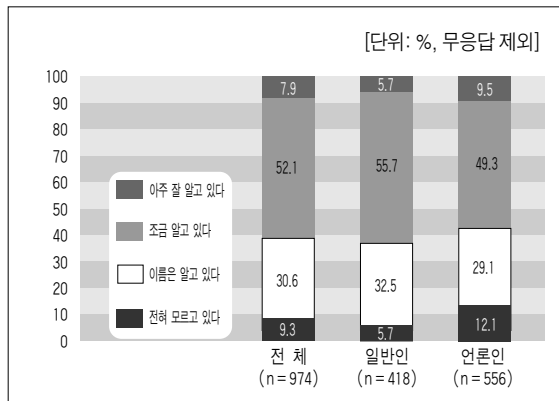


3) 교육수강자의 언론중재위원회 인지 및 인지경로

〈언론중재위원회 인지경로〉



〈언론중재위원회 인지여부〉



- 교육수강자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6%

는 인지하고 있으나, 그 중 7.9%만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이에 따라 인지 수준 향상 시키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봄.

- 일반인의 93.9%, 언론인의 87.9%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인지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5.7%, 언론인의 9.5%만이 잘 알고 있는 수준임.

- 교육수강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방송보도, TV광고, 신문보도 등 TV매체나 보도를 통하여 주로 인지하고 있어 향후 광고홍보활동을 위한 매체전략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본 언론의 자율규제 노력과 인터넷 언론 현황

- 일본의 인권피해구제시스템 및 실명(實名)주의,
인터넷 언론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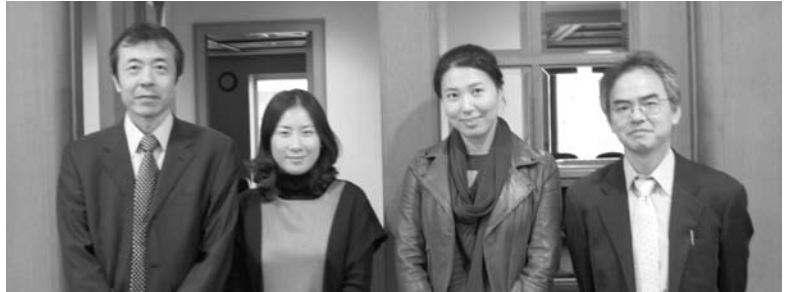
조사팀 이진아 / 기사심의팀 최은진

I. 들어가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이했다. 1981년 반론권으로부터 출발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중재’ 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신문 및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도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가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외 우수 언론사 및 유관기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병행해오며 시야를 넓혀왔지만, 유럽 및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보도문화 및 언론피해구제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올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단지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즉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그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부과한 데 반해,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의 인터넷 언론의 현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의 우수 언론사 및 유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일본 언론의 보도 문화와 각 언론사별 인권피해구제시스템을 파악하고, 언론 및 법학 전공 학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 언론의 문화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일본신문협회를 방문한 연수자들. 왼쪽부터 토미타 메구미 편집제작부장,
기사심의팀 최은진 씨, 조사팀 이진아 씨, 타카기 쓰요시 편집제작부 편집담당주관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는 언론사와 관련 기관 방문 및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언론의 인권피해구제시스템, 사건보도의 실명주의 원칙, 인터넷 언론 현황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II. 자정노력을 위한 길, 제3자 기관

일본은 유럽의 언론평의회나 우리 위원회처럼 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횡단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를 경험했던 역사가 있어, 언론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그만큼 ‘표현의 자유’를 다른 가치보다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법안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홍역을 치렀다. 이 법안의 골자는 5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관이라면 단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개인정보를 다룰 때 당사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물론, 언론계까지 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되자 이는 곧 법률

에 의한 언론통제라는 이유로 언론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언론계는 외부의 간섭을 막고 자정노력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제3자 기관’을 설치했다. 일본잡지협회 산하의 ‘잡지인권BOX’, NHK와 민간방송연맹이 출자해 설립한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 그리고 각 신문사 내부에 설치된 ‘제3자위원회’ 등이 그것으로, 모두 자율기관이다.

1) 각 신문사의 ‘제3자위원회’

국가가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취재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인 신문은 각 사 내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와인권위원회’, 마이니치신문의 ‘열린신문위원회’, 교도통신의 ‘독자와인권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며, 대부분이 국가에 의한 언론개입 논란이 제기된 2000년 이후 설치되었다.

〈일본 주요 신문사 · 통신사의 제3자위원회 현황〉

2009. 5. 9. 현재
(일본신문협회 제공)

언론사명	명 칭	설치시기	목적 · 심의대상 · 역할 · 운영	위원 구성	회의 개최
아사히신문 (朝日新聞)	보도와인권위원회 (報道と人權委員會)	2001. 1. 1.	- 보도에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문제가 발생한 경우 구제 도모 - 불만을 제기한 독자와 홍보실 사이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나 위원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경우회의 수시 개최 - 사장 직속의 전임 사무국장이 신청수리, 사전 조사, 심리진행 등을 담당	위 원 (3인, 임기 2년)	격 월
마이니치신문 (毎日新聞)	열린신문위원회 (開かれた新聞委員會)	2000. 10. 14.	- 보도에 의해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당사자의 고충 및 의견에 관한 내용과 본사 측의 대응을 위원들에게 제시 - 위원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보도를 검증 - 보도 관련 참고의견을 듣고 향후 보도에 반영 - 주필 직속의 전임 사무국장을 배치	위원 4인	연 3~4회
니혼게이지신문 (日本經濟新聞)	독자위원회 (讀者委員會)	2008.	- 지면전반에 관한 조언 등	3인 (명단 비공개)	연 2회
산케이신문 (産經新聞)	산케이신문보도검증위원회 (産經新聞報道檢正委員會)	2001. 7. 13.	- 보도 및 취재방법 적정성을 위해, 기사 및 취재에 관한 테마 및 보도 자세에 관해 조언 - 사장 직속 조직	사외위원 4인 사내위원 2인 등 총 6인	원칙적으로 연 2회
교도통신사 (共同通信社)	보도와독자위원회 (報道と讀者委員會)	2001. 6. 1.	- 독자의 의견이나 불만, 비판에 성의를 갖고 대응했는지, 취재나 보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독자에게 설명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보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진술 - 편집주간 직속의 기관으로 '보도와독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집국장을 위원장으로 둠	위원 3인, 임기 2년	원칙적으로 2개월에 1회
홋카이도신문 (北海道新聞)	독자와도신위원회 (讀者と道新委員會)	2001. 5. 1.	- 취재방식이나 기사 관련 독자의 고충 및 의견을 포함하여, 지나친 취재나 인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차별적인 표현 여부 등을 논의, 지면 관련 전반적인 의견 구함	사외위원 5인, 임기 1년	원칙적으로 연 3회
니시닛폰신문 (西日本新聞)	인권과보도 · 니시닛폰위원회 (人權と報道 · 西日本委員會)	2001. 5. 1.	- 보도 또는 취재에 의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인권문제가 발생한 경우, 심의 후 의견을 제시. 독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인권보도를 심화시키는 것을 지향 - 독자실에 제기된 고충 중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의견 제시 - 특별히 심의가 필요 없는 경우, 인권 관련 보도테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의견을 향후 신문제작에 반영	새로운 위원 인선 중	연 수회 개최. 긴급심의사안 발생 시 임시회의 개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2001년 1월 1일 ‘보도와 인권위원회(報道と人権委員会)’를 설치했다. 2009년 11월 현재, 법학 전공 대학교수, 변호사, 前 교도통신 논설부위원장 출신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임 위원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에서 검토한 후, 각 분야별 중량급 인사로 선발하고 있다. ‘보도와인권위원회는’ 제3자위원회 중 드물게, 인권침해 관련 불만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심리를 개최하기도 하며, 기사로 인한 피해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편집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자(독자 및 언론사 측 관계자)에 대한 청취조사를 실시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리가 개최되며, 당사자들을 참석시키되 동석시키지는 않은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거쳐 결론에 이른다. 이 때 인권문제와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면 ‘견해’ 결정을, 무관한 사안이라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견해’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정내용 및 결정이유 등을 신문에 기사화한다. 올해(2009년 11월 24일 현재)는 5건의 신청사건이 접수되어 ‘견해’ 2건, ‘각하’ 3건의 결정(2008년은 ‘견해’ 1건, ‘각하’ 2건)이 있었다. 신청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어 현재까지 편집국에서 위원회의 견해에 반대한 적은 없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2000년 10월 14일 일본 신문사들 중 최초로 ‘열린신문위원회(開かれた新聞委員会)’를 설치했다. ‘제3자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외부 시선에서 자사(自社) 보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되(현재는 학자, 변호사, 작가, 프리 저널리스트 등 5인으로 구성), 신문사가 선임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열리는 ‘월례회의’와 위원 및 신

문사 관계자들 간 ‘좌담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월례회의’는 지난달에 발생한 중대한 사안을 주제로 선정해, 해당 주제에 관한 자사(自社) 기사, 해당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불만, 그리고 독자 불만에 대한 신문사의 대응 등에 관한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우송하고, 각 위원들은 우송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정리한 의견을 신문사에 전달하면 신문사는 이를 신문사의 의견과 함께 ‘미디어’란에 보도한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각 위원들 간 의견교환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인권피해구제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자사 신문의 보도 자세, 내용의 타당성 및 일본 사회 전반의 문제 등 그 밖의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광범위한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회의인 ‘좌담회’는 ‘선거보도’ 또는 ‘일본의 재판원 제도’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주제를 선정해 자사 기사의 보도양태 및 제반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갖는다.

두 가지 회의에서 다루지는 주제는 신문사 사무국이 선정하며, 주제에 대해 위원들의 반론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독자들의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두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된 사건일수록 중요한 이슈인 경우가 많아 독자들의 관심사안과 크게 어긋난 주제가 선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교도통신(共同通信)은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01년 6월 1일 ‘보도와독자위원회(報道と讀者委員会)’를 설치했다. 위원들은 위원회 사무국에서 선발하고, 전직 미디어 종사자,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여성의 시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성 위원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회의는 보통 2개월에 한 번 개최되고 그 주제는 위원회 사무국에서 정한다. 회의 내용은 교도통신사와 가맹사들이 참여해 개설한 포털사이트인 <47NEWS(온



나나뉴스)>의 ‘보도와독자위원회’ 고정 코너에 게재한다.

한편 제3자위원회인 ‘보도와독자위원회’와 별도로 통신사 법무 부서에서 독자들의 불만을 접수, 인격권 침해를 당한 독자들에게 대해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금전 배상이 아닌 후속 보도를 통해 그 구제를 돕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보통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현재(2009년 11월 24일 기준) 교도통신사가 연루된 소송 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통신’이라는 매체 특성상 가맹 신문사가 독자 불만에 대한 1차적인 해결을 하고 있어 교도통신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건수는 여타 신문사들에 비해 적다고 한다.

규슈지역의 유력 일간지인 **니시닛폰신문(西日本新聞)**은 인권침해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에 제대로 대처하고 외부의 제3자위원회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2001년 5월 1일 ‘인권과보도·니시닛폰위원회(人權と報道・西日本委員会)’를 출범시켰다. 현재 위원은 인권 전문 변호사, 법학 전공 대학교수(주로 형법·범죄법 분야), 일본의 재판제도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여성 인사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상기 표는 2009. 5. 9. 현재 기준). 다른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위원은 신문사가 선발하되, 인권침해 사안이 주로 사건보도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형법에 정통한 전문가 중에서 선발한다고 한다.

회의는 1년에 2~3회 정도 열리지만, 1년에 1회밖에 개최되지 않을 때도 있다. 회의는 기사에 대한 항의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있을 때 열리며, 회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신문사 내부에서 선정한다. 회의 내용은 회의 후 2~3일 내에 특집기사로 상세하게 보도하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선의 취재 기자들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자세히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한편, 니시닛폰신문은 독자들의 의견 및 불만을 접수하는 별도의 ‘독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 의견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독자실에서 접수한 모든 의견을 매주 신문사 내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정리해 모든 부서에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주 편집국 간부 회의에서 논의를 갖고 신문 제작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홋카이도신문(北海道新聞)은 2001년 5월 1일 ‘독자와도신위원회(讀者と道新委員会)’를 설치하고 변호사, 기업경영자, 법률 교수 등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자나 법률 관련 전문가 가운데 5인을 선임해 매년 3~4회 정도 회의를 열

고 있다. 회의 주제는 자사(自社)가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회의결과는 회의 다음 날 특집 기사로 한 페이지 전면에 걸쳐 게재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각 위원들의 발언을 상세하게 싣는다. 또한 ‘독자와도신위원회’와 별도로 조직인 독자센터에서는 독자들의 불만이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발행부수 1,400만 부로 일본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기록하고있는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별도의 제3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대신 인권침해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일 지면을 심사하는 ‘신문감사위원회(新聞監査委員會)’를 두고 있다. 원래 독자상담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으나, 2005년 4월에 독자센터를 발족함에 따라 현재는 기사심사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신문감사위원회’는 신문사 사원 14명과 정년 퇴직한 사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일 이뤄지는 심사결과는 「기사심사일보(記事審査日報)」에 정리하여 주 2회 발행하고 있지만 외부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위원회의 역할은 규정상으로는 ‘신문지면의 객관성, 정확성 등의 심사를 수행하고, 지면내용의 충실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확성, 뉴스 가치판단, 내용의 과부족, 가독성, 인권 배려, 공정성, 다른 신문사와 겹치는 내용이 없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 인권침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지면 전반에 관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문감사위원회’와 별도로 독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5년 4월 ‘독자센터(讀者センター)’를 출범시켰다. 독자센터 소속 직원만 40명으로 하루에 500여 건 이상의 독자 의견이 접수되고 있으며, 모든 의견은 자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기록되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개한다. ‘신

문감사위원회’가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지면을 심사하는 것에 반해, 독자센터에서는 독자의 생생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어 취재부가 독자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일본신문협회 회원사 110개사 중 제3자위원회를 설치한 신문사는 40개사로, 지방의 군소 신문사를 제외한 중앙 일간지 및 각 지방 주요 일간지는 대부분 제3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적 기구이지만, 국가에 의한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위원들을 모두 신문사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선임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한 제3자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대부분 신문사가 선정한 주제이다 보니,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주제를 원천적으로 제외시킨 후에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독자들의 불만 사항에 관한 것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안이나, 특정 이슈에 관한 자사 보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의견교환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접적인 인권피해구제가 이뤄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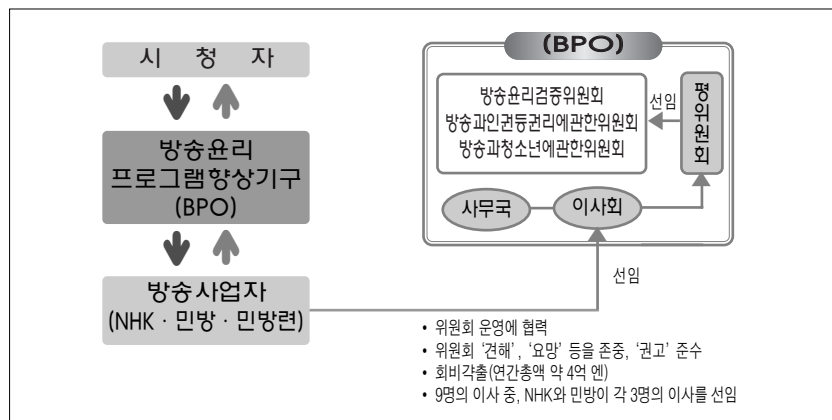
신문업계의 유일한 ‘횡단적 기구’인 일본신문협회가 ‘신문윤리강령’ 중 ‘인권의 존중’ 조항을 통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각 회원 신문사들로 하여금 이 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신문사 자체 가이드라인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협회가 개입할 권한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문사 및 협회는, 각 신문사내에 ‘기사(지면)심사위원회’를 두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사(各社)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문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횡단적 인권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신문 업계의 ‘횡단적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학

계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BPO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도쿄대학(東京大學) 대학원 정보학환(情報學環) 하시모토 요시아키(橋元 良明)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횡단적 기구’는 위험하다. 정치적 사안이라면 각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기 쉽고, 정치적 이슈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각 매체의 자율기관만으로 자정이 가능하다”며 각 매체의 자주·자율적인 노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열린신문위원회(開かれた新聞委員會)’가 설치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치대학(上智大學) 신문학과 타지마 야스히코(田島 泰彦) 교수는 “각 국가와 사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개별 신문사들이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어 ‘횡단적 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 보도태도 및 가치관 등에 있어 각 신문사별 개성이 워낙 강해 ‘횡단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각 신문사들 제3자위원회의 개별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각 신문사들의 제3자위원회 간 상호교류가 활발해진다면 ‘보도평의회’와 같은 기구 설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통일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2) NHK와 민간방송연맹의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BPO)」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roadcasting Ethics & Program Improvement Organization, 이하 'BPO')는 일본방송협회(이하 'NHK')와 사단법인 민간방송연맹(이하 '민방련')에 의해 설치된 방송계 자율설립 민간기구이다. BPO의 직접적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방송프로그램향상협의회'(방

송프로그램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운영, 1969년 5월 설치)와 ‘방송과인권등권리에관한위원회기구’(BRO, 방송과인권등권리에관한위원회(BRC) 운영, 1997년 7월 설치)이며, 2003년 7월 1일 이 두 단체가 통합하여 BPO가 출범했다.

(1) 방송윤리검증위원회

방송윤리검증위원회는 2007년 1월 간사이TV 정보쇼프로그램인 「발굴! 아루아루 대사전」의 데이터 날조사건¹⁾에 따른 정부의 방송규제 움직임에 대하여 설치된 것으로, BPO 산하 3개 위원회 중 가장 최근에 설치되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총무대신이 허위 방송을 한 방송사에 재발 방지계획 제출요구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NHK와 민간방송연맹(이하 민방련)은 2007년 5월 BPO 산하에 ‘방송윤리검증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송국이 정한 프로그램기준이나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방송 윤리상 문제가 있는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위원회가 방송윤리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토의’ 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 (의견 공표)를 통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한다.

허위·날조방송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리(‘견해’나 ‘권고’를 결정)를 진행한다. 2007년 위원회 설치 이후의 결정현황은 의견 5건, 견해 1건, 권고 1건이다.

최근 이뤄진 결정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위원회는 2008년 11월 방송된 니혼TV의 보도프로그램 「진상보도 반키샤」의 오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니혼TV는 기후현이 토목공사 발주 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특집보도 했으나, 건설회사임원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되어 2009년 3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정정방송을 내보냈으며, 사장은 사임했다. 위원회에서는 허위방송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심리에 들어갔으며, 최초로 변호사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히는 검증프로그램을 내보낼 것을 니혼TV 측에 권고하였다.

(2) 방송과인권등권리에관한위원회 (이하 ‘방송인권위원회’)

1993년 일본 사회에서는 TV아사히 보도국장의 정치적 공평발언 사건(츠바키 발언 사건)²⁾ 및 TBS의 사카모토 변호사 비디오테이프 사건(1995~1996년)³⁾ 등 방송에 관한 사회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1) 2007년 간사이TV 데이터 날조 사건은 후지TV 계열인 간사이TV의 정보쇼프로그램 「발굴! 아루아루 대사전2 (發掘! あるある大事典II)」에서 방송내용을 고의로 조작한 사건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실험 결과 일본의 전통 콩 발효 식품인 낫또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하였으나, 이후 주간 아사히 취재에 의해 실제로 실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국인 교수 인터뷰의 일본어 번역 부분을 날조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해당 방송국은 외부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 날조라고 지적받은 7항목에 대해 15분간 정정방송을 내보내고, 기타 8건에 대해서도 연출상의 문제 등을 공식 인정했다.

2) 1993년 츠카비 발언 사건은 산케이 신문에 TV 아사히 보도국장 츠바키 씨가 비공식 석상에서 ‘총선보도에서 비자민당 정권이 탄생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보도에서 TV아사히가 방송법상의 ‘정치적 공평’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 사태는 국회청문회에서 츠카비 씨가 사죄하고, TV아사히는 우정성으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3) 1996년 사카모토 변호사 비디오테이프 사건은 오오키타리교에 반대하던 사카모토 변호사의 인터뷰내용을 TBS 방송사 측이 오오키타리교 간부에게 보인 후 방영을 중지한 사건이다. 이후 사카모토 변호사 일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에 오오키타리교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결국 해당 방송국의 최고 간부 등이 국회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사죄하는 한편, 우정성에 의한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연수자들과 모토하시 하루키 BPO 사무국장(가운데)

방송규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 ‘방송과인권등권리에관한위원회(BRC)’가 1997년 설치되었다. 방송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인권위원회는 현재 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만신청인과 방송국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에 한해 심리를 개최하고, 심리 결과는 ‘견해’나 ‘권고’ 등의 형태로 공표한다. 참고로, 1998년부터 30개 보도사안과 관련 39개 방송사에 대해 ‘견해’ 32건, ‘권고’ 7건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의 심리대상은 인권침해·방송윤리위반 사안, 방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방송국에 이의제기한 후 협의가 불성립된 사안, 인권침해의 당사자 및 직접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사안 등이다. 광고나 방송 전반에 관한 불만,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등은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신청자 및 방송국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하며, 필요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다. 심리 결과는 위원회 결정(‘견해’ 및 ‘권고’)으로 정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해당 방송국에는 심리결과를 방송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위원회는 인권 일반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으며, 고충 당사자와 해당 방송국의 중간 입장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중개·알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개·알선·심리대상 관련 고충 접수건수(2008년 79건)는 인권 일반에 대한 고충 접수건수(2008년 1,289건)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며, 이 중 실제로 BPO의 알선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거나(2008년 3건) 및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실제 결정에 이르는 건수(2008년 4건) 또한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방송과청소년에관한위원회

(이하 ‘청소년위원회’)

2000년에 설치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심의하는 등, 청소년이 시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하는 위원회이며,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1997년 TV도쿄의 만화프로그램을 보던 다수의 어린이가 발작을 일으킨 ‘포켓몬 광감수성 발작사건’, 1998년 TV드라마를 모방하여 중학생이 교사를 살인한 ‘버터플라이나이프 살인사건’ 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

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청소년과방송에관한조사연구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2000년 4월 1일 프로그램 향상협의회 내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시청자 의견을 심의한 뒤, 심의결과는 ‘견해’로 공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방송국의 자주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시청자로부터 청소년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은 건수는 2008년 한 해 동안만 1,498건에 이르지만, 청소년위원회 설치이후 요망, 견해, 제언 등을 발표한 건수는 2000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를 비롯하여, 2008년 아동의 성기를 비추는 사안에 관한 주의환기 등 10건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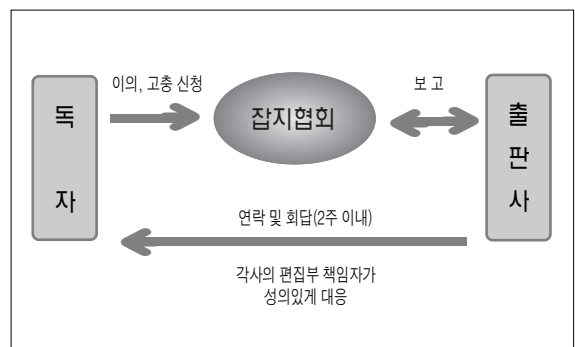
BPO 각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견해·권고에 대해 각 방송국이 내용을 수정하여 방송하거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PO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 기구임에도 가맹 방송국이 각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은 설립 당시 해당 위원회의 권한과 방송국의 협력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개별적인 합의서를 교환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의 자율규제조차 준수하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의 직접 규제를 피할 명분을 상실하고, 자발적으로 설립한 BPO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방송업계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송업계의 자발적 의지로 설립된 기구인 만큼 자율기구로서의 한계도 존재한다. BPO 모토하시 하루키(本橋 春紀) 사무국장은 BPO 설립 이후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평가를 내리기 어렵지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상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인권위원회의 4건의 결정 중 3건이 방송 윤리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즉, 방송윤리상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고 답

변했다. 또한 “BPO는 미국의 FCC처럼 제도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에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3) 일본잡지협회의 「잡지인권BOX」

일본 잡지 업계는 2002년 3월,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일반 개인의 인격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본잡지협회 산하 ‘편집윤리위원회’ 내부에 ‘잡지인권BOX’를 설립했다. 사무국은 우편과 ‘잡지인권BOX’ 전용 팩스를 통해 독자의 피해구제신청(잡지명, 제목, 내용,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등 기재)이 접수되면 해당 불만이 인권침해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된 문서를 해당 잡지사에 전달한다. 해당 잡지사는 그로부터 2주 안에 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잡지인권BOX’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잡지인권BOX’는 독자의 민원사항에 대해 특별히 조사 업무는 하지 않으며, 독자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체가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독자와 해당 매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잡지인권BOX 처리시스템〉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잡지 매체의 선정성 등에 따



연수자들과 카츠미 료스케
일본잡지협회 사무국장(앞 줄 가운데)

른 지적이 빈번하지만 정작 ‘잡지인권BOX’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2002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9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인권침해 관련 건수는 고작 7건에 불과한 실정이라 현재 ‘잡지인권BOX’는 인권침해 사안뿐만 아니라 독자의 모든 불만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 신청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일본잡지협회 관계자는 “잡지에서 다루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저명인사, 유명인 등 공인에 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건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잡지인권BOX’는 힘없는 일반 개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잡지사의 회신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신문업계가 횡단적 기구를 설치하려다가 실패한 것과 달리 잡지업계는 출판 미디어 중 유일하게 자율적 인권피해구제기관을 두고 있어 차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독자와 잡지 사이를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고, 중국적으로는 독자의 불만 사항을 해당 잡지사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할 만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인권피해구제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2002년 설립 이후 2009년 2월까지의 총 처리 건수가 97건에 지나지 않아 신청 건수가 미미한 실정인데다, 각 회원사에서 파견된 관계자가 잡지협회 산하의 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회원사 간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제3자 기구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III. 사건보도는 실명(實名)보도가 원칙

2009년 11월,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바로 영국인 교사의 사체를 유기하고 도주한 이치하시(市橋) 용의자 관련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안면 성형수술을 감행해가면서까지 2년 7개월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이 사건에 대해 일본 매스컴들은 그의 성형 전후 얼굴 사진을 주요 뉴스로 내보내며 사건 내용, 사건 이후 그의 행적에 관한 상세 사항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언론에서는 이치하시 용의자처럼 공개수배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사기 용의자, 폭행 사건 피의자, 살인사건의 피

해자 등도 실명과 함께 얼굴 사진을 비롯한 구체적인 신상이 그대로 보도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범죄 피의자를 비롯한 피해자 등에 관한 사건보도에 있어 실명(實名)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연쇄살인사건이나 공인·유명인 관련 사건의 경우에만 피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실명보도를 하고, 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일본의 경우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90%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실명주의 원칙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홋카이가쿠엔대학(北海學園大學) 법학부 한영학 교수는 “사건발생사실 확인 후 ‘피의자’라는 점을 명시해 실명을 함께 공표하면 ‘진실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 범행을 저지른 자의 신원을 불특정할 경우 언론사가 일어나지 않은 범죄사실을 가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비롯한 모든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피의자나 피해자에 관한 신상 역시 사건보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사건보도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추정무죄의 이념’이 있지만 해당 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의 확인만 있다면 피의자의 반론권 및 사생활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일본 내 판례 동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사건보도에 있어 피의자의 인격권보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보다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물론 사건보도에 대해 일본신문협회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신문사마다 자체적으로 익명보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사가 사건보도에 있어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소년법에 따라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

우, 향후 재판에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결될 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및 성폭력범죄사건 피해자, 매우 경미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익명보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자사(自社)가 발행한 「사건 취재와 보도(事件の取材と報道)」에서 실명주의 원칙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뉴스의 기본원칙으로서의 5W1H가 빠질 수 없다. 사회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자가 ‘누구’인가, 용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인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사건 보도 또한 매일매일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5W1H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충분한 기록이 되지 않는다.

▶ 실명보도는 사람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널리 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이나 지진 및 태풍과 같은 재해의 경우,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강한 관심사가 된다.

▶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잘못 처리하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것은 보도기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실명 보도를 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감시가 용이해진다. 실명보도를 통해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선다든지 반대로 범행을 입증할 목격자가 나선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1982년 「쓰여지는 입장, 쓰는 입장(書かれる立場, 書く立場)」을 처음 발행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기사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1989년부터 피의자의 실명 뒤에 ‘용의자’ 표기를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8년 「사건·사고취재보도지침(事件・事故取材報道指針)」(대외비)을 마련해 범죄사건의 경중 및 피의자의 신분 등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실명 및 익명보도의 기준을 정립하고, 피의자의 신원을 공표할 때 주소 공개 수준, 피의자에 대한 호칭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사 작성 시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실명보도원칙에 대해 일본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건보도의 실명주의가 ‘추정무죄의 이념’에 반하고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미디어학과 아사노 겐이치(淺野 健一) 교수는 “기소된 피고인 중 유죄 판결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체포된 용의자가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30%에 이르고 있어, 사건보도가 주로 체포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 대한 보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의 실명을 내보내면서 ‘용의자’라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해도 된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IV. 포털사이트에 대항하기 위한 기준 언론사들의 상호연대

일본 사회는 다른 매체보다 신문의 신뢰도가 막강하다. 이처럼 높은 신뢰도는 신문 구독으로 이어져 신문사 전체 수익 중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육박한다고 한다. 따라서 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면서 얻는 제반 수익이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존 매체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인터넷에만 기반을 둔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뿌리내리기에 척박한 환경이라 <오마이뉴스재팬>이나 <잔잔(JanJan)> 등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일본의 신문사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이하 “언론사닷컴”이라 한다), 그 양태가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닷컴’이 지면에 게재된 모든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함과 동시에 인터넷에만 기사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뉴스 서비스의 비중이 큰 반면, 일본의 경우는 철저히 ‘지면 중심’으로, 지

면에 게재된 기사 중 해설 기사를 제외한 스트레이트 기사만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특집 기사나 특종 기사는 경쟁사를 의식해 신문 배달이 완료될 시점에 임박해서야 웹에 게재하는 신문사가 많고, 자사 홈페이지인데도 기사 전문을 게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인터넷을 지면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일본 역시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기존 언론사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타개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털사이트는 <야후>로, 수많은 언론사들과 기사제휴계약을 맺고 다양한 기사를 매개하고 있다. 아직까지 신문업계의 광고 수익 감소가 인터넷 언론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된 적은 없지만, 젊은 독자들이 점차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기존 언론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점은 일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들이 상호 연대하여 그들만의 자체 포털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다.

판매부수, 정치 성향 등의 측면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던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니혼게이지아신문(日本經濟新聞),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등 3개사는 2008년 1월 31일부터 공동 뉴스 포털사이트인 <新's(아라타니스)>서비스를 시작했다. 세 신문사의 1면 및 사회면의 뉴스 기사, 사설, 칼럼 등의 표제나 본문 일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시에 게재하고 있어 각 신문사의 논조를 비교하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는 기사 전문을 게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각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스 안내인' 코너를

신설해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 저명인사의 칼럼을 게재하는 등 인터넷 유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지아신문이 야후에 대한 기사제공을 중지한 데 반해, 요미우리신문은 기사 글자 수를 200자로 축약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新's> 서비스 개시에도 불구하고 <야후>에 대한 기사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요미우리신문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3사의 기사를 열람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에서 <新's>를 출범시켰지만 아직까지 실험적 단계이고, 현실적으로 야후를 통한 열람자가 많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교도통신(共同通信)도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에 대항함과 동시에 교도통신과 각 가맹사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본 47도 도부현에 있는 지역일간지 53개 가맹사와 함께 2008년 1월부터 종합 신문사이트인 <47NEWS(은나나뉴스)>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문 편집자가 각 지방지 사이트를 방문해 기사를 선별·게재하고 있으며, <新's>와 마찬가지로 요약된 형태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어 전문을 읽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연결돼 있다. <47NEWS> 출범 이후의 변화에 대해, 가맹사인 니시닛폰신문(西日本新聞)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페이지뷰(P/V)가 증가해, 인터넷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수익이 크게 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포털사이트 대항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포털사이트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이 야심차게 자체 포털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성과는 아직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나고야대학(名古屋大



교도통신과 지역일간지 53개 가맹사가 함께 운영 중인 종합신문사이트 <47NEWS>

學) 김상미 교수는 “인터넷 유저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비교해서 읽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 따라서 <新>s>와 <47NEWS>의 접근 방식이 빗나간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야후>의 경우 전직 미디어 종사자 10인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 메인 페이지에 제공하는 ‘토픽스(トピックス)’ 섹션이 성공적으로 서

비스되고 있고, 중앙뉴스뿐만 아니라 지역

뉴스도 충실히 전달하고 있어 당분간 포털사이트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V. 마치며

일본 언론은 태평양 전쟁 당시 국가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때문에 국가에 의한 언론 개입 논의가 부상할 때마다 극렬히 반발해왔고, 국가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신문 및 잡지, 방송 등 각 매체들은 ‘제3자위원회’ 및 ‘잡지 인권BOX’, ‘BPO’ 등을 설치해 언론사 내부의 자율규제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이곤 했다.

또한 사건보도 시 경찰이 제공한 신원정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해 실명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과, 포털사이트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언론사들이 연대하여 자체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면 기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는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바로 ‘다름’이었다. 자율기구에 의한 자발적 규제 또는 외부기구에 의한 타율적 규제, 사건보도 시의 실명보도 또는 익명보도, 기존 언론사의 포털 사이트와의 견제 또는 협조, 오프라인 중심의 언론 문화 또는 온라인 중심

의 언론 문화, 이 중 그 어떤 것도 정답일 수 없고 상호 간의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연수기간동안 각 언론사 및 방문기관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대학원 수업에도 참여하는 등 일본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우리 위원회를 알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뒀다. 또한 방문기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도 우리의 인권

피해구제제도 및 인터넷 언론 현황 등이 우월하다는 인상을 풍기지 않고, 각국의 제도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번 연수가 양국의 언론 문화와 제도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너는 부모도 없느냐” 정도의 표현은 모욕죄 아니다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발언은 상당한 요구에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상대방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연립주택의 건물주로 “욕실 수도를 계속 틀어 놓아 수도요금 많이 나왔다”며 세입자인 원고 집 안의 계량기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원고에게 “야 꼴통 X X야,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네 방에서 내쫓고 말거다”라고 욕설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기재된 욕설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모욕죄에 관한 기준을 설명하면서 “‘너는 부모도 없느냐’ 정도의 표현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KISO,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할 수 없는 국가기관 범위 확정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는 10월 23일 인터넷 게시물 관련 삭제 요청을 신청할 수 없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확정 발표했다.

KISO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권의 주체라기보다는 몸소 모범을 보이는 기관이라는 것이 관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립되어 있다”며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없는 기관들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KISO는 삭제 요청 제외 대상 국가기관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른 광역, 기초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함), 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 동, 리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정했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기관장이나 구성원이 개인 자격으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KISO는 지난 6월 29일 정부기관이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임시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게시물 삭제 요청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블라인드(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30일이다.

KISO는 지난 3월 3일 NHN, 다음, 야후, SK커뮤니케이션즈,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국내 주요 7개 포털사들이 모여 결성한 자율규제정책기구다.

“공공장소 집회 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 침해 아니다”

언론사가 공공장소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 참가자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도했다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오 모 씨가 기독교 인터넷 신문 ‘뉴스엔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촬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왜곡보도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 오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 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결부된 기사가 부정적인 인상

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도의 한계를 두었다.

오 씨는 뉴스엔조이가 자신이 이단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시위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술자리 거짓말’ 유죄 인정, 법원 벌금형 선고

술자리에서 한 거짓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부는 술자리에서 대학 후배 A 씨(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후배들에게 “나와 예전에

사귀 A는 지금 다른 남자와 사귀다”고 거짓말을 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2006년 4월 A 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A 씨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6월 동부지법에서 열린 원심은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윤 씨의 대화는

단순한 잡담에 불과하고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임을 알면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특정 종교와 국적의 외국인 혐오’ 모욕죄 인정

법원이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인종차별적 내용의 발언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부는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

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술에 취한 박 씨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을 준 혐의로만 기소해 이를 판단했을 뿐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욕죄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일 뿐 일반 모욕죄 기소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판단이 인종차별 발언을 모욕죄로 인정한 사례

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버스에서 영어로 한국인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던 ○○○ 후세인 성공회대 교수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난다” 등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 약식 기소란 피의자의 혐의가 크지 않을 때 검사가 기소는 하되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에의동향

실종 어린이 부모, 실종사건에 부모 연관설 주장한 사이트 폐쇄 요구

2007년 포르투갈에서 실종된 영국 어린이 Madeleine McCann의 변호인이 'Madeleine은 이미 사망했으며, 그녀의 부모가 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Madeleine의 부모 Kate와 Gerry McCann은 런던의 로펌 'Carter-Ruck'을 통해 Madeleine의 실종이 자신들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해 온 MadeleineFoundation.org라는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McCann 가족의 대변인 Clarence Mitchell은 "Kate와 Gerry는 그 동안의 자신

의 자녀 실종과 관련한 Madeleine Foundation의 논평과 행동들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로펌과 변호사들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현재 McCann 측은 소송을 위해 Madeleine Foundation에 현재까지 발행한 책자와 광고 전단지뿐 아니라,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Madeleine은 실종 당시 4세였으며, 그녀의 가족이 임대한 Praia da Luz의 휴가용 아파트에서 2007년 5월 그녀의 부모가 친구들과 아파트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사라졌다.

이와 관련하여 「Express Newspapers」는 지난해 3월 Madeleine의 실종과 죽음이 그녀의 부모인 Kate와 Gerry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해 550,000 유로를 배상한 바 있다.

한편 2008년 7월에는 네 개의 신문사가 포르투갈 경찰에 의해 Madeleine의 실종 관련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Robert Murat에 대한 보도를 하여 결국 그와 수십만 유로에 달하는 명예훼손 관련 배상합의를 하기도 했다.

(Press Gazette 2009년 9월 23일자)

통신사의 기사를 게재한 지방신문 기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쿄여자의과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여자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다룬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담당의사가 共同(교도)통신사와 통신사의 기사를 받아 게재한 「秋田魁」, 「上毛」, 「静岡」 등 3개 지방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고등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기사의 진실상당성을 인정, 교도통신의 배상책임은 부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신문이 게재한 통신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지방신문들이 교도통신사가 필요한 취재활동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믿을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3개 지방신문사가 게재한 기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7년 9월 도쿄지방법원은 교

도통신의 전송기사에 대해서는 진실상당성을 인정했으나, 지방지가 받아 쓴 기사는 "통신사의 기사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사 게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3개 지방 신문에 모두 385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기사는 교도통신이 2002년 7월 '최악의 사태, 왜?' 제하로 전송한 기사로 1, 2심 재판부는 모두 기사는 진실이 아니나, 교도통신이 수사본부 등을 직접 취재하는 충분한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진실상당성을 인정, 교도통신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가 '독립된 책임주체'로 규정한 지방지와 교도통신과의 관계에 대해 "지방지는 교도통신의

운영자금을 부담하면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고, 교도통신은 국내외에서 취재한 기사를 지방지의 신문제작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상호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교도통신이 기사의 확인체계 등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방지는 교도통신이 취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 3개 지방지의 명예훼손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신사를 한 쪽의 핵(核)으로 하는 보도시스템은 국민에게 널리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유용하며, 지방지의 존립기반이기도 하다"며 "정보 전달매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전 담당의사 측은 지난 8월 7일 상고했다.

(新聞協會報, 2009년 8월 11일자)

미국 언론사들 영국에서의 명예훼손 소송 위험을 이유로 사업 철수 의견 영국하원에 보내

악명 높은 영국의 명예훼손법으로 인해 미국의 신문사와 잡지사들이 영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Boston Globe」, 「New York Times」, 「Los Angeles Times」 등을 포함한 미국의 신문사들은 영국 하원의 미디어 선정 위원회에 문서를 보내 영국 내에서의 명예훼손 소송 위험 때문에 사업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Sunday Times」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미국의 유력 신문들이 영국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출판물에 대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은 “미국 신문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이익을 위해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수백만 달러 명예훼손 소송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또 신문은 “그들이 영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요 미국 신문이 출판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 시대에 맞게 영국의 명예훼손법을 개정하기 위한 심의 중에 있으며, 12월 6일 종료하게 되어 있는 심의 회의는 인터넷에서 기사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새로운 출판으로 보는 현재의 명예훼손법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국의 명예훼손법을 공법 위하게 개혁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현재 ‘승소 조건부 비용지급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영국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언론사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어 명예훼손 소송을 위한 최고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반대로 언론사에게는 명예훼손 방어를 위한 진실 입증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게 지워지고 있다.

「Press Gazette」가 주최한 작년 ‘미디어 법 회의’에서는 언론사가 주요 명예훼손 소송 방어에 쓴 비용이 240만 파운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을 찾고 있으며, 현재의 법률 하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단지 영국의 독자들의 자신 관련 기사를 다운로드 하고 있거나 영국에서 그 내용이 출판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Press Gazette 2009년 11월 9일자)

英 온라인 명예훼손법 개정, 언론에 희소식 될 것

온라인 명예훼손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언론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정부는 인터넷 기사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 시효기간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인터넷 기사는 다운로드 될 때마다 하나의 새로운 출판물로 보게 되어 있어 1년으로 되어 있는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일반적 시효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 전문 변호사 Jaron Lewis는 “현행법은 인터넷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단일출판규정(이에 따르면 매 다운로드 시가 아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이 적용되게 된다.)’이 이미 도입되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전문변호사 Caroline Kean도 “현행법은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에 맞

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므로, 일련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제안한 개정법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Kean 변호사는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기사 소스도 남아 있지 않고, 취재원도 찾을 수 없어 수년 전 쓴 기사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갑자기 해당 기사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라며 “현행법 체제 하에서는 기사를 작성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법적 방어를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한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시효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당해 기사가 보도된 시점이 아니라,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그 기사가 보도된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Russell Jones and Walker’의 미디어 및 명예훼손 부문 책임자 Sarah Webb은 “인터넷의 특성상 자료가 반영구적으로 온라인상에 남는다는 점과 무한대로 반복 다운로드(즉, 출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소멸시효는 적정 수준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전문변호사 Lewis도 “인터넷 상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현실적으로 해당 기사가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시효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기사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새로운 출판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은 1849년 Brunswick의 한 공작이 18년 전 영국 신문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사실을 안 뒤, 자신의 하인을 대영박물관으로 보내 그 기사를 찾게 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에서 기원한다.

명예훼손 및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인 David Hooper는 "19세기 중반 몇몇의 사건을 바탕으로 인터넷 관련 법을 제정한 것 자체가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며, 진짜 문제는 수십 년 전 과거의 일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기사에 대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도와 관련하여 시간이 흐른 후 정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 기사나 출판물에 내용을 추가하여 후대 사람들이 양 측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으로부터 벗어나는 합리적인 균형점"이라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9년 9월 21일자)

영국 정부, 언론의 자유 위축되지 않도록 명예훼손 소송비용 제도 개선안 마련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막대한 명예훼손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소 조건부 비용지급 규정(불승소 무비용 원칙)'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는 수천 달러에 불과한 경우라도, 언론사는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해 왔다. 이로 인해 언론사들은 막대한 소송비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송 이전에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언론사가 지불해야 하는 명예훼손 소송비용 제한을 위한 세 가지 개선점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 청구에 대한 조기 통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소송 제기자가 패소에 대비해 납입한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즉시 언론사에 통지해야 한다. 현재 언론사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의 지속 기간에 따라 보험료는 2,000 파운드에서 50,000 파운드에 이른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언론사가 상대방이 보험에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자의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언론사는 보험료 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을 경우 42일간의 조정 기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 언론사가 소송 제기인과 합의할 경우에는 언론사는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소송비용에 대한 항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 소송비용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제도의 운영으로 소송비용이 불합리하게 증액되는 것이 방지될 것으로 보이며, 소송비용은 차후 법적 절차에도 참고자료로 사용되게 된다.

법무부의 새로운 조치들이 '승소 조건부 비용지급 규정'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소송 제기자 측 변호사가 패소한 언론사에 두 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성공사례금제도이다.

법무부 장관 Jack Straw는 9월 24일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진실을 추적하는 보도는 민주주의 가치의 근간에 해당하며, 정부는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성공사례금을 제한하는 제도에 관한 논의 결과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불필요하게 높게 산정된 소송

비용이 명예훼손 소송의 당연한 특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패소한 언론사가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포기하고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한 성공사례금과 보험금 제도는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 "소송 제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방어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사실을 통지받고 소송 제기자의 보험금 납입 의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고자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기초적인 단계로 앞으로도 비용 관련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적극적으로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ss Gazette'는 '승소 조건부 비용지급 규정'으로 인한 언론사의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이 언론의 자유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다.

(Press Gazette 2009년 9월 24일자)

도쿄고법, 사회적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한 표지나 광고 표제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되지 않는다

도쿄고등법원은 キヤノン(캐논)과 동사의 御手洗富士夫 회장이「週刊現代」(슈칸겐다이)의 발행사인 講談社(고오단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사와 표지 및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 2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캐논과 御手洗富士夫 회장은「週刊現代」가 기사와 표지 및 광고를 통해 회사와 자신이 구 일본군의 731부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

가 훼손되었다며 2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週刊現代」 2007년 10월호의 「캐논 御手洗 회장과 731부대」제하 표지 및 신문광고이며, 재판부는 표지 및 광고의 표제에 대하여 “사회적인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한 생략이나 과장은 인정된다”며 “御手洗 회장과 부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문언(文言)으로 되어있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했다.

1심 판결은 표지 및 광고의 표제에 생략이나 과장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근거 없이 원고와 부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암시하였고, 이는 사회적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1심, 2심 모두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캐논 측은 지난 7월 29일 상고했다.

(新聞協會報, 2009년 8월 11일자)

직접취재 및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없다

건강기구 「ロデオボ-イⅡ」(로데오보이Ⅱ)를 소개한 통신판매 프로그램 내용이 날조라고 보도한 「週刊現代」(슈칸겐다이)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TV朝日(아사히)가 講談社(고오단샤)와 집필자 등을 상대로 1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8월 28일 명예훼손을 인정, 330만 엔의 지

불을 명했다. 講談社 측은 지난 9월 8일 항소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2007년 7월 14일 호부터 3회에 걸쳐 게재된 ‘激ヤセ捏造’ (급감량 날조)라는 제하의 내용이며, 이 가운데 2회는 전 TV朝日 사원이 제작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출연자는 바람잡이로 1kg 감량되면 1만

엔을 받는 계약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술했다.

재판부는 전 TV朝日 사원이 프로그램의 출연자에게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週刊現代」의 편집부도 독자적인 확인취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新聞協會報, 2009년 9월 15일자)

‘보도실현권’ 2심에서도 청구 기각

취재, 집필한 원고가 게재되지 않아 기자의 권리가 부정되었다고 전 朝日(아사히) 신문 기자 吉竹幸則 씨가 朝日신문사를 상대로 사죄 기사 게재와 위자료 3,000만 엔의 지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나고야고등법원은 지난 9월 2일 “기자에게는 원고를 게재하도록 신문사에 요구할 권리는 없다”며

1심 (언론중재 2009년 가을호 96쪽 참조)과 동일하게 청구를 기각했다.

요시다케 씨는 신문이 자신이 쓴 원고를 게재하지 않자 ‘보도실현권’(報道實現權)이 침해되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신문사는 일정한 수준에 있는 원고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며 제소했다.

재판부는 “편집권은 신문사의 경영, 편집 관리자에게 있으며 기자의 원고나 취재결과는 소재(素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각사의 편집방침에 따른 신문보도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고 있다”고 판시, 보도실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新聞協會報, 2009년 9월 29일자)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햇고구마를 시식하고 있는 모습을 선정적으로 표현한 보도사진 관련 조정신청 (기사제공언론사 - 합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 - 취하)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8~32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채 ○ ○ 외 1인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다음,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파란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소비자가만드는신문),
취하(다음,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파란)

백화점 직원인 채 모 씨 등은 홍보를 위해 햇고구마를 시식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피신청인 언론사가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포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언론사와 포털사가 해당 사진을 게재하면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제작상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에 응하기로 했고, 다음 등 포털사들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당일 바로 기사검색을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며 신청인에게 취하를 요청했다.

중재부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신속히 기사를 삭제하고 포털사에 기사검색 차단을 요청한 사실을 감안하여 4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수용해 기사제공언론사와는 4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포털사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이 사건은 포털사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신청 사건으로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기사를 제공하고 포털사들이 뉴스서비스를 한 것이다. 지면관계상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건내역만 수록한다.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포경”과 수술한 “물건” 미녀들이 손에 쥐고 물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1일자 종합뉴스면)

내 용 : <사진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9년 9월 4일까지 각 2백만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각 2,000,000원 지급〉

해수욕장에서 호객 아르바이트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방송한 보도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 취하)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2.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 박 모 씨는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호객 아르바이트 중인 자신의 모습이 방송되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2009년 7월 20일 KBS-2TV 「무한지대」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피서 일번지 - 해운대 속으로 GO GO' 편에서 신청인이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호객하는 장면을 동의도 없이 음성과 함께 방영하였다.

보도내용

KBS-2TV : 「무한지대」 프로그램 『대한민국 피서 1번지 - 해운대 속으로 Go Go』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20일 19:10)

내 용 : (전략)

신청인 : 백사장에 모래 다~뒹아 놓았습니다.

내레이션 : 피서객 끌기 위한 파라솔맨들의 치열한 백사장 자리 전쟁이 시작됐고, 짐 들어주기 애교작전은 기본이요 자기 구역 물관리를 위한 특별 서비스까지.

신청인 : 동방신기도 있고 켉스키스도 있어요. 동방신기나 켉스키스 멤버들이랑 비슷한 피서객들 근처에 앉히려구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포털 자체 제작 콘텐츠에 대한 조정신청 (각하결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3

청구명 : 반론 · 손해청구

신청인 : 변희재

피신청인 : 야후코리아

중재부 : 서울제6중재부

접수일 : 2009. 9. 23.

처리결과 : 각하결정

신청인 변희재 씨는 야후코리아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인 「송지현의 사람 IN」코너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인터뷰 동영상이 게재되었다며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담당 중재부는 포털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는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중재부는 이 사건의 조정대상은 언론의 보도나 기사가 아닌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터뷰 동영상이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 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보도내용

내 용 : (전 략)

송지현 : 섭외과정도 이야기해도 되나요?

진중권 : 섭외과정이에요?

송 : 저희가 변희재 씨와 마주앉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진 : 예, 제가 그 친구하고 같이 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송 : 같이 앉을 사람이 있고 같이 못 앉을 사람이 있고 그러십니까?

진 :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논쟁이지만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저에 대해 스토킹을 거의 하다 싶고, 예를 들어 허경영 씨와 박근혜 씨 같이 나오라 하면 박근혜 씨가 거부하겠지요 당연히, 그 정도의 권리는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송 : 사안 하나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중략)

송 : 진 전 교수 임용 자체가 노무현 정권의 특혜였다는 지적도 올라와 있는데요

진 : 그건 뭐 변모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명예훼손 감이거든요.

송 : 임용 당시 진 전 교수 인사를 주도한 현재 김○○ 독문과 학과장인가요? 열린우리당 시절 실세 정치인 김한길 씨의 친동생이라는 근거를 대고...

진 : 저는 김○○ 씨라는 분을 전혀 몰랐구요 그 당시 독문과에서 다른 분, 나이 드신 분이 있었는데, 학과장일 겁니다. 그 분과 독문과 교수들과 토론을 했는데,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중략)

진 : 저는 87년 이후 단 한 표도 민주당한테 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살아생전에 강하게 비판했고, 아마 변희재 씨도 그것 때문에 저와 첫 인연을 맺었고, 내가 김대중 정권 옹호하는 사람들 비판했고 그쪽 편에서 서서 저와 싸운 것으로 이름을 알린 것으로 알려져있구요. (중략)

송 : 변희재 대표에게 망언으로 유명세를 타려 한다고 비판하셨는데요. 그건 진중권 씨 한테도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

진 :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나 (중략)

송 : 진 전교수가 확실한건 변 대표에게 변 대표는 망언을 해야 유명세를 탈 수 있다 비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야후코리아는 지난 8월 20일 야후 Live 독점 방송 송지현의 사람IN에서 진중권 씨를 초청하여 1시간 분의 방송분을 내보냈으나,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이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되어 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반론문을 게재합니다.

첫째, 야후코리아의 송지현 사회자는 변희재 씨와 공동 출연을 거부한 이유를 묻자 진중권 씨는 “내가 그 친구하고 같이 았을 이유가 없다”며 “예를 들어 허경영 씨하고 박근혜 씨 하고 같이 나온다고 하면 박근혜 씨가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변희재 씨를 스토킨으로 비유하며 명예훼손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야후코리아 측은 변희재 씨에게 출연요청을 하지 않았고, 변희재 씨는 그 이후에 “진중권 씨와 나는 법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로서 애초에 공동출연하는 것은 부적합한 관계”라 주장했습니다. 야후코리아는 당사자에 요청도 하지 않은 채, 그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성 발언을 유도한 데 대해 변희재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중략)

이외에도 야후코리아의 1시간 가량의 인터뷰는 절반 이상이 변희재 씨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채워져있기에, 야후코리아는 변희재 씨가 보내온 반론문을 게재하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결정문

사 건 : 2009서울조정413

청 구 명 : 반론 · 손해청구

신 청 인 : 변 희 재

피신청인 : 야후코리아 유한회사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1. 야후코리아 독점 Live 방송 시작 전에 사회자 송지현 씨의 멘트로 [별지1]의 반론문을 읽도록 하고, 야후코리아 뉴스면 메인화면에 위 반론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송지현의 사람IN」 코너에 게재된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 동영상 중 일부 신청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언급되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별지 1]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영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우선 피신청인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의미하고(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의미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 우선 피신청인이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 중에서 독자적 기사생산을 위하여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며,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위와 같은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라 함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하고(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등은 제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 함은 위와 같은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조 제20호 및 제2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중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등이 있다.

이 사건 심리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인터넷 관련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독자적 기사생산을 위하여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한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거나 주간 게재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신청인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콘텐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조정 신청 대상은 언론의 보도나 기사가 아니라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터뷰 영상이라는 점에서 관계규정에 대한 해석상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반론보도 등의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포털이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등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신청인 주장과 같이 포털이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포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로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이나 중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대한 필요성만으로는 언론중재법의 관계조항을 신청인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조항에서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기사제공 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역할이 언론보도의 제공 또는 매개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언론중재법 등 관계규정에 정해진 반론보도 등의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009. 10. 29.

〈별 지1〉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성형수술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 (기사제공언론사 - 반론보도 조정성립, 인터넷뉴스서비스사 - 취하)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7~442

청 구 명 : 각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회장 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동아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수일자 : 2009. 10. 5.

처리결과 : 조정성립(동아일보),
취 하(동아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야후)

신청인 대한미용외과학회는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와 구글 등 포털에 대해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심리결과, 동아일보는 신청인의 반론보도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구글 등 포털사는 원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여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Health Town면)

내 용 : 지난달 3일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심층 보도가 방송됐다.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자신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병원 간판을 달거나 과대, 과장광고로 환자를 현혹시키는 실태를 고발한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대한개원의협회에 따르면 현재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병의원은 서울에만 839곳(전문의와 비전문의가 포함된 수치)이다. 병원마다 최첨단 기계와 의약품을 구비하고, 지하철, 버스, 잡지, 포털 사이트에 병원 시설과 수술 수준을 자랑하는 광고를 한다. 그러나 어떤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는가에 따라 수술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자칫 1mm 오차로 ‘ 째눈 ’이 되거나 ‘ 돼지 코 ’가 될 수도 있는 것.(중략)

[21년 경력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본 성형이란?]

① 미인은 정해져있다?

미인, 미남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목구비의 모양만으로 따질 수도 없고 개인적인 취향과 이상형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박양수 원장은 미의 잣대를 ‘얼굴형, 이목구비 등의 비례와 간격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를 꼽았다. 또 “얼굴 크기가 작고 선이 부드러우며 피부가 얇을수록 수술 후 미인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② 성형수술은 모든 의사가 할 수 있는 수술일까?

일반인들은 심장수술, 척추수술, 암 수술 등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수술은 반드시 전문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형수술은 ‘이왕이면 전문의에게’라고 할 정도로 전문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국내에서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3개 과목을 선택해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성형수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4년 동안 성형외과에서 전문적으로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의를 비교하면 수술 결과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가급적 성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할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제 목 : 대한미용외과학회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4일자 Health Town 6면에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라는 제목으로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외과학회에서는 미용수술 분야는 성형외과 고유 영역이 아니며, 성형외과 비전문의라고 해서 미용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성형외과 전문의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전문의보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밝혀왔습니다.

나. 내 용 : 지난 9월 14일자 Health Town 6면에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이라

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성형외과 원장의 말을 인용,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외과학회는 “미용수술 분야는 성형외과 고유 영역이 아니며, 성형외과 비전문의라고 해서 미용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성형외과 전문의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전문의보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9년 10월 19일자 <동아일보> Health Town면 우측 상단에 위 보도문을 박스 형태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활자(‘병원 광고와 연예인 사진에 현혹되지 말아야...’)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9일자 Health Town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비평보도 관련 조정신청 (기각결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9, 470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

피신청인 : 동아일보,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1.

처리결과 : 각 기각결정

신청인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반(反)정부·반(反)헌법적인 전교조의 틀러리나 다름없는 활동을 해왔다는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의 보도에 대해 신청인의 활동은 모두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는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의견표명으로서,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 「이상한 ‘참교육’」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5일자 30면 「황실수설」란)

내 용 : (전 략)

▷어떤 교육이 참교육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철학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나 교육당국, 정부의 교육방침 및 정책에 무조건 반대,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인간형을 만드는 게 참교육일 수도 없다. ‘참학’은 전교조의 反(반)정부 노선 및 친북(親北)좌파라는 反(반)헌법적 행태를 지지하고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다. (중략)

▷‘참학’은 이제 전교조의 단골 투쟁 메뉴였던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를 직접 떠맡겠다고 나섰다. 이달 13, 1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집단 체험학습을 떠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문화예술제 형태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상당수 교사가 중징계를 당하자 대응책으로 ‘참학’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 단체가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는 건 결코 참교육이 아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결 정 문

사 건 : 2009서울조정469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자 회장 장○○

피신청인 : (주)동아일보사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년 10월 5일자 「이상한 ‘참교육’」 제하의 보도에서 참학이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으며,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회의 활동이 주체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전교조의 들러리’라고 폄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뤄졌음에도 참학이 전면에서 나서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었다고 폄하하여 신청인회와 소속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등

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피해자’라 함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가치평가적 인식의 표현인 의견, 감정, 논설, 비평 등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활동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나 비평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해당 보도내용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상 사실적 주장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에,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9.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루저발언’에 대한 조정신청 (기각결정 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1.

처리결과 : 기각결정

신청인 260명은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에서 “키 작은 남성은 루저라고 생각한다”라는 출연자의 발언이 방송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각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사건을 서울의 7개 중재부에 배당하여 심리한 결과, 서울제7중재부 등은 문제의 발언이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 아닌 방송 출연자의 개인적인 취향 내지는 의견을 방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고, 서울제6중재부에서는 심리를 열었는데, 피신청인이 사과방송 등을 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다.

유 모 씨 등 총 260명의 남성들은 2009년 11월 9일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미녀, 여대생을 만나다’ 편에서 “키 작은 남성은 루저라고 생각한다”라는 출연자의 발언이 방송되자, 키 작은 남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녹화방송임에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방영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저 2,500원부터 최고 38억2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지면관계상 기각된 사건과 조정성립된 사건 각 한 건씩을 수록한다.

보도내용

KBS-2TV :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미녀, 여대생을 만나다』편 (2009년 11월 9일 23:15)

내 용 : (전략)

출연자 : 저 같은 경우도 일단 키 작은 남자는 싫어요.

MC : 왜?

출연자 : 요즘 키 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외모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에서 키는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MC : 어허...

출연자 : 그래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MC :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키는... 이 정도 이상 돼야 한다?

출연자 : 제가 일단 키가 170cm다 보니까 최소한 180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C : 남자 키가 180cm가 돼야 된다?

패널 : 여기엔 없네요, 지금.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정문

사 건 : 2009서울조정51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유○○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

주 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들의 주장 요지

신청인들은 키가 180cm 이하인 남성들인데, 2009년 11월 9일 방영된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미녀, 여대생을 만나다’ 편에서 특정 출연자가 키 작은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고 생각합니다”)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편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각 구한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

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 즉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관한 보도를 의미하는 것이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5호, 제14호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신청인의 위 보도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송출연자의 개인적인 취향 내지는 의견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여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또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남성들 중 키가 180cm 이하인 남성들 개개인 또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의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6.

.....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89 등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금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2009서울조정5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1. 피신청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지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 향후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제목 및 내용에서 ‘미녀’ 등 신체적 표현이나 요소를 배제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
 3. 이번 사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사과한다.
 4. 피신청인은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집에 참여한 PD, 작가 등 실무자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례 1 · 범죄 의혹 보도 시, 피의자 실명 공개가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1부는 전 ○○상조회 이사장 이 모 씨가 MBC <PD수첩> 프로그램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우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PD수첩>은 지난 2001년 7월 ‘죽음 부른 사금고 ○○○ 횡령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한세병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사장으로 있던 이 씨의 횡령 의혹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실명이 공개되자 이 씨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방영하였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익성이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영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사실 보도에 있어 피의자의 범죄 사실 공표와 관련,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衡量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실시하면서, 정보 공개 이익이 우선하는 예로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

에 관한 것,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법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또는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한센병원자들의 정착촌에서 벌어지는 상조금 횡령현상을 고발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 방송의 기획의도, 상조회 관련 3명이 자살을 기도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사건의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최고 관리감독자인 이사장 지위에 있었고 횡령에 대해 이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보도는 '사건의 비법성으로 인해 공공에게 중요하거나 공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로 판단했다.

대법원 2009.9.10.자 선고(2007다71)

사 건 : 2007다7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이○○

피고, 피상고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김○○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9561 판결

판 결 선 고 : 2009. 9. 10.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

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및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참조).

나.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

17257 판결 등 참조),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범인에 관한 정보 역시 범죄사건 보도에 필요한 요소가 되어 범죄사실과 함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도 내용이 범죄사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 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언론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보도에 앞서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며, 기사의 작성 및 보도 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도의 내용 및 그 표현방법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假名)이나 두문자(頭文字)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衡量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커지므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

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법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2001. 7. 4. '피디(PD)수첩'을 통하여 '죽음 부른 사금고 ○○○ 횡령사건'이라는 제명(題名)으로 방영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의 담당 프로듀서인 피고 김○○이 사금고인 ○○상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후 한센병환자들의 정착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한 것으로서, 원고의 범죄혐의 사실을 공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보다는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한 감시·고발에 중점을 둔 시사성이 강한 프로그램인 점, 원고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 ○○상

조회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여수신행위를 하여 오면서, 그 임직원들의 거액의 배임·횡령 및 부실대출, 예금기장 누락과 예금잔고 소진 등으로 인하여 정착촌 주민들이 예금을 찾지 못하고 소송에 휘말리며 일부는 양돈업도 그만두게 되는 등 절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조회 회원이었거나 임직원이었던 3명이 자살을 기도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회·경제·문화적 파장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이고 실제 다른 언론기관들도 이미 이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일부 언론기관들은 ○○상조회에서 다액의 예금이 없어진 사실과 전임 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보도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의 원인이 발생한 기간 동안 한센병 환자 등을 상대로 사금융업을 하여 온 ○○상조회의 최고 관리·감독자인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그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다른 ○○상조회 직원 2명도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특성상 ○○상조회의 명칭과 그 전임 이사장에 대한 언급은 보도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공개가 불가피해 보이고, 이에 더하여 주민들이 원고에 대한 엄정 수사

를 촉구하며 시위하는 장면 등을 방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실명이 간접적으로 공개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심각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여러 관련 당사자들과 담당경찰관 등에 대한 다방면의 취재결과 등을 토대로 ○○상조회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범죄혐의의 의혹이 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한 책임소재를 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보도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병리적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원고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사태에 관하여 최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이미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던 전임 이사장인 원고에 대하여 그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상조회의 전임 이사

장이었던 원고의 실명이 나타난 영상 등을 방영함으로써 원고를 특정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방영하였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익성이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영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원고에 관한 범죄혐의 사실이 보도됨에 따라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문제와 원고의 실명이 공개됨에 따라 가증되는 법익침해의 위법성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실명을 공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익성이 있고 그 방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실명이 공개된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익명보도의 원칙이나 사생활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개인은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성명의 표시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 있으며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성

명의 표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명을 사용한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허용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성명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별도로 인정할 여지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명권 침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거절하는 원고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음성이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2

위험식품 의혹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상당성 인정 범위

피고 언론사가 기사를 통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 식품이라는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으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 식품’이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주식회사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정

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멜라민 분유’라고 표현한 내용은 사실에 반하며, ‘멜라민 분유’, ‘멜

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비도덕적 기업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임이 명백하다"며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2억 7,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회사는 피고 언론사가 지난 2009년 1월 29일 자사 홈페이지 및 다음날 신문을 통해 「○○ '멜라민 분유' 수출파문」 및 14면 「○○○○ '폐기제품' 수출 - 도덕성 도마에」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 공업용 유기화학물질인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수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 유가공 제품의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내자 잘못된 기사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분유의 원료인 1차 수입분 및 완성 분유에 대한 ○○○○ 자체 검사와 식약청,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소의 완성 분유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이 불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으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반한다”며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언론사가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으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분유에 들어있으리라고 의심하는 멜라민 함량은 0.000099 ~ 0.00231ppm으로 이 정도 용량은 현재까지 개발된 장비로 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평생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이 없는 멜라민 기준이 2.5ppm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 조제분유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강에 어떤 위해를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상당성을 부정,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9.9.29.자 선고

(2009가합2126, 2009가합2133(병합))

사 건 : 2009가합2126 손해배상(기)
2009가합2133(병합) 정정보도등
원 고 : ○○○○ 주식회사
피 고 : 1. 윤○○
2. 노○○
3.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 2009. 9. 1.
판 결 선 고 : 2009. 9. 29.
주 문 : 1.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

지 파이낸셜뉴스 제1면의 위치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09. 1. 30.자 윤○○ 기자 작성의 「○○○○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제1항과 동시에 인터넷 신문 ‘http://www.fnnews.com’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09. 1. 29. 17:33:50 게시한 윤○○ 기자 작성의 「○○○○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게시하라.

3. 만약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가 위 기간 안에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2,881,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30.부터 2009.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파이낸셜뉴스 제1면의 위치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2009. 1. 30.자 윤○○ 기자 작성의 「○○○○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제목이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제1항과 동시에 인터넷 신문

‘http://www.fnnews.com’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2009. 1. 29. 17:33:50 게시한 윤○○ 기자 작성의 「○○○○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게시하라.

3. 만약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가 위 기간 안에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유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파이낸셜뉴스를 발행하고, 인터넷 신문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http://www.fnnews.com’ (이하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윤○○은 피고 회사의 소속 기자, 피고 노○○은 피고 회사 편집국 생활경제사회부 부장이다.

나. 멜라민은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업용 유기화합물로서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물질이다. 중국에서는 2008. 9. 10.경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섭취한 4명의 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뉴질랜드의 타투아(Tatua)사(社)로부터 분유의 원료인 우유 단백질 락토페린을 아래 표와

같이 수입하였다.

순번	수입일	생산일	수입량
1차 수입분	2008. 5. 29.	2008. 5. 2.	90kg
2차 수입분	2008. 6. 23.	2008. 6. 11.	190kg
3차 수입분	2008. 9. 25.	2008. 6. 17.	200kg

원고는 1차 수입분 90kg중 38.4kg을 분유 108,309캔(이하 ‘이 사건 분유’라고 한다)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그 나머자인 51.6kg은 2008. 9. 5. 및 2008. 9. 29.에 실험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라. 국내 언론들은 2008. 9. 30.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고 한다)은 2008. 9. 30. 원고의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2, 3차 수입분에 대하여 멜라민 함유 여부를 검사하였다(1차 수입분은 위와 같이 모두 소비되었기 때문에, 식약청은 이에 대하여는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식약청의 검사 결과 3차 수입분에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2차 수입분에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 이에 식약청은 2차 수입분은 물론 3차 수입분에 대하여도 폐기를 명하여 원고는 2008. 10. 17.에 2, 3차 수입분을 반송 폐기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2. 13. 이 사건 분유 중 52,920캔을 베트남에 수출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09. 1. 29. 피고 윤○○이 작성하고, 피고 노○○이 편집한 다음과 같은 내용

의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다음날 파이낸셜뉴스 신문에 기사로 게재하였다.

• 제 목: ○○○○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이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번 멜라민 검출 의심 분유 수출이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은 최근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제품 5만4,000캔을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으로 수출된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 제품은 지난해 10월 멜라민 파동 당시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분유원료인 락토페린을 함유한 분유 ‘△△△△△’다.

당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에는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은 지난해 뉴질랜드산 480kg의 락토페린을 국내에 수입했으며 이 중 멜라민이 검출된 200kg과 불검출된 190kg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거했으나 90kg으로는 ‘△△△△△’ 10만8,000캔을 생산했다.

그러나 ○○○○은 문제의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5만4,000캔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나머지 5만4000캔은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베트남 간 국제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일한 관리감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 ○○○○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 정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문제의 제품을 폐기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은 “해당 제품이 자체 조사나 식약청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1ppm 이하의 멜라민이 함유됐을 경우 축정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유통을 중단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제 목: ○○○○ ‘폐기 제품’ 수출 도덕성 도마에

○○○○이 멜라민 검출 의심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도 국내 소비자를 피해 외국에 유통시켜 국제적 비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는 멜라민 파동 이후 안전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늘고 있는 국내 유업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뉴질랜드 타투아사로부터 지난해 6월 수입한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 락토페린에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행스럽게 완제품인 ‘△△△△△’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당시 타투아사에서 수입한 ○○○○의 락토페린 480kg 중 390kg을 수거해 폐기했다. 그러나 제품으로 생산된 90kg은 존치시켰다.

○○○○은 당시 90kg으로 ‘△△△△△’ 10만 8,000캔을 생산했으며 이 중 5만4,000캔을 최근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수출금액으로는 6억 원 안팎에 이른다. 이는 ○○○○의 연간 베트남 수출 물량 50억 원가량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규모다. 나머지 5만4,000캔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문제의 분유 원료인 락토페린을 뉴질랜드산에서 네덜란드산으로 교체하고 유산균 성분을 강화한 ‘△△△△△’ 리뉴얼 제품을 출시한 것과는 달리 베트남 등지에는 문제의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이 과정에서 ○○○○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태도도 번복했다.

박○○ ○○○○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폐기 등 조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멜라민 파동이 잠잠해지자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제품은 수출을 통해 소진했다.

이번 ○○○○의 멜라민 의심 제품 수출은 국가신뢰도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번 ○○○○의 이번 수출은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발 멜라민 파동을 무사히 비껴간 한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이 베트남과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부각돼 한국산 유제품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 수출이 어떤 변수로 작용

할지 주목되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번 수출은 단일 기업의 도덕성을 벗어나 국가신뢰도 차원의 문제”라며 향후 한국산 유가공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식약청이 수출을 승인했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1회, 외부기관에서 2회 검사를 거쳐 조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베트남 수입업체는 물론 베트남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수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 회사는 위 각 기사 이외에도 2009. 1. 29. 부터 2009. 2. 11. 사이에 ‘○○ 멜라민 의심 분유 사실상 은폐’, ‘○○, 먹을거리 안전인식 도마에’, ‘네티즌 “믿고 먹었는데..” ○○ 비도덕성 맹비난’, ‘방사능·사카자키균·멜라민.. ○○은 식품 파동 단골?’ 등 이 사건 분유의 베트남 수출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45건의 후속 기사를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및 신문을 통해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8, 10, 12 내지 15, 20 내지 2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사의 진실성 여부 및 정정보도의무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

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속 중앙연구소에서 2008. 9. 23. 락토페린 1차 수입분 90kg에 대하여 미국 FDA 공인방법에 의한 자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나) 원고는 위 1차 수입분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이 사건 분유에 관하여 2008. 9. 28.부터 2008. 9. 30. 사이에 원고 소속 중앙연구소에서 자체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다) 식약청은 2008. 10. 2. 이 사건 분유에 대하여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박○○는 2008. 10. 24.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사건 분유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변웅전 의원의 질문에 “이것은 제품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유를 수출하기 전에 이 사건 분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하여 2008. 12. 4.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및 한국식품연

구소에 이 사건 분유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왔다.

(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분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 식약청은 2009. 1. 30. 원고가 베트남 등에 수출한 이 사건 분유는 식약청 검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설명자료를 식약청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사) 식약청의 2008. 10. 21.자 설명자료에 의하면 성인의 1일 총 섭취량 중 음료와 주류를 제외한 고형 식품이 모두 멜라민에 오염되었다는 가정 하에 이를 평생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이 우려되지 않는 멜라민 기준은 2.5ppm이다. 위 설명자료에 따른 각국의 멜라민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대상식품	기준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식품	2.5ppm 이하
홍콩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식품	2.5ppm 이하
미국	분유를 제외한 모든 식품	2.5ppm 이하
EU	유제품 함유 중국산 수입제품	2.5ppm 이하
대만	모든 식품	2.5ppm 이하
영국	유제품 함유 중국산 수입제품	2.5ppm 이하
뉴질랜드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일반 식품	2.5ppm 이하
	원료 식품	5ppm 이하
캐나다	영·유아 조제분유	1ppm 이하
	기타 식품	2.5ppm 이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 16, 17, 34,

35, 36, 43, 4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 ○○, 이△△의 각 증언

(3) 판단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 폐기 제품 수출 도덕성 도마에’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서도 이 사건 분유에 관하여 ‘멜라민이 검출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함유하고 있는 분유’,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유통이 중단된 제품’, ‘폐기처리가 예정된 제품’, ‘문제의 제품’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과 유사한 국제분쟁을 야기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제목 및 본문의 표현된 문구에 비추어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먼저 기사 제목에 의하여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분유’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본문을 읽어보더라도 결국 이 사건 분유는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 및 원고의 자체 검사와 외부검사 결과 이 사건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에서 위 반론 등 내용이 차지하는 위치와 길이,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 등 앞서 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독자들이 받게 될 위와 같은 인상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유의 원료인 1차 수입분에 관한 자체 검사,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자체 검사,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식약청,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에서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으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진실에 반하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신용 등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기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의 해당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멜라민 분유’ 또는 ‘멜

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내용이므로, 이는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멜라민 함유 의심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비도덕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완제품인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원고의 자체 검사나 식약청 등의 외부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① 내지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락토페린 1차 수입분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정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으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위법성이 없다.

① 타투아사는 2008. 9. 29. 자사 생산의 락토페린에 대한 검사 결과 4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원고가 타투아로부터 1차분 아포락토페린 90kg을 수입한 시기는 2008. 5. 29.로서 위 발표가 있기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8. 6. 23.에 2차로 아포락토페린 190kg을 수입하였는데 여기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 1,2차 수입분의 생산일자 사이의 기간도 약 40일에 불과한바, 1차

수입분에도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분유와 이유식 생산에 첨가되는 락토페린의 양은 그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3~0.7%에 불과하므로 락토페린에 멜라민이 함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만든 분유 완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락토페린에 멜라민 3.3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만든 완제품에는 멜라민 함량이 0.000099~0.00231ppm이 된다. 현재 원고 소속 중앙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의 멜라민 검사장비의 검출한계는 1ppm 이상이고, 보다 성능이 좋은 검사장비로도 0.1ppm 미만의 멜라민을 검출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완제품에 대한 원고의 자체 검사나 식약청 등의 외부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락토페린 1차 수입분에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2008. 10. 2.자 식약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07.부터 2008.까지 타투아사로부터 락토페린 390kg을 수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390kg은 2차 수입분 190kg과 3차 수입분 200kg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2008. 9. 30.에 이루어진 식약청의 조사 당시 1차 수입분 90kg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④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9. 28. 멜라민 조사 대상을 중국뿐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분유 원료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8. 9. 29. 1차 수입분 중 남아있던 11.6kg을 미생물필터링 실험(10kg)과 용해도 실험(1.6kg)에 모두 사용하여 소진시켜 버렸다. 이는 그 실험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목만의 실험일 뿐 당국의 멜라민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

에 볼 수 없다. 아마도 이렇게 황급하게 검사를 회피하고자 한 이유는 1차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거나 적어도 멜라민 함유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⑤ 식약청이 멜라민 시료 등 검사 시험법을 식품업체에 공문으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2008. 9. 26.인데, 원고가 1차 수입분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8. 9. 21 ~ 9. 23.은 식약청에 의한 검사시험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므로 어떠한 기준으로 멜라민 검사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국정감사 당시 이 사건 분유에 대한 자체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1차 수입분 원료에 대하여도 자체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바가 없다는 점, 자체 검사 결과를 기재한 제품검사성적서(갑5의 13 내지 15)는 시험성적서(갑5의 22 내지 24)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에도 그 일부 작성일자가 시험성적서의 작성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수입분에 대한 자체 검사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으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만일 이 사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 의심되는 함유

량이 극히 소량이었어서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피고 회사는 그러한 취지를 밝히서 이 사건 분유가 위험한 분유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도를 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분유에 들어있으리라고 의심하는 멜라민 함량은 0.000099~0.00231ppm이다. 이러한 양의 멜라민은 현재까지 개발된 장비로 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인이 평생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이 없는 멜라민 기준이 2.5ppm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 조제분유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강에 어떤 위해를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중국산 멜라민 분유로 인하여 유아가 사망한 사건은 유아가 의도적으로 혼입된 최고 2,650ppm의 고농도 멜라민에 노출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손해배상 액수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19,586,519,583원의 재산상 손해(= 매출감소 손해 19,064,638,111원 + 특별근무 손해 72,881,472원 + 광고비 손해 449,000,000원)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재산상 손

해의 일부인 700,000,000원과 위자료 300,000,000원의 합계 1,0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재산적 손해

(가) 살피건대, 갑29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인 2009. 1. 30.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근무를 시작하여 2009. 3. 26.까지 특별근무를 한 영업 1부문 전 직원 136명에 대하여 총 72,881,472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추가 수당 72,881,472원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19,064,638,111원 상당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나, 갑28의 1 내지 5, 갑3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와 매출액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449,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시행한 광고의 효과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30(가지번호 포함), 3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광고 효과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분유는 유아들이 먹는 식품이라는 점, 멜라민은 식품에 절대 함유되어서는 아니 되는 성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 사건 기사는 소비자들

에게는 충격적이고 생산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기사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시기가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소비자들이 멜라민에 대하여 극히 불안해하던 시기였던바, 이 사건 기사의 영향력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분유가 식약청 조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 사건 기사 보도 직후에 식약청이 이 사건 분유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설명자료를 식약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29.부터 2009. 2. 11.까지의 2주 동안에 무려 45건의 원고에 대한 의혹 기사 내지 비방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입은 신뢰도 하락 등의 무형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는 20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 272,881,472원(= 200,000,000원 + 72,881,4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보도일 다음날인 2009. 1. 30.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독일판례

인격권이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가 중대한 경우 범죄인 개인에 대한 보도는 공공의 알 권리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다

• 관련조문 :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조; 민법 제823조, 제1004조

• 연방헌법재판소(제1재판부의 제1소위원회)

2009년 6월 10일자 결정 - 1 BvR 1107/09

판결요지

1. 일반적 인격권이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위가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 성범죄자의 범행을 실명으로 사진과 함께 보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공공의 알 권리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다.

사실관계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신상

보도에 대하여 보호법익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전 프로축구 선수로서 1993년까지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2008년 10월 29일 Köln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청구인의 상고는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원심판결을 보면 피고는 유명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2008년 10월 16일 공판에서의 청구인 자백을 근거로 형사소송절차와 이에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다. “전 프로축구 스타가 접대부에게 폭력을 행사

하여 어제 법정에 섰다”라는 제목하에 피고는 청구인의 이름과 나이 및 축구선수로서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당시 범행에 대하여 상세하고 묘사하였고, 청구인이 이미 5년 전부터 해당 매춘부의 고정손님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보도에서는 청구인이 프로 축구 선수로서 활동한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게재되었다. 2008년 10월 29일의 보도에서도 피고는 범행 관련 사진과 실명을 첨부하면서 1심 재판 결과를 보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자신의 재판절차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실명과 사진을 게재하면서 사건을 상세하게 묘사한 피고인의 보도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008년 11월 17일자 판결(9 O 19937/08)에서 München지방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인의 실명과 나이 및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경력,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재판절차에 대한 보도, 사진의 공개 그리고 청구인이 피해자의 단골손님이었다는 주장을 금지하도록 명하였다. 또 선고된 형량에 대하여 기관력에 대한 입증 없이 보도하는 것도 금지했다. 피고의 이의청구에 대해 München지방법원은 2008년 12월 15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4월 7일 항소심에서 München고등법원은 피고의 청구와 관련, 개인의 신상을 공표하면서 범죄행위와 소송절차를 보도한 것과 청구인이 피해자의 단골손님이었다는 주장을 금지토록 한 지방법원 판결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고, 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소원을 통해 청구인은 München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기본법 제2조 제1

항과 제1조 1항에 근거하고 있는 자신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정이유

[1...13] 당해 헌법소원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a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의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심판수리가 거절된다. 제시된 헌법상의 논점에 대해서는 이미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아니한다(BVerfGE 27 S. 344[350 ff.]; 32 S. 373[378 ff.]; 34 S. 238[245 ff.]; 35 S. 202[218 ff.] = AfP 1973 S. 423; BVerfGE 80 S. 367[373 ff.]; 97 S. 391[400 ff.] = AfP 1998 S. 38; BVerfGE 109 S. 279[313 ff.]; 119 S. 1[29 ff.] = AfP 2007 S. 441). 또한 헌법소원의 수리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청구인의 권리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에는 이유가 없다.

[15] 민법 제1004조와 제8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작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한 것은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과 충돌하게 된다. 실명과 사진 등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범죄행위의 원인, 실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도를 하는 경우, 범죄자가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고 이를 접하는 자의 시각에서 범죄자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BVerfGE 35 S. 202 = AfP 1973 S. 423; BVerfG, AfP 1993 S. 478 = NJW 1993 S. 1463[1464]; BVerfG, AfP 2006 S. 354 =

NJW 2006 2006 S. 2835).

[16] b) 일반적인 인격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기본법상의 규정이나 타인의 기본권 보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타인의 기본권에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의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기본권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일반 법률과 개인의 명예권에 의해 제한된다.

[17] 일반적 인격권의 민사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823조 제1항과 2항 및 형법 제185조 이하와 결합하여 민법 제1004조 제1항이 있다. 이러한 인격권의 해석과 적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하며, 원칙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사후심사가 배제되어야 한다. 민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관할 법원은 관련 기본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BVerfGE 7 S. 198[205 ff.]; BVerfGE 85 S. 1[16] = AfP 1992 S. 53; BVerfGE 114 S. 339[347 f.] = AfP 2005 S. 544). 이를 위해서는 상호 대립하는 기본법상의 권리에 대한 비교형량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해당 권리의 해석상 요건들을 비롯하여 개별적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BVerfGE 99 S. 185[196] = AfP 1999 S. 57; BVerfGE 114 S. 339[348] = AfP 2005 S. 544). 이러한 이익형량의 결과가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미리 일괄적으로 실시될 수는 없다. 판례에 의하면 구체적인 형량을 위한 원칙을 정하는 관점이 발전되어가고 있다(BVerfGE 93 S. 266[293] = AfP 1996 S. 50 =

NJW 1995 S. 3303; BVerfGE 99 S. 185[196] = AfP 1999 S. 57). 따라서 일반적으로 진실한 사실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하는 반면, 진실하지 않는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BVerfGE 94 S. 1[8]; 97 S. 391[403] = AfP 1998 S. 38; BVerfGE 99 S. 185[196] = AfP 1999 S. 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실한 보도도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BVerfGE 97 S. 391[403] = AfP 1998 S. 38; BVerfGE 99 S. 185[196 f.] = AfP 1999 S. 57). 이것은 특히, 진실이라 하더라도 표현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는 동시에 당사자의 특별한 오명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여 당사자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BVerfGE 97 S. 391[404 f.] = AfP 1998 S.38).

[18]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발생한 범죄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발생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이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BVerfGE 35 S. 202[230 f.] = AfP 1973 S. 423; BVerfG, AfP 1993 S. 478 = NJW 1993 S. 1463[1464]; BVerfG, AfP 2006 S. 354 = NJW 2006 S. 2835).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는 사회적으로 대중의 관심사가 되며 이를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기도 하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와 법규 위반, 희생자에 대한 연민, 동일 범죄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이 범죄행위와 범죄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범행수법과 피해가 일반 범죄행위보다 심각한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중대한 폭력범죄행위에 있어는 단순한 관심과 흥미를 넘어서서 범죄행위와 그 진행과정, 범인의

신상 및 범죄동기 그리고 형사 처벌에 대한 일련의 정보가 갖는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BVerfGE 35 S. 202[231] = AfP 1973 S. 423).

[19] 인격권에 대한 침해와 관련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신상보도 사이의 이익형량을 할 때,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한 보도가 갖는 알 권리가 우선한다(BVerfGE 35 S. 202[231] = AfP 1973 S. 423; BVerfG, AfP 1993 S. 478 = NJW 1993 S. 1463[1464]; BVerfG, AfP 2006 S. 354 = NJW 2006 S. 2835). 이러한 범죄행위와 그 결과를 통해 이웃을 해하여 법 감정을 깨트린 자는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에 의해 발생한 정보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감수해야 한다(BVerfGE 35 S. 202[231 f.] = AfP 1973 S. 423).

[20] 물론 이러한 공공이 갖는 알 권리가 항상 제한 없이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것 역시 아니다. 불가침적인 개인의 은밀한 생활영역은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정도 그리고 공익성의 개념 등과도 적절한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BVerfGE 35 S. 202[232] = AfP 1973 S. 423; BVerfG, AfP 1993 S. 478 = NJW 1993 S. 1463[1464]; BVerfG, AfP 2006 S. 354 = NJW 2006 S. 2835). 이에 따르면, 실명을 언급하는 것, 사진을 게재하는 것 또는 그밖에 범죄인의 동일성을 알리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질 수 없게 된다. 특히 경범죄나 범죄인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BVerfGE 35 S. 202[232] = AfP 1973 S. 423; BVerfG, AfP 1993 S. 478 = NJW 1993 S. 1463[1464]). 사소한 실수에 대해 알고자 하는 공공의 사소한 이익이 구체적인 경우에 범인 개인이나 범행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정될 수도 있다

(BVerfG, AfP 2006 S. 354 = NJW 2006 S. 2835). 보통 수사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에 있어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 당사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BVerfGE 35 S. 202[232] = AfP 1973 S. 423; BVerfG, AfP 2006 S. 354 = NJW 2006 S. 2835). 1심 선고 전까지는 인격권의 무게가 보도의 자유보다 중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형사 피고인의 실물사진을 게재하면서 보도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인격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상황, 예를 들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공공의 의해 비난이 쏟아지는 경우에 정당화 될 수 있으며(BVerfG, AfP 2009 S. 46 = NJW 2009 S. 350[352]), 관련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직위 또는 사회적 위치나 지명도로 인해 대중의 관심대상이 된다면 이를 고려한 미디어상의 공개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당성을 갖는다(BVerfG, AfP 2009 S. 244).

[21] 일반적으로는 범죄인의 범죄행위가 대중에게 공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 의미를 갖는다. 인격권은 범인의 신상과 사적 영역에 대해 미디어가 무제한으로 보도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BVerfGE 35 S. 202[233] = AfP 1973 S. 423). 공공의 알 권리를 유발시키는 범죄행위라도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취해지게 되므로, 대중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 범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까지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BVerfGE 35 S. 202[233 f.] = AfP 1973 S. 423). 인격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묘사되는 것을 완전히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격권이 범죄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대중에게 직면시키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BVerfG, NJW 2000 S. 1859[1860]).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하여 범죄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 방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범죄인의 인격권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보도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가 항상 중요한 문제가 된다(BVerfG, NJW 2000 S. 1859[1860]). 인격권 침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종류와 방법 특히 매체 전달의 정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통 TV보도는 신문보도보다 사적영역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강하다(BVerfGE 35 S. 202[226 f.] = AfP 1973 S. 423; BVerfG, NJW AfP 1993 S. 478 = NJW 1993 S. 1463 [1464]).

[22]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실시간 보도는 그 내용이 범죄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범행동기에 대한 설명 또는 다른 범죄행위요건 등이 포함되어 범인의 유죄를 판단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라면 설명을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범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보도 여부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VerfGE 35 S. 202 [233] = AfP 1973 S. 423).

[24] 고등법원은 상호 대립하는 이익에 대한 형량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나아가 성범죄행위라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내부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25] 기본법은 일반인들에게 공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신전속적인 사적영역에서 개인의 인격 발현을 위한 불가침영역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인

간의 존엄성 보장 차원에서 이러한 사적 삶의 모습에서의 핵심영역은 상당성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 없이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BVerfGE 6 S. 32 [41]; 27 S. 344 [350]; 32 S. 373[378 f.]; 34 S. 238 [245]; 89 S. 69[82 f.]; 119 S. 1[29 f.] = AfP 2007 S. 441). 이러한 핵심영역에는 특히 성욕의 표현방법이 포함된다(BVerfGE 119 S. 1[29 f.] = AfP 2007 S. 441). 일반적으로 사실관계가 이러한 핵심영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가 이것을 비밀로 유지하려 하는지 여부, 내용상 불가침적 성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표현의 종류와 정도에 있어서 타인의 사적 영역이나 사회의 이해관계에 저촉되는지 등에 따라 판단된다(BVerfGE 80 S. 367[374]; 109 S. 279[314]).

[26] 성생활은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은밀한 영역에 해당된다. 성생활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행하려는 자유는 보장된다. 성범죄는 성욕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내면의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성욕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폭력적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행위가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범죄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성범죄행위는 불가침적 성격을 갖거나 범인의 인격에 저촉되는 성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인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성범죄행위의 그 밖의 상황 특히 범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은밀한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그밖에 고등법원에서 실시한 비교형량이

기본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고등법원은 연방헌법 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의 판례에 의해 발전된 조치를 제대로 강구하였다. 따라서 이익형량이 기본법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8] 본 사안에서와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의 보도에서 범죄인에 의한 범행실행이 최소한 부작위청구에 대한 1심 판단시점에서 의심 없이 밝혀진 만큼 고등법원이 알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우선 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 형량에 대한 판단이 아직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가 중대하여 범죄인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알 권리가 발생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도 기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고등법원이 범죄행위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처벌범위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징역형에 대해 고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인은 과거 상당한 정도로 공공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후 그 지명도가 사라지기는 했어도 그 개인과 행위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가 등한시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9]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이 범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이익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과 지방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의 일부를 인정하였다는 점 역시 기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자 있을 권리가 범죄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한 실시간 보도를 통한 알 권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낙인효과 때문에 항상 인격권을 우위에 두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보도로 인해 청구인에게 상당한 사회적 비난이 제기될 수는 있다. 일반적인 인격권은 범죄인에게 자신의 주변으로부터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형사소송을 조용히 치룰 수 있도록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소송의 결과에 대한 사실보도로 인해 영구적 또는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격리가 우려될 만큼의 심각한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사회적 격리에 대한 우려를 보도이익과의 형량에서 우위에 두어야 할 이유도 없다.

출 처 : AfP 40. Jahrgang Heft 4 - 2009 SS. 365 ~ 368.

번 역 : 남 기 연(단국대 법학과 교수)



일본판례

**살인사건을 현장방영한 TV 프로그램에서 동의 없이 취재원의 얼굴 등을
방송한 것은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써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송사
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나, 방송 제작에 있어 영상 선택권 등을 행사하
지 않는 사회자는 불법행위책임이 없다**

- 원 고 : 甲 太郎
- 피 고 : 주식회사 도쿄방송홀딩스(구, 주식회사 도쿄방송)
주식회사 TBS텔레비전
상기 회사 대표이사 井上 弘
乙山竹夫
- 대상사건 : 도쿄지법 2007(7) 27950호
- 사 건 명 : 손해배상청구사건
- 연월일등 : 2009. 4. 14 민사 제23부 판결
- 재판내용 : 일부인용 · 일부기각(항소)

주 문

1. 피고주식회사 도쿄방송홀딩스 및 피고 주식회사 TBS텔레비전은 원고에 대해 연대하여 12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7년 1월 1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도쿄방송홀딩스 및 피고 주식회사 TBS텔레비전에 대한 다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乙山竹夫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하나를 피고 주식회사 도쿄방송홀딩스 및 피고 주식회사 TBS텔레비전의 연대부담으로 하고 다른 나머지를 원

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원고의 승소부분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해 연대하여 1,1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7년 1월 1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제2 사안의 개요

1. 본 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TBS텔레비전(이하「피고 TBS」로 한다)이 기획 및 제작한 프로그램「みのもんたの朝ズバッ!」(「미노몬타의 아침 즈밧!」· 이하「본 건 프로」로 한다)에서 2007년 1월 11일 오전 8시 5분부터 7분 사이에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용모 등을 생방송함으로써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피고 TBS, 본 건 프로를 방송한 피고 주식회사 도쿄방송홀딩스(이하「피고 도쿄방송」으로 한다) 및 본 건 프로의 사회자인 피고 乙山竹夫(이하「피고 乙山」으로 한다)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일인 2007년 1월 1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체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한 사안이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등 (증거는 괄호로 표시한다)

가. 당사자 등

(1) 원고는 한국출신으로 1997년 1월 일본에 입국, 현재는 폐기물처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丙川에서 폐기물 수집차(이하「수집차」로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2) 2007년 1월 11일 당시 피고 도쿄방송은 방송법 등에 근거하여 방송국의 면허를 받아 JORX-TV의 제6 채널을 통해 본 건 프로를 방송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TBS는 피고 도쿄방송의 100% 자회사로 본 건 프로의 기획, 제작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3) 피고 乙山은 본 건 프로의 핵심적인 사회자이며, 소외(訴外) 丁原梅夫(이하「丁原 프로듀서」로 한다)는 본 건 프로의 담당 프로듀서이다.

나. 본 건 방송

(1) 본 건 프로는 피고 乙山이 사회를 맡아 평일의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JNN계의 전국네트로 방송되고 있는 생방송의 보도프로그램이다. 본 건 프로의 주 평균 시청률은 2006년 10월 당시 11.2%였다.

(2) 2006년 12월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증권회사 직원이 살해되어, 토막으로 절단된 시체로 유기된 사건(이하「본 건 살인사건」으로 한다)이 발생하여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었는데 2007년 1월 10일 피의자로 체포된 것은 그의 처였다.

(3) 본 건 프로에서는 처가 피의자로 체포된 사실을 가지고 1월 11일(목요일) 오전 8시 4분경부터 7분경까지 본 건 살해행위가 있었던 도쿄도 澁谷區(시부야구)에 있는 회사의 자택 맨션(이하「본 건 맨션」으로 한다) 앞에서 戊田春夫 아나운서(이하「戊田 아나운서」로 한다)에 의한 현장중계 형식의 본 건 방송이 진행되었다.

(4) 본 건 방송에서는 화면의 배경에 본 건 맨션 앞의 영상이 방영되어 화면 오른쪽 위에 ‘澁谷(시부야) · 자택 앞’, ‘LIVE’, 화면 오른쪽 아래에 ‘新宿(신주쿠) · 澁谷 “절단시체”, ‘속보’, ‘32세 처, 남편의 수색 청원 · · · 은폐공작인가’라는 제목을 붙여 본 건 맨션 앞에서 戊田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있는 사회자인 피고 乙山에게 본 건 사건의 개요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화면 왼쪽 아래의 작은 창(小窓)에는 피고 乙山の 영상이 비쳐지고 있었다.

(5) 본 건 방송 중 스튜디오에서 사회를 본 피고 乙山과 현장중계를 한 戊田 아나운서의 대화내용은 별지「말언목록」에 기재된 대로이며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가) 戊田 아나운서가 현장에서 보고하고 있었던 2007년 1월 11일 오전 8시 4분경 戊田 아나운서의 오른

쪽 뒤편(화면 왼쪽)을 쓰레기 수집차가 통과하여 정차했다.

(나) 戊田 아나운서의 뒤편을 수집차가 통과하는 것을 본 피고 乙山은 戊田 아나운서에게 “戊田 군, 지금 당신의 뒤편 그거, 쓰레기 수집차 아니야?”, “발견되지 않은 손목이나 뭔가를 부엌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을 이 수집차가 수집하러 온 거겠지?” 등의 발언을 했다. 戊田 아나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겠나요, 잘 모르기는 해도”라고 말하면서 수집차가 정지하고 있는 방향으로 뛰어갔으며, 카메라도 이를 뒤따라가면서 방송했다.

(다) 1월 11일 오전 8시 5분 6초경 수집차가 정지하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달려간 戊田 아나운서는 수집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원고에게 “실례합니다, 맨션의 쓰레기 같은 것이 안에 있습니까?”라는 등 질문을 시작했다. 원고가 “저쪽의 파친코(슬롯머신) 가게 쓰레기입니다”라고 응답하자 戊田 아나운서는 계속해서 “이쪽 맨션의 쓰레기는 어느 쪽에 버리는지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으며 원고는 “저쪽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라) 그리고 동일 오전 8시 5분 38초경, 戊田 아나운서는 다시 원고에게 “어디?”라고 묻자 원고는 戊田 아나운서에게 “텔레비전에 나가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일순간 망설이던 戊田 아나운서는 원고에게 “방영되지 않도록 배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원고와 戊田 아나운서 간의 이러한 일련의 대화를 스튜디오에서 듣고 있던 피고 乙山은 동일 오전 5분 47초경 “방영되고 있어, 이제 됐어”라고 발언했다.

(마) 이런 사이에 동일 오전 8시 5분 9초~27초,

8시 5분 36초~42초, 8시 6분 5초, 6분 18초~19초, 6분 22초~23초, 6분 38초, 6분 46초~55초, 6분 59초, 8시 7분 0초에 방송된 영상에는 원고와 원고가 운전하고 있던 수집차가 방영되었다.

(6) 이와 관련하여 이 당시의 원고는 본 건 맨션과는 다른 빌딩의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해 본 건 맨션의 근처를 통과하고 있었을 뿐이며, 본 건 맨션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 본 건 방송 후의 사정

(1) 戊田 아나운서는 본 건 방송의 다음날인 2007년 1월 12일 본 건 맨션 앞으로 나와 폐기물 수집 작업 중이던 원고에게 “어제는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조금 방영되었습니다”, “어제는 나도 상사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았습니까?”라는 말들을 하면서 사죄했다.

(2) 원고는 직업관계로 가족과 별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건 방송의 다음날 戊田 아나운서가 재차 찾아온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원고의 얼굴이나 수집차가 방영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으며, 戊田 아나운서로부터 “조금 방영되었습니다”라는 말도 있고 해서 “조금”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戊田 아나운서에게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戊田 아나운서를 예능인으로 착각하고 사인을 해달라고까지 했다.

(3) 원고는 그 다음날인 1월 13일 처 甲野花子(이하 「처 花子」로 한다)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동월 11일 오전 8시 4분경부터 7분경까지 수집차와 戊田 아나운서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원고의 모습과 얼굴 등이 방영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

았다. 그리고 원고는 동월 14일 피고에게 항의를 하면서 본 건 방송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원고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4) 원고의 요구를 받고 본 건 방송의 책임자인 丁原 프로듀서는 동월 15일 본 건 방송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지참하고 원고의 자택을 방문, 원고 및 가족들에게 본 건 방송이 나가게 된 데 대해 사죄하는 한편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나 원고와 처 花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제3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1. 쟁점1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원고의 주장)

가. 프라이버시의 침해

(1) 본 건 방송에서는 원고의 모습이 널리 일반에게 방송되었는데, 쓰레기 수집차의 운전기사라는 사실은 통상 공개를 바라지 않는 정보라는 것은 명백하다.

(2) 원고는 “텔레비전에 나가는 겁니까?”라고 묻고 있어, 원고가 수집차의 운전기사라는 것을 일반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다.

(3) 본 건 방송은 원고가 사회에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하여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다.

나. 명예훼손

(1) 본 건 방송에서는 사회를 보고 있던 피고 乙山이 “戊田 군, 지금 당신의 뒤편 그거, 쓰레기 수집차 아니야?”, “발견되지 않은 손목이나 뭉가를 부엌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을 이 수집차가 수집하러 온 거겠지?” 등의 발언을 하여 본 건 방송을 본 일반시청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토막으로 절단된 시체의 일부를 운

반한 인물인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2) 피고 乙山の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원고의 사회적 명예와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었다.

다. 초상권의 침해

(1) 누구든지 함부로 타인으로부터 용모 등을 촬영당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을 갖고 있다.

(2) 그런데 본 건 방송에서는 원고의 승낙도 없이 수집차를 운전하는 원고의 모습과 얼굴 등이 생방송되어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라. 모욕(侮辱)

사회자인 피고 乙山은 원고가 수집차와 함께 방송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현장중계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여 원고의 모습이나 얼굴이 방송되지 않도록 배려했어야만 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웃으면서 “방영되고 있어, 이제 됐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원고를 비웃으면서 모욕한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

가.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하여

원고는 얼굴을 숨기지 않고 공로상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또한 수집차의 운전기사도 훌륭한 직업으로 그 자체가 통상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정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명예훼손에 대하여

(1) 본 건 방송은 현장중계 시 우연히 수집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운전기사에게 본 건 맨션 부근의 쓰레기나 폐기물의 수집방법 등에 관해 인터뷰하여 그 실정을 알려고 한 데 불과하며, 원고가 본 건 살인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본 건 방송을 시청한 일반시청자에게 원고가 본

건 살인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2) 또 폐기물 수집 그 자체는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직업의 하나로 공익적인 업무이며, 일반사회에서 창피한 직업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확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일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1) 본 건 방송에서 일부 원고의 모습이나 얼굴이 방송된 것은 사실이나 방송 도중 원고가 “방송에 나가는 겁니까?”라고 확인을 구한 후에는 원고의 얼굴이 특정되지 않도록 멀리서 촬영하여 방송하도록 했다.

(2) 설령 초상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 건 방송 도중까지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촬영을 거부하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으며, 타사의 인터뷰에도 응했다.

(3) 더욱이 원고는 사죄하기 위해 찾아간 戊田 아나운서에게 “괜찮다”고 대답하고 사인을 부탁한 것으로 보아 묵시의 승낙을 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봐야 한다.

2. 쟁점2 (공동불법행위 등의 성립여부)

(원고의 주장)

가. 피고 乙山은 사회자로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戊田 아나운서에게는 수집차를 따라가도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와 같이 불성실한 발언으로 원고를 조소(嘲笑)하여 명예감정을 손상했다.

나. 피고 도쿄방송은 본 건 방송의 방송주체로서, 피고 TBS는 본 건 방송의 제작주체로서, 원고가 알려지고 싶지 않는 수집차의 운전기사라는 개인적인 정보를 본 건 방송을 통해 널리 일반에게 알려 원고의 프라이버시, 명예,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했다.

다. 본 건 프로의 프로듀서로서 본 건 방송의 책임자인 丁原 프로듀서와 戊田 아나운서는 피고 도쿄방송의 사원이다. 따라서 피고 도쿄방송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709조, 715조, 719조에 근거한 사용자책임 및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만 한다.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책임분담 등

(1) 본 건 프로의 방송 주체가 피고 도쿄방송이고, 제작 주체가 피고 TBS라는 것, 본 건 방송의 책임자가 丁原 프로듀서이고, 戊田 아나운서와 함께 피고 도쿄방송의 사원임을 인정한다.

(2) 피고 乙山은 戊田 아나운서에게 원고를 인터뷰하도록 명확한 지시를 한 바 없다. 또한 카메라맨에 대해 어떠한 영상을 촬영할 것인지, 촬영된 복수의 영상 중 어떠한 영상을 방송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사회자인 피고 乙山에게는 없다. 이러한 권한은 스튜디오 옆 부조정실(副調整室)에 대기하고 있는 프로듀서 등 프로그램의 제작 담당자에게 있다.

(3) 피고 乙山은 戊田 아나운서의 언동 등에 대해 실소(失笑)했을 뿐 원고를 조소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피고 乙山에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등

(1) 설령 본 건 방송에 의해 초상권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 원고의 목시적 승낙이 있었음은 전기에서의 기재와 같다.

(2) 설령 본 건 방송에 대해 원고의 목시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촬영되는 것 자체를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타사의 인터뷰에도 응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목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또 원고는 사죄하기 위해 찾아간 戊田 아나운서에게 “괜찮아요”라고 대답하고 사인까지 구한 것을 보면 일단 본 건 방송을 용인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4) 피고 TBS와 피고 도쿄방송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나, 본 건 방송 후 원고로부터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丁原 프로듀서 등을 원고의 자택으로 보내 직접 사죄하는 등 성의 있는 대응을 취했다.

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4 당 법원의 판단

1. 쟁점1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가. 2007년 1월 11일에 방송된 본 건 프로에서, 오전 8시 5분부터 7분 사이에 폐기물 수집차를 운전하고 있던 원고의 승낙 없이 그의 용모 등이 생방송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면 우선 본 건 방송에 의해 원고의 프라이버시나 명예,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1) 우선 <중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월 11일 오전 8시 5분 5초부터 30초까지, 5

분 34초부터 47초까지, 5분 58초부터 6분 5초까지, 6분 10초부터 24초까지, 6분 34초부터 55초까지, 6분 59초, 동일 오전 8시 7분 0초에 방송된 영상 등에는 원고와 원고가 운전하고 있던 수집차가 방영되었다.

(나) 특히 동일 오전 8시 5분 17초부터 27초까지, 5분 37초부터 39초까지, 6분 5초, 6분 18초, 19초, 22초, 23초, 35초, 38초에 방송된 영상 등에는 원고의 얼굴이 비교적 크게 방영되면서 원고가 戊田 아나운서의 질문에 응답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으므로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원고라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또한 동일 오전 8시 5분 6초, 동 8초부터 15초까지, 동 28초부터 30초까지, 동 35초, 동 58초, 동 59초, 동일 오전 8시 6분 14초, 동 24초, 동 34초의 영상 등에는 원고가 운전하고 있던 수집차가 방영되었으며, 동 수집차의 오른쪽 측면에 기재되어 있는 「區1廢 제1333호」, 「주식회사 丙川」이라는 문자를 볼 수가 있어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2) 상기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폐기물 수집차를 운전하고, 수집차에서 내려와 중계현장 부근에서 폐기물 수집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약 2분 간에 걸쳐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으며, 각 가정에서 본 건 방송의 영상 등을 시청한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원고가 폐기물 수집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용모를 촬영 당한다든지,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공표당하지 않도록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본 건 방송은 상기와 같이 원고가 수집차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수집차에서 내려와 수집차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고의 얼굴 등을 생방송하여 원고가 수집차의 운전기사라는 것을 보도, 널리 사회일반에 공개한 것이므로 원고의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원고의 프라이버시까지도 침해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원고는 본 건 방송이 원고가 마치 토막으로 절단된 시체의 일부를 운반한 것 같은 인상을 일반시청자에게 주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방송에서의 일련의 대화내용 등은 별지 「발언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그 내용은 일반의 시청자에 대해 원고가 본 건 살인사건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4) 더욱이 피고들은 본 건 방송 당시 원고는 얼굴을 숨기지 않고 공로상(公路上)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집차의 운전기사도 훌륭한 직업으로, 그 자체가 통상 공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히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일도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직업으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듯하나, 사회일반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일부의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물이해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차별적인 발언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있어 자신이 폐기물 수집업

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집차의 운전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고에게는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을 채용할 수가 없다.

(5)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회사의 취재에도 응했다는 점을 들어 본 건 방송에 대해서도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전기와 같이 戊田 아나운서로부터의 질문 도중 동 아나운서에게 “텔레비전에 나가는 겁니까?”, “텔레비전에 나가는 겁니까?”라고 두 번이나 되묻고 있었으며, 戊田 아나운서도 원고에게 “방영되지 않도록 배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대화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원고는 인터뷰가 생중계로 자신의 영상이 그대로 전국에 방송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자신의 용모 등이 그대로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것을 용인한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화면에 원고의 용모 등이 방송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취재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더구나 원고가 상기와 같은 확인 발언을 한 것은 동일 오전 8시 5분 38초부터 41초까지의 사이였는데, 그 후에도 동일 오전 8시 6분 5초, 6분 18~19초, 6분 22초~23초, 6분 35초, 6분 38초의 영상에서 원고의 모습이 방송되었으며, 이어서 원고가 폐기물 수집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상응한 배려를 했다고 할 수 없다.

(6)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본 건 방송의 다음 날 戊田 아나운서에게 “괜찮아요”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사인을 부탁한 사실 등을 들어 본 건 방송에 관해 원고로부터 묵시적인 승낙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戊田 아나운서가 사죄하려고 원고를 찾았다고 하나, 본 건 방송의 다음 날, 전일에 방송한 현장 근처에서 작업 때문에 다시 현장부근을 지나는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길에서 선 채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며 원고에게 사정을 잘 이해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는 아니었다.

원고 본인의 진술이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일의 성질상 주야역전(晝夜逆轉)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자식들의 학교관계도 있어 평일에는 가족들을 요코하마(横浜)에 남겨두고 근무지에서 단신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부인 하나코(花子)와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본 건 방송의 내용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더욱이 戊田 아나운서는 사죄를 하면서 원고에게 “조금 방영됐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고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으며, 상기 원고의 언동 등은 오해로 인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戊田 아나운서에 대해 “괜찮아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인을 부탁했다고 해서 원고가 본 건 방송에서 그의 초상이나 직업이 공개된 데 대해 묵시의 승낙이나 동의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점에 대한 주장도 채용할 수가 없다.

(7) 상기부분에 의하면 본 건 방송은 원고의 초상권 침해와 함께 그의 프라이버시도 침해했음이 명백하며 위법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명예침해의

유무에 대해서는 원고의 개인적인 명예감정이 손상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사회일반의 평균적인 인물의 입장에 서서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만 할 것인데, 객관적으로는 폐기물의 수집이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직업도 아니고 하등 수치스러운 직업도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데다, 원고에게 인터뷰한 戊田 아나운서나 사회를 본 피고 乙山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동 등을 한 것도 아니므로 본 건 방송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다. 피고 乙山에 의한 모욕의 성립 여부

(1) 원고는, 피고 乙山이 본 건 방송에서 “방영되고 있어, 이제 됐어”라고 발언한 것을 가지고 원고를 조소(嘲笑)한 것이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면 이 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앞에서 인정한대로, 피고 乙山은 본 건 프로에서 戊田 아나운서에 의한 현장으로부터의 중계화면을 보고 있을 때 戊田 아나운서의 뒤편으로 수집차가 통과하자 “戊田 군, 지금 당신 뒤편의 그거, 쓰레기 수집차 아니야?”, “발견되지 않은 손목과 무엇인가를 부엌쓰레기와 함께 내놓았는데 이 수집차가 수집차러 온 거겠지?”라고 발언, 戊田 아나운서에게 수집차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일러주었다.

(나) 戊田 아나운서는, 수집차 가까이에 따라붙어 수집차를 운전하고 있는 원고에게 “미안합니다, 맨션의 쓰레기 같은 것이 안에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시작했다. 원고는 戊田 아나운서의 몇 가지 질문에 응답한 후 戊田 아나운서에게 “텔레비전에 나가는 겁니까?”, “텔레비전에 나가는 겁니까?”라고 두 번이나

되물었다. 원고로부터 텔레비전에 나가느냐는 질문을 받은 戊田 아나운서는 약간 당황하면서 원고에게 “방영되지 않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한 후 “아, 잠깐 저 코드가 닿지를 않아서, 미안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다) 이러한 원고와 戊田 아나운서의 일련의 대화 교환을 스튜디오에서 듣고 있던 피고 乙山은 “방영되고 있어, 이제 됐어”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경과이다.

(3) 그런데 이러한 본 건에 있어서의 원고와 戊田 아나운서와의 대화 교환을 전제로 하여 피고 乙山の 상기 발언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현장중계 중 텔레비전 카메라와 함께 스스로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그 영상이 현재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戊田 아나운서가 “방영되지 않도록 배려하겠습니다”라고 잘못된 응답을 한 다음 “아, 잠깐 저 코드가 닿지를 않아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본래 살인현장 부근으로부터의 실황중계로서 긴장감이 감돌법한 분위기에 상응한 것이 아닌 부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戊田 아나운서의 언동 등에 대해 “방영되고 있어, 이제 됐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하다.

물론 피고 乙山の 발언이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방법에 온도차가 있고, 때로는 차별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을 배려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발언에 약간의 경박함이 있었던 데 대해 원고의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되나, 피고 乙山の 상기 발언을 냉정하게 듣고 보면, 원고를

조소(嘲笑)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함으로 그것은 합당하나 부당하나의 문제이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乙山은 상기와 같이 戊田 아나운서에 대하여 동 아나운서의 뒤편으로 수집차가 통과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으나, 이는 원고에게 인터뷰 취재를 하도록 명확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기(後記)와 같이 본 건 프로의 제작체제에 있어서, 취재대상이나 방송해야 할 영상의 선택권은 프로듀서 등의 제작스태프가 갖고 있으며, 피고 乙山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던 것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 乙山이 원고를 모욕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쟁점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 乙山の 법적 책임

(1) 우선 본 건 방송에 있어서, 피고 乙山 자신이 그 발언에 의해 원고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방영되고 있어, 이제 됐어”라는 발언도 앞에서 인정한 대로 戊田 아나운서에게 한 것이고 원고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2)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고 乙山은 본 건 프로의 사회자일 뿐, 본 건 방송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면허 등을 갖고 스스로 본 건 방송을 방송한 것은 아니다.

(3) 또한 피고 乙山이 본 건 프로의 사회자로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실황중계를 하고 있던 戊田 아나운서에게 수집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본 건 방송의 내용을 뚜렷하

게 만든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건 방송에 있어서 어떠한 영상을 방송하느냐, 어떠한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취재나 인터뷰를 하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은 본 건 프로의 프로듀서 등의 제작 스태프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회자인 피고 乙山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는 것은 후기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피고 乙山은 본 건 방송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고 하겠다.

나. 피고 도쿄방송 및 피고 TBS의 법적 책임

(1) 우선 본 건 당시의 본 건 프로 및 본 건 방송의 제작·방송체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본 건 프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방송되며, 테마는 통상 전일의 오전 10시 회의에서 결정되나 직전에 발생한 중대사건을 취급할 때도 있다.

(나) 2007년 1월 당시의 본 건 프로의 제작 책임자는 甲田夏夫 제작 프로듀서(이하 「甲田 프로듀서」로 함)였다. 甲田 프로듀서의 밑에는 제작 프로듀서를 보좌하는 프로그램 프로듀서로 丁原 프로듀서(화요일 및 목요일을 담당)와 乙野秋夫 프로듀서(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담당)가 있고, 각 프로그램 프로듀서 밑에는 각각의 요일마다 현장의 지휘감독을 맡은 요일 프로듀서가 있다. 또 요일 프로듀서 밑에는 치프 디렉터(chief director)가 있고 치프 디렉터 밑에는 디렉터, 디렉터 밑에는 어시스턴트 디렉터(assistant director)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다) 丁原 프로듀서 등은 담당하는 요일의 방송 개시 2시간 전부터 방송 직전까지 협의와 조정을 거친 다음 방송 중에는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인근에서 갖가지 영상을 모니터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부조정실(副調整室)에서 본 건 프로의 진행을 관리하고 있었

다. 특히 프로그램 프로듀서는 스튜디오 또는 부조정실의 어느 쪽이든 자리를 잡고 있으며 스튜디오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와 협의하고 조정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스태프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라) 부조정실에는 현장중계의 카메라에서 송신되어오는 모니터 화면과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비추는 모니터 화면이 5개씩, 방송 중인 화면을 비추는 모니터 화면이 1개가 있는데 어느 모니터 화면을 방송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로 프로그램 디렉터로 호칭되는 스태프였다. 생중계의 경우에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 호칭되는 스태프도 부조정실과 스튜디오 간의 연락 역할을 맡고 있으며, 통상 프로그램 디렉터의 지휘 아래 코디네이터가 조작자(switcher)로 호칭되는 기술자에게 화면의 변환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전의 협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요일 프로듀서가 프로그램 디렉터나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지휘하고 있었다.

(마) 2007년 1월 11일의 본 건 프로에서, 본 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처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취급하기로 한 것은, 동일 오전 0시 전후에 이날을 담당한 요일 프로듀서와 치프 디렉터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丁原 프로듀서와 甲田 프로듀서도 이를 승인했다.

(바) 본 건 방송에서는 오전 8시 5분 직후 수집차를 뒤쫓고 있던 戊田 아나운서가 원고에 대해 인터뷰를 개시, 화면에 원고의 얼굴이 방영된 순간, 요일 프로듀서의 지시를 받은 코디네이터는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맨에 대해 “근접하지마”, “비켜”라는 지시를 했다. “근접하지마”, “비켜”라는 지시는 모두 피사체인 인물이 특정되지 않도록 피사체를 크게 촬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지시

가 시간적으로 어긋나 결과적으로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방송 중인 화면에 원고의 용모 등의 영상이 방영되고 말았다.

(2) 본 건에서는 이러한 본 건 프로의 제작체제에서 보면, 현장의 카메라맨은 부조정실에 있는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촬영하는 영상을 판단하여 이를 촬영하고, 스튜디오에서의 영상을 포함하여 촬영된 영상 중에서 어느 영상을 방송하느냐는 요일 프로듀서나 코디네이터 등이 결정하며, 이들 부조정실에 있는 제작 스태프가 방송되는 화면을 적당히 선택, 결정하여 언제든지 화면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회자인 피고 乙山에게는 그러한 영상이나 화면의 선택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戊田 아나운서나 카메라맨에 대해서도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 건 방송에 있어서 원고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송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부조정실 등에 있었던 제작 스태프 등에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3) 또한 본 건 방송 당시 피고 도쿄방송은 방송법 등에 의해 방송사업을 허가받은 자이고, 본 건 프로의 제작에 관계가 있는 피고 TBS는 피고 도쿄방송의 100% 자회사로서, 이들 피고 양사가 일체가 되어 본 건 프로를 제작하고 본 건 방송을 했다는 것은 피고 양사도 인정하고 있다.

(4) 더욱이 본 건 방송의 프로그램 프로듀서인 丁原 프로듀서와 중계 현장에서 원고에게 인터뷰를 한 戊田 아나운서는 모두 피고 도쿄방송의 사원이라는 사실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피고 도쿄방송에는 민법

715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있음이 명백하다.

(5) 그러므로 피고 도쿄방송 및 피고 TBS는 본 건 방송에 의해 원고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 데 대하여 민법 709조, 715조, 719조에 의해 공동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쟁점3 (손해액)에 대하여

가. <증거>에 의하면 본 건 방송 후 원고와 처 花子에게 원고의 직장동료, 원고 및 처 花子の 친척들로부터 “원고는 도쿄에서 쓰레기 수집상에서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다” 등의 많은 전화가 걸려 오기도 하고, 본 건 방송 당시 초등학교 2년생이던 원고의 장남은 친구들로부터 “너의 아버지는 손목 같은 것을 수집차 속에 넣은 모양이지”라는 등으로 놀림과 괴롭힘을 당해 그 결과 전학을 해야만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 원고의 장남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피고 乙山이 나오면 “뛰야, 또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어”, “이 할아버지 나빠”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 본 건 방송에 의해 크게 상처를 받고 있었으며, 원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와 아이들까지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 크게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 양사에게 있어서는, 2007년 1월 12일 戊田 아나운서가 재차 현장을 찾아 원고에게 사죄했고, 1월 15일에는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丁原 프로듀서 등이 원고 댁을 방문하여 사죄했으며, 또한 피고 양사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검토하여 본 건 이후 현장중계 시에는 일반인의 얼굴이 본인의 뜻에 반해 특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취재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생방송 중임을 알려주기 위해 ‘생방송 중’이라는 간판을 걸게 하는 등 재발방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본 건 방송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용모 등을 방송하기는 했으나, 戊田 아나운서나 피고 乙山 등 프로그램 관계자가 원고에 대해 모욕적인 언동을 한 것은 아니다. 본 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본 건 방송을 본 분별없는 시청자나 원고의 친지 등의 언동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그러한 원고의 직업을 차별하는 것 같은 언동을 한 자야말로 비난받아야만 함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라. 그렇다면 본 건 방송에서 피고 양사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丁原 프로듀서 등 관계자들이 원고에 대해 사죄를 한 것 외에 지금까지 인정한 여러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본 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엔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또한 원고는 본 건 청구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

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했는데, 본 건 사안의 난이(難易) 등이나 인용액이 100만 엔이라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본 건 청구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변호사 비용으로서는 인용액의 20%에 상당하는 20만 엔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본 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합계 120만 엔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피고 도쿄방송 및 피고 TBS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상기와 같은 한도에 이유가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피고 도쿄방송 및 피고 TBS에 대한 다른 나머지 청구와 피고 乙山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는 한편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 민사소송법 61조, 64조 본문, 65조1항 단서를, 가집행의 선언에 대해 동법 259조 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判例時報 No. 2047호, pp. 136~145.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영국사례 1

개인의 슬픔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라 하여 모두 실천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탁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 불만제기인 : James Marshall
- 적용된 조항 : 5조
- 언론사 : Falkirk Herald

청구내용

James Marshall은 2009년 7월 2일자 「Falkirk Herald」에 보도된 ‘피가 이웃 집으로부터 나의 아파트로 스며들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자신의 슬픈 개인 가족사를 공개해 언론사 편집자가 지켜야 할 실천강령 5조(슬픔과 충격에의 침범)를 위반했다며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기사는 Andrea Fraser가 자신의 집에서 악취가 나고, 부엌으로 피가 스며들어오며, 구더기가 발생하는 등 생활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방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같은 문제

는 아파트 위층에 거주했던 사람의 시신(불만제기자 James Marshall의 아들)이 상당기간 동안 방치되어 발생했다는 내용과 함께 Fraser 부인이 피 묻은 주방용품을 들고 있는 사진과 구더기가 들어 있는 상자 사진을 함께 실었다.

불만을 제기한 James Marshall은 특히 피 묻은 주방용품을 들고 있는 사진은 보도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으며, 이것이 충격과 실의에 빠진 자신의 가족에게 더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문사는 당해 보도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신문사는 또 Fraser 부인이 자신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방정부에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당 사진들은 문제의 심각성

을 보여 주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기사에 실린 사진들은 공공의 이익과 뉴스 가치 고양을 위해 교통사고나 살인 사건 현장 사진을 신문기사에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불만제기자 아들의 사망 사실은 Fraser 부인의 거주환경 문제 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사망자 가족의 아픔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특히 사망자의 신분은 보도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기각한다.

평결

PCC는 당해 신문의 보도(특히 피 묻은 사진)가 사망자 유가족의 슬픔을 배가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며 불만제기인과 그 나머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

불만제기인도 인정했듯이 Fraser 부인은 자신의 주장을 신문사를 통해 나타낼 권리가 있다. 그러나 PCC는 당해 기사가 Fraser 부인의 주장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PCC는 실청강령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피 묻은 사진의 공표가 기사에 꼭 필요한 것이었나, 하는 부분을 중요한 쟁점으로 상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이익형량과 관련하여 미묘하고 중요한 쟁점이 있었다. PCC는 해당 사진이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Fraser 부인의 주거 환경의 심각성을 정확히 나타내는 정확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이해한다.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PCC는 사

건의 공표가 Fraser 부인이 처한 상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필요했으며, 그것이 불만제기인의 아들이 사망한 사건을 희화화하거나 달리 불필요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더욱이 신문은 사망자의 신분이나 불만제기인의 아파트 내부 사진은 보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망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했다. 그러므로 실청강령 5조의 위반은 없었으며 불만제기 내용은 기각한다.

영국사례 2

추측성 기사에 대해 근거가 되는 적절한 증거가 없다면 정확성을 갖춘 기사라 볼 수 없다

- 불만제기인 : Brian Binley
- 적용된 조항 : 1조
- 언론사 : The Daily Telegraph

청구내용

Northampton South 의회 의원인 Brian Binley는 6월 17일과 6월 20일자 「Daily Telegraph」가 게재한 ‘자신 소유의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57,000 파운드

청구’ 및 ‘Brian Binley, 언론보좌관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대가로 16,000 파운드 청구’ 제하의 기사가 부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어 실청강령 제1조(정확성)를 위반했다며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각 기사는 불만제기인의 비용 청구 내용과 함께 그가 백만장자이며 수백만 파운드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여 언급했다. 불만제기인

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공개한 두 기사는 전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신문사가 직접 자신의 재정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Brian Binley 의원을 백만장자로 묘사한 것은 그와 그의 부인이 BBC Marketing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BBC Marketing은 220만 파운드 규모

의 회사로 130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 신문사는 Brian Binley 의원이 받고 있는 임금, 배당금, 주식판매이익금을 고려하면 그를 백만장자 혹은 수백만장자로 지칭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rian Binley 의원은 이 같은 추측성 계산은 전적으로 틀렸다고 반박한다.

신문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불만제기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신문사가 보도한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관련 기사(6월 17일, 20일)에 대하여 Brian Binley 의원은 자신이

백만장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사는 그 점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PCC가 판단을 요청받은 내용은 작은 부분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 사건 결정이 갖는 함의는 크다. 신문사는 두 번의 기사를 통해 불만제기인의 재정 상태를

확정적으로 보도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 단지 불만제기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PCC는 신문이 불만제기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게재하기 전 불만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잘못된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정정 및 사과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호주사례 7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과 합치하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평결번호 1439

호주신문평의회(APC)는 2009년 8월 13일 테즈메이니아의 일간 신문 「The Advocate」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Gatty Burnett 의 불만제기를 기각했다.

불만제기 대상 기사는 경찰이 2009년 8월 9일 오전 Shannon Blake를 체포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Blake가 자신의 체포 및 구금과 관련하여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내사를 실시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만제기인은 Blake의 지인이며 경찰이 Blake를 체포할 당시 그와 Devonport 거리에 함께 있었다.

불만제기인은 Blake가 경찰에 의해 강압적으로 경찰서에 인치된 후, 수 시간 동안 불법적인 구

금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Blake가 경찰에 의해 ‘체포’ 되었다고 기술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이 Blake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분사했으며 경찰서에 유치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Blake는 이후 아무런 혐의 없이 석방되었다.

APC는 불만제기 내용을 기각했다. APC는 실제 Blake가 경찰에 연행 당한 일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경찰에 의한 ‘체포’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신문사가 ‘체포’라는 단어로써 그 상황을 묘사하였더라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일반인을 경찰서에 유치하는 것은 ‘체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APC는 경찰이 Blake에게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조사에서 밝힐 부분이며 APC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PC는 신문이 사용한 ‘체포’라는 단어가 실천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호주 사례 2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른 내용에 관한 보도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평결번호 : 1428

호주신문평의회(APC)는 PatMcIntosh가 2009년 1월 17일자 「AAP」의 인터넷 기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불만을 인용했다.

불만 대상 기사는 Maitland 병원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유산하게 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신문은 남편의 말을 인용하여 “임신한 부인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고, 그렇게 만난 의사는 단순히 임신 중이라는 질문만 한 뒤 다음날 다시 와서 초기

임신 클리닉을 찾아가라며 그것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의사가 부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생은 더러운 것(Life's a bitch)”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불만제기인은 기사가 ‘잘못된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아주 심각하게 수준이 떨어지는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30분 정도의 지체는 부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 속하며, 다음날 다시 초기 임신 클리닉의 진찰을 받으라는 지

시는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의 유산 위험이 있는 산모에게 가장 일반적인 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모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 발언에 대해서도 동정심과 걱정의 표시라고 말했다.

「AAP」는 불만제기인의 주장에 대해, 기사는 사건의 분석을 시도하였거나 주장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사람이 겪은 사건과 그에 대한 발언,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것이며, 일반적인 신문 기자가

병원 내부의 관례나 규칙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기대범

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PC는 결론적으로 이 기사가

사실을 오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했다.

뉴질랜드 사례

품위나 취향에 관한 판단은 그 기준이 가변적인 것이므로, 품위훼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황을 필요로 한다

사건번호 : 2083, KEN ORR
AGAINST THE
PRESS

신문평의회(PC)는 Ken Orr가 「The Press」에 게재된 기사가 여성과 공공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PC는 불만내용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포함된 사진의 내용, 크기, 경고문의 부적합성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배경

불만제기 대상 보도는 「The Press」 섹션면에 게재된 ‘고통

으로부터의 쾌감’ 제하의 기사로 ‘교회에서의 BDSM 세계’라는 부제와 ‘경고 : 이 기사는 성인의 성관계 관련 기사임’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기사는 ‘Uncommon Bonds’라는 단체의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bat줄에 묶여 수동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는 한 참여자의 사진도 싣고 있다. BDSM은 피학적·가학적 성욕을 뜻한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어 신분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며,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도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불만내용

불만제기인은 PC에 불만을 제기하기 앞서, 신문사가 해당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언론 스스로가 가지는 ‘전문영역의 규범’을 어겼다고 「The Press」의 편집장에게 직접 항의했다.

그는 기사가 여성을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공공의 품위를 훼손했으며, 성욕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비취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사에는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과 모욕에 대한 반대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기사가 BDSM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The Press」가 독자들에게 대한 언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사 측의 답변

「The Press」 편집장 Andrew Holden은 BDSM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들이 해당 기사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자신은 그 단체 회원들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사들은 어른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사가 남자들의 성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성을 왜곡하여 묘사했다는 의견과 매춘 등을 옹호하는 것을 비취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논의 및 결정

불만제기 내용은 신문이 일반적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직무상 요구되는 고도의 규범을 어겼다고 전제하고 있다. 물론 언론이 가장 높은 단계의 직무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PC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PC는 그와 같은 문제의 심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일부

독자에게 불쾌한 내용이 다른 독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품위나 취향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며 항상 변화하는 일반인의 태도나 문화를 반영하며 진화한다. 몇 세대 전에는 품위를 손상시키고 불쾌감을 줄 수 있었던 내용도 현재의 기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품위의 훼손’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무엇이 일반적인 시각에서 수용 가능한 내용인지를 판단하는데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기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 품위훼손을 근거로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 예도 있다. 그러나 불만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그룹에 대한 근거 없는 품위훼손 등 심각한 정황을 필요로 한다. 이번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일부 독자에게 불쾌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 자체는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불만제기인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듯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여성을 명백히 비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PC는 최근 BDSM과 관련한 판례들을 근거로 불만제기 대상 보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로 성 관계에 복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기사보다 크고 선명하게 게재한 것에 대해 PC는 우려를 나타낸다. 편집장도 진술서에서 사진은 진실 보도를 위해 꼭 필요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게재된 사진이 일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PC가 판단해야 할 부분은 사진이 일반의 공공 품위를 훼손시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PC는 불만제기 내용을 기각한다.

PC는 기사에 대해 불만제기인이 제기한 문제점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사진과 부가된 경고문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다. 어린 자녀와 부모들에게 그 경고문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글자 크기가 더욱 컸어야 하고, 눈에 잘 띄게 디자인 되었어야 했다. 

- 강진숙(2009). 독일의 사례 -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 자율규제제도와 국내 적용방안 연구 : 청소년보호 및 미디어교육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2009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미디어 독과점과 저널리즘의 위기'** 발제문. 2009. 12. 04.
- 김경희(2009). 블로그 저널리즘의 성장 가능성. **한국언론재단 주최 '2009 블로그 컨퍼런스 - 우리는 미디어다'** 발제문. 2009. 11. 10.
- 김민호(2009).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문. 2009. 09. 10.
- 김상수(2009).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제(ADR)의 성과와 발전방향.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2009 정책 심포지엄'** 발제문. 2009. 11. 30.
- 김익현(2009). 미디어로서의 한국 블로그 현황, 특징. **한국언론재단 주최 '2009 블로그 컨퍼런스 - 우리는 미디어다'** 발제문. 2009. 11. 10.
- 김종원(2009). 개인 미디어시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한국카메라기자협회 주최 '영상저작권과 방송저널리즘 세미나'** 발제문. 2009. 11. 20.
- 김종철(2009).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2009년 추계학술세미나 - 선거와 인터넷 규제'** 발제문. 2009. 10. 24.
- 김창룡(2009).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과 초기 포털뉴스 피해 조정, 중재 분석. **언론중재위원회 '2009 경남지방토론회'** 발제문. 2009. 12. 06.
- 남지나(2009). 한국과 미국 TV뉴스의 대선보도 비교 - 신(scene) 단위의 형식과 내용의 공정성과 이미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 '2009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9. 11. 07.
- 마쯔다 히로시(2009). 일본에 있어서의 신문·텔레비전의 계열화와 저널리즘의 변질: 정부의 미디어 정책·신문의 종합 정보산업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2009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미디어 독과점과 저널리즘의 위기'** 발제문. 2009. 12. 04.
- 민경배(2009). 블로그와 기존 언론의 관계 설정. **한국언론재단 주최 '2009 블로그 컨퍼런스 - 우리는 미디어다'** 발제문. 2009. 11. 10.
- 박석철(2009).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한국언론학회 주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발제문. 2009. 09. 18.
- 박영철(2009).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과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문. 2009. 09. 10.
- 설진아(2009).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2009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미디어 독과점과 저널리즘의 위기'** 발제문. 2009. 12. 04.
- 성일권(2009). 프랑스의 사례 - 융합 환경에서의 프랑스의 콘텐츠 심의: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조화.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2009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미디어 독과점과 저널리즘의 위기'** 발제문. 2009. 12. 04.
- 안명규(2009).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현실과 헌법적 쟁점.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2009년 추계학술세미나 - 선**

거와 인터넷 규제' 발제문. 2009. 10. 24.

- 양재규(2009. 9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42 - '허위사실'인줄 몰랐다면 명예훼손 인정 안돼. **신문과방송**, 통권 465호, pp. 122~125.
- 양재규(2009. 10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43 - 당사자 신원보호, 영상·음성 모두 변조해야. **신문과방송**, 통권 466호, pp. 118~121.
- 양재규(2009. 11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44 -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라도 방송사에 책임있어. **신문과방송**, 통권 467호, pp. 110~113.
- 여상원(2009. 가을).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언론중재**, 통권 112호, pp. 6~21.
- 유의선(2009).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규제체계 정립방안 :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를 위하여.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통신 융합과 융합미디어의 미래 2010'** 발제문. 2009. 09. 09.
- 은혜정(2009). 영국의 사례 - 유럽의 내용심의규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2009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미디어 독과점과 저널리즘의 위기'** 발제문. 2009. 12. 04.
- 이규정(2009).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문. 2009. 09. 10.
- 이동기(2009). 방송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정책. **한국카메라기자협회 주최 '영상저작권과 방송저널리즘 세미나'** 발제문. 2009. 11. 20.
- 이민영(2009. 가을).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통권 112호, pp. 54~71.
- 이영주(2009). 방송사의 아동(청소년)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규정 방안. **한국언론학회 주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발제문. 2009. 09. 18.
- 장호순(2009. 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통권 112호, pp. 22~38.
- 정상윤(2009). 미디어법과 지역방송.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2009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미디어 독과점과 저널리즘의 위기'** 발제문. 2009. 12. 04.
- 주지홍 (2009.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심판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50권 제2호, pp. 453~488.
- 최민재(2009).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인식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2009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미디어 독과점과 저널리즘의 위기'** 발제문. 2009. 12. 04.
- 한국언론재단(2009. 6월). **세계의 언론법제 - 미디어 집중도 조사**. 한국언론재단.

*바로잡습니다.

지난 가을호 언론법제 관련 문헌 중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서 '1인 시위'에 관한 연구'의 필자를 '이재진·이정기'로 바로잡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일부개정 : 2009. 2. 6.

시 행 : 2009. 8. 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1.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개정 2009.2.6>)

①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제5조의2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2.6]

제6조 (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2.6>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2.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 (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신설 2009.2.6>

⑤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⑧ 제척 · 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해당 중재부를 보충한다. <신설 2009.2.6>

제11조 (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09.2.6>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별칙의 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개정 2009.2.6>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개정 2009.2.6>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9.2.6>

⑥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개정 2009.2.6>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2절 조 정

제18조 (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 (결정)

-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③ 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직권조정결정)

-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련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9.2.6>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09.2.6>

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제24조 (중재)

- ①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 ④ 삭제 <2009.2.6>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개정 2009.2.6>)

①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9.2.6>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2.6>

제4절 소 송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

⑧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2006. 6. 29.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 (재판)

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28조 (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계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2.6>

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개정 2009.2.6>)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30조 (손해의 배상)

①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 (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개정 2009.2.6>

④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⑤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⑦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33조 삭제 <2009.2.6>

제4장 별 칙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2.6>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9.2.6>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부 칙 <제9425호, 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매개에 대한 적용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매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397 - 3114 언론분쟁상담 : 02) 397 - 3000, 3110, 3100 팩스 :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 051) 759 - 7083~4 / 팩스 :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53) 763 - 0020~1 / 팩스 :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 062) 676 - 0360~1 / 팩스 :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42) 525 - 0778~9 / 팩스 :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6층 전화 : 031) 211 - 9027, 9022 / 팩스 : 031) 212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 033) 255 - 2878~9 / 팩스 :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전화 : 043) 286 - 8083, 8081 / 팩스 :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 063) 288 - 0010, 0981 / 팩스 :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 055) 263 - 1787, 1780 / 팩스 :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 064) 722 - 3328, 3352 / 팩스 : 064) 726 - 3201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www.pac.or.kr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